

2017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출 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7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 구 기 간 : 2016년 2월 17일 ~ 2016년 9월 30일
- 참 여 연 구 원 :

연구책임자 : 정동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최대승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선경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이경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연희 위촉연구원

공동연구원 : 박지선 위촉연구원

공동연구원 : 방은진 위촉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미향 위촉연구원

< 요약문 >

1. 서론

□ 연구목표

- 국가 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자원배분방향 수립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전략의 수행을 뒷받침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 창조경제의 성숙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에 필요한 원활한 자원투자 방향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정부 지식재산 예산사업 범위 설정 및 분석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각 부처의 관리과제(약220여개)를 정부예산 편성기준인 세부사업 단위로 매칭하고 분야별 분석
-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편방안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자원의 배분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 마련
-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마련
 -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분석
 - 우리나라 지식재산 투자현황 및 지식재산사업 성과의 분석
 -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설정

2. 지식재산관련 환경 분석

□ 기술적·경제적 환경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을 중심,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 통합되어 미증유(未曾有)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

- 우리나라는 신넛크랙커 상황, 잠재성장률 하락, 고용없는 성장 등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

□ 지식재산관련 국내·외 환경

-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
- FTA, 국제협약 등을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규범화·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공유와 개방 가속화

3. 주요국 및 국내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 주요국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
- EU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관련 규정 발효('13~) 및 통합 특허법원 추진을 통한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을 지속 추진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투자현황

- 특허소송 관할 집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등 추진으로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기반 마련
- R&D-표준-특허 연계, 표준특허 강소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 등 다양한 노력으로 '15년 표준특허 보유 세계 Top 5(782건) 진입
- 중소기업 기술보호,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친화적인 IP·기술 거래 활성화기반 마련

4. 정부지식재산 투자 및 성과현황

□ 투자현황

- 제1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조 7,756억원 투입(계획 대비 25.8% ↑)
 - 분야별로는 창출 9조 1,649억원(71.7%), 활용 1조 6,921억원(13.2%), 신지식 7,939억원(6.2%), 보호 5,323억원(4.2%), 기반 4,499억원(3.5%) 순

□ 정부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 '12~'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76건의 평가과제 중 우수 17건, 개선필요 10건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 결과, 83개 사업 중, 우수 13개(15.7%), 미흡 4개(4.8%)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5. 정부지식재산자원배분방향 개편

□ 자원배분방향의 조기 수립

- (현행) 「중점투자방향」 수립(3~4월), 「자원배분방향」 수립(7월)
 - ⇒ (개선) 「자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6월초)

□ 지식재산 성과분석 결과반영 강화

- (현행) 사업 평가결과 및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자원배분방향」 반영 미흡
 - ⇒ (개선)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를 「자원배분방향」에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 지식재산 사업범위 일치화

- (현행) 「시행계획」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 상이
 - ⇒ (개선) 「시행계획」상의 지식재산 사업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을 일치시켜 연계를 강화

□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 (현행) 별도의 협조체계 없음

⇒ (개선) 관계부처↔지재위↔기재부 간 지식재산 자원배분 협조체계 구축

6. 2017년 정부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 기본방향

○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활용체계의 고도화와 보호 강화를 '17년 자원배분방향의 목표로 설정

-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5대분야별 자원배분방향

5대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전략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핵심·표준특허 확대• 미래사회 핵심동력인 SW,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공조• 특히 심사품질 개선 등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와 금융지원간 연계 강화 등 시장중심 IP 비즈니스 활성화• 특히 개방·공유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IP 경영역량 강화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인재양성• 지식재산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및 IP 친화적 환경조성
신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자·전통지식 등 우리 고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촉진• 한류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및 유망신지식의 발굴·활용 촉진

□ 활용방안

-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통보
 - 201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지식재산 정책과 예산투자와의 정합성 제고

7. 개선방안

□ 실효성제고를 위해 자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

- 「자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립 시기를 기존의 ‘중점투자 방향’이 마련되었던 3-4월 까지 앞당기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산당국이 사업 심의를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자원배분방향」을 수립·제시하여,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기 및 절차 개선
 - 이를 통해 「자원배분방향」의 결과를 지식재산 과제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유도
 - 기재부 및 미래부에 「자원배분방향」의 결과를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하도록 유도 가능



□ 「자원배분방향」와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

- (방안 1) 2016년에 수립한 「자원배분방향」과 같은 ‘절충안’
 - 예산 규모는 시행계획 상 금액으로 제시하고, 중점적인 자원배분 방향은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중심으로 수립

- 현실적인 방안이나, 매년 추가적인 조사·정리가 필요하며, 자원배분방향 수립 시점상 최종 예산요구서를 반영하지 못해 변동가능성이 높음

○ (방안 2)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 통일

- 예산 규모, 관리과제 등 내용을 「시행계획」 중심으로 통일하여, 「자원배분방향」에서는 해당 관리과제 중심의 투자방향을 제시

※ 세부사업 단위는 언급하지 않음

- 이 경우, 「자원배분방향」은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사실상 예산편성(기재부) 업무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제공

- (방안 1)에 비하여 「자원배분방향」 수립 기간(2-3월) 중 추가적인 세부사업 분류 작업*이 필요 없으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바로 적용 가능

* 사후적(예산편성 이후)으로 지식재산 관리과제가 포함된 세부사업 목록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여 취합하는 것은 가능

○ (방안 3) ‘세부사업’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 통일

-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을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세부사업 단위에서 「시행계획」과 「자원배분방향」을 관리

- 지식재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관점에서는 유리하며 접근이 명료하며, 일반 사업의 평가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 용이하나, 지식재산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협조필요 등의 연유로 단기에는 실현이 어려움

□ 「시행계획」, 「점검·평가」, 「자원배분방향」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매년 실시되는 「시행계획」과 「자원배분방향」의 수립,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 (대상의 일치화) 「자원배분방향」와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방안으로서,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을 통일할 경우, 「시행계획」, 「자원배분방향」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의 대상이 모두 일치하도록 조정

-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자원배분방향」의 대상 통일, 모든 계획과 평가가 정해진 지식재산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

- (환류·연계 강화)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와 「재원배분방향」의 내용이 상호 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평가 기준 수정) 「점검·평가」 시에 해당 과제가 「재원배분방향」에서 중점 투자할 과제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
 - * 「재원배분방향」의 중점투자 방향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해당 과제인 경우는, ‘정책형성’ 부문 등 예산확보의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평가 결과 환류) 「점검·평가」 결과, 우수 과제가 「재원배분방향」에서 중점 투자할 과제로 선정될 경우 예산 확대를, 미흡과제의 경우는 예산 확대를 유보하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

□ 「재원배분방향」의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부처 협조체계 강화 필요

- 각 부처의 차년도 사업 및 재정투자 계획 수립 시 재원배분방향의 중점 투자 대상 과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
 - 필요시 각 부처는 지식재산책임관을 중심으로 재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식재산 예산편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 지재위를 중심으로 각 수행부처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원배분방향」의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부처·기관·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재원배분방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행력 제고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5
1. 연구의 목표	5
2. 연구 내용 및 범위	5
제3절 기대효과	7
제2장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환경·정책동향	9
제1절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11
제2절 주요국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14
1. 미국	14
2. 중국	62
3. 일본	72
4. EU	76
제3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89
1. 개요	89
2. 지식재산위원회 등 상정안건 주요 내용	91
제3장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115
제1절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117
제2절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123
1.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결과	123
2.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129

제4장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편	134
제1절 자원배분방향 수립 추진현황	136
1. 추진 개요	136
2. 추진 체계	136
제2절 현황진단	137
1. 투자방향과 배분방향의 이원적 체계 및 수립 시기	137
2.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138
3.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139
4.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140
제3절 개편방안	141
1. 자원배분방향의 조기 수립	141
2. 지식재산 성과분석 결과반영 강화	142
3. 지식재산 사업범위 일치화	143
4.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144
제4절 향후 계획	145
제5장 2017년 정부 지식재산 배분방향	147
제1절 자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49
1.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149
제2절 시행계획 점검·평가위원등 전문가 회의	152
1. 목적 및 주요 내용	152
2. 개요	152
3. 참석대상	152
4. 주요 논의 내용	154
제3절 2017년 지식재산자원배분방향 수립	155
1. 기본방향	155
2. 5대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157
3. 향후 조치계획	187

제6장 개선방안 189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91

- 1.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기에 따른 실효성 191
- 2. 「재원배분방향」과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불일치 192
- 3.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반영 194
- 4.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 미흡 197

제2절 개선방안 198

- 1. 실효성제고를 위해 재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3~4월) 198
- 2. 「재원배분방향」과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가 필요 198
- 3. 「시행계획」, 「점검·평가」, 「재원배분방향」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200
- 4. 「재원배분방향」의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부처 협조 체계 강화 200

첨 부 202

첨부1.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2012~2015) 204

첨부2. 정부 지식재산 사업 목록 및 평가결과 206

첨부3. 지식재산 시행계획 관리과제 해당 세부사업 연계표('16년 기준) 209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
 - 지식기반 시대로 진입한 각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과 기술혁신이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확보와 보호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혁신전략을 추진
 - 세계 각국은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
 - 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 자동차, 모바일 등 주요상품의 생산·제조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가 더욱 강조
- FTA, 국제협약 등을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규범화·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해외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사항 증대
 -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적자폭은 감소 추세)
 - 최근 일본의 엔저 공세 및 가격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우리 경제의 新넛크래커 현상 심화

□ 이에 정부는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12년~2016)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기간 중 총 12조 7,756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본계획(10조 1,533억원) 대비 25.8% 초과 투자 달성

○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정부 각 부처는 지식재산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원배분방향의 수립이 필요

○ 차년도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추진근거(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2항의 3)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목표

- 국가 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자원배분방향 수립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창조경제의 성숙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에 필요한 원활한 자원확보
-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중점세부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비전 및 목표 달성에 기여

2. 연구 내용 및 범위

1) 정부 지식재산 예산사업 범위 설정 및 분석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각 부처의 관리과제(약220여개)를 정부예산 편성 기준인 세부사업 단위로 매칭하고 분야별 분석
 - 지식재산 사업명과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예산을 정리하고, 창출·활용·보호·기반·신지식재산 등 5대 분야별 통계 분석

2)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편방안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 마련
 - 자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
 - 자원배분방향 수립체계 개선
 - 자원배분방향과 정부 예산투자와의 연계 강화방안 등

3)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마련

-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분석
 - 2017년도 중점투자방향 기초연구 보고서 참조
 - 정기간행물·보고서·뉴스 등을 모니터링하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향 파악
 - '16년 정부의 중기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16년 지식재산예산 규모와 신규 지식재산사업을 파악하고, 과잉·과소 투자된 분야 등을 분석하여 '17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설정 시 고려
- 우리나라 지식재산 투자현황 분석
 -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등 5대 분야별 투자 현황 분석
 - 관계부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분석
-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 현재까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성과 분석
 - 정부 지식재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분석
- 차년도(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설정
 - 국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 중점투자방향, 지식재산 사업 성과,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 투자의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차년도에 투자를 강화해야 할 분야를 제시

제3절 기대효과

- 지식재산 예산 투자의 효과성 증대 및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극대화
 - 지식재산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의 전략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투자방향 제시

-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사업 예산편성 시 및 지침으로 활용
 - 지식재산 전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재정투입 계획 간 연계 강화

제2장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환경·정책동향

제1절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있다"면서 "이 변화의 규모와 복잡성 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다"고 언급
 -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1870년의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체계를 통해 제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였고, 컴퓨터, IT 기술을 통한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제3차 산업혁명을 지나,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을 중심,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 통합되어 미증유(未曾有)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바이오, 나노, 모바일,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드론 등의 기술은 서로 융합과 연결을 반복하며 기하급수적인 기술 폭발을 이룰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기술의 양의 기하급수적 증가 뿐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출현 속도를 통해서도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
 - 우리나라는 3D 프린팅, 나노, 로봇틱스와 같은 제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 분야의 특허가 이미 세계 Top 5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제 곧 기술의 변화와 융합으로 인해 예견되는 수많은 변화에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신닛크래커 상황, 잠재성장률 하락, 고용없는 성장 등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

- 중국의 기술수준은 이미 1년 정도의 차이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저하되면서 우리나라 7대 주력품목* 세계 점유율은 4.7% 수준으로 낮아짐.

※ 7대 주력 품목: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 자동차 및 IT산업, 철강, 화학, 조선

- 또한 한국은 현재 잠재성장률 하락의 덩어리에 걸려 있음
 - 1980년대의 잠재성장률은 8%대였지만, 2030년대가 되면 2%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임. 2006년 독일의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학 교수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한국을 2750년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

□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

- 자동차, 모바일 등 주요상품의 생산·제조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가 더욱 강조
- 세계 각국은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
 - * 미국(첨단제조파트너십), 독일(인더스트리4.0), 중국(제조업 2025), 일본(산업부흥전략) 등
 - **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 :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융합기술 등(2016 다보스 포럼)
- 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 * 방송포맷,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 빅데이터의 개별데이터 등 보호받지 못하거나 회색영역에 있는 대상물에 대한 권리 보호 요구 증가

- FTA, 국제협약 등을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규범화·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해외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사항 증대
 -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적자폭은 감소 추세)
 - * 지식재산투자 경제기여율 : 금융위기 전('00~'08) 6.5% → 이후('09~'13) 15.6%(현대경제연구원, 14.11)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6.5, 한은) : ('10) -67.0억달러 → ('11) -33.8억달러 → ('12) -48.0억달러 → ('13) -53.4억달러 → ('14) -45.3억달러 → ('15) -40.0억달러

- 집단 지성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공유와 개방 가속화
 - 기존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제2절 주요국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1. 미국

1) USPTO 2014-2018 전략계획

- 2014년 3월 14일, USPTO는 「2014 - 2018 전략계획(USPTO's 2014-2018 Strategic Plan)」을 발표
- (3대 전략목표) I.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II.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제고, III.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세계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 (관리목표) 조직적 탁월함 달성

□ 주요내용

-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①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 ②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효율성 및 특허 심사역량 강화, ③ 국제적인 협력 및 업무공조 확대, ④ 지속적인 특허품질 제고, ⑤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보장, ⑥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⑦ 적시에 고품질의 판결 제공을 위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능력 유지
-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① 상표의 평균 최초 심사결과통지(First Action, FA) 기간을 2.5~3.5개월로, 상표 평균 심사기간을 12개월로 유지, ② 상표의 고품질 유지, ③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⑤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기능 강화

-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세계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① 지식재산 정책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및 정책에 대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
- (조직적 탁월함 달성) ① USPTO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보기술 투자 확대, ②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 인력의 지속적인 창출 및 유지, ③ 대내외적 관계 강화, ④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 및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펀딩(funding) 확보, ⑤ 위성 사무소(Satellite Offices) 설치 및 지역적 협력 강화

<전략목표 “1.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의 실행전략 및 추진계획>

실행전략	추진계획
1. 특허심사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적정 심사 기간 설정을 조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들과 협력 - 심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특허심사기간 통계(metrics)를 지속적으로 개선,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
2.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효율성 및 특허심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심사인력 고용확대 - 신기술, USPTO의 우선사항, 법개정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교육 -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계획 강화 - 특허출원 절차에 대한 옵션(심사관 대면 인터뷰, 우선 심사제도 등) 제공
3. 국제협력 및 업무공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전면 시행 - PCT와 PP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적업무공조 지속적으로 활용, 업무처리기간 단축 - Global Dossier를 통하여 심사관 및 외부 이해관계인이 타 특허청의 조사결과 및 심사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증진

실행전략	추진계획
4. 지속적인 특허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품질 데이터 측정방법의 평가 및 개선 - 특허품질 데이터 사용 확대 - 특허심사관 평가시스템의 성과평가계획의 수정 - 시의적절한 기술적 법적 교육 개발 및 제공
5. 모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IT 서비스 제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서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Patent Application Location Monitoring, PALM) 및 기존의 IT 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이용되고 있는 특허 IT 시스템을 재설계 - 표준화 구조화 검색이 가능한 특허 자료/문서의 생성 및 수용 확대 - 검색 시스템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 타국 특허청과의 업무공조를 위한 IT활용 기회 모색
6. 이해관계인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인식확대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확대 및 지속적 지원 - 특정 기술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 확대 - CPC 관련 지원 확대 - 특허정보, 특허출원 및 소유권 정보에 대한 인식 및 투명성 제고 - 이해관계인들이 AIA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장려하고, USPTO의 특허법 개정예 대한 분석기회 제공
7. PTAB가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AB 절차 진행의 최적 소요기간 설정 - 심결의 품질과 기간 최적화를 위해 관리 직원을 포함한 PTAB 인력의 전국적 확충 - 데이터 수집 검색의 집중화 및 운영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자동화툴 개발 - PTAB 심결의 일관성 보장 - PTAB 운영 및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업데이트 및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원 확대

<전략목표 “II.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제고”의 실행전략 및 추진계획>

실행전략	추진계획
1. 최초심사결과 통지 (First Action)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5~3.5개월, 상표 심사기간은 12개월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심사역량 유지 - 최적의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재조정 - 심사 효율 증대, 최적의 심사기간 유지, 지식재산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 심사목표 설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과 협력
2. 상표의 고품질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심사품질 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제공, 법률 교육 및 훈련 제공 등을 통해 심사품질 유지 및 개선
3. 모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IT 서비스 제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rade Next Generation(TMNG)」 IT 시스템과 외부 및 내부 이용자들을 위한 첨단 IT 자원 개발 및 이행을 통한 IT 시스템의 현대화 -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 종업원 및 대중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4. 이해관계인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분야 운영 및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업데이트 및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원 확대 - USPTO의 로스쿨 법률 클리닉(legal clinic)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pro bono)상표 법률 서비스의 접근 기회 제공 - 상표등록 및 유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표권자들을 상대로 연방 상표등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장 - 등록부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5. TTAB의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소요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개발 및 심판 항소 절차의 기간 단축 - TTAB 의견/심결의 질을 높이고 선례가 될 수 있는 심결을 통해 법 개선에 기여 - TTAB의 운영 및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해 이해관계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2) 특허품질 강화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 (목적) 특허품질강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시스템 구축
 - * 2015. 3. USPTO는 Patent Quality Summit 개최하여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 (개요)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목표로 업무성과물(work products)*의 우수성, 특허 품질 평가의 우수성, 고객 서비스의 우수성을 목표로 설정
 - * 업무 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포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제안>

목표	세부 제안
1. 작업결과물의 우수성	1. 특정 출원서의 심사과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방안 2. 전산화된 사전심사검색의 유용성 향상 방안 3. 심사관련 문서의 명확성 및 완결성 향상 방안
2. 특허품질 평가의 우수성	4. 특허품질 평가방식의 효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3. 고객서비스의 우수성	5. 재심사 제도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6.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 기회 확대 방안

□ 특허품질 강화 계획 진행 동향

- 2015. 7. 13., USPTO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허품질향상계획의 동향 발표
- (심사관 교육)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주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특허심사교육, 특허적격성 및 특허청구항 명확성에 대한 교육 실시, 검색 기술 및 면담 절차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 (조직 간소화) 특허품질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품질관리국 신설, 특허품질 담당 부처장을 새로 임명하여 품질 개선절차의 조직적 관리 도모

- (대중 교육)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 제공, 2015년 7월부터 웹을 통한 지식재산 세미나 시리즈인 Patent Quality Chat을 개최, 매달 진행
- (의견 수렴)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을 통해 특허품질향상계획에 대한 1,1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 진행 중

3)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 행정명령(Executive Action)의 이행 및 의회에 AIA 집행 보고

- USPTO은 백악관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집행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허시스템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을 발표
 - (특허이전검색 DB 개선) 이용자들의 특허검색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이전검색 DB(Patent Assignment Search database)를 개선하였으며, 개선된 DB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속도가 빠른 검색 기술 및 현대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DB를 통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검색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필터기능을 통해 검색 범위의 축소를 용이하게 함
 -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특허 심사관에게 기술 교육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 (Patent Examiner Technical Training Program, PETTP)」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산업 디자이너 등 전문가를 초빙
 - 강사로 초빙된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업계 관행, 표준 기술, 선행 기술을 포함하여 과거와 최신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을 요하며, USPTO 본청 및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에서 강연을 개최하거나 웹캐스트 방식으로 강연을 제공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확대) 영세한 기업 및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명가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을 확대
 - 4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네소타주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위스콘신주로, 매사추세츠주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인주로 확대

참고: 백악관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2014년 2월, 백악관은 특허괴물 척결과 미국 특허제도의 강화 및 혁신 증진을 위한 3개의 새로운 행정조치로, ① 선행기술 클라우드소싱, ② 특허 심사관의 기술교육 강화, ③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발표한 바 있음.

- USPTO는 의회에 「미국 발명법 이행에 관한 보고서(Study an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를 제출(9. 29일)하고 미국 발명법(AIA) 이행을 위한 USPTO의 노력과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 개선안은 공동심판 규정(joinder provisions)의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나 등록 후 무효심판(Post Grant Review, PGR)에서 심리 당사자 병합(party joinder)뿐만 아니라 쟁점 병합(issue joinder)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여
 - 당사자의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한 건의 심리에서 보다 많은 쟁점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 및 USPTO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 IPR의 신청 시, 이해관계자의 특정과 관련한 사소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IPR 신청이 반려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함

- 또한, Alice 판결 이후, 지방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에 근거하여 많은 특허를 무효화하고 있어, CBMR의 기간(2020년 종료)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인 제도로 변경하는 방향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

- USPTO는 미국의 강력한 특허제도와 이용자 중심의 특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Michelle K. Lee 청장 등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특허품질 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동 계획의 3대 중점 추진사항은 ①업무성과 우수성, ②특허품질 평가 우수성, ③고객서비스 우수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중의 의견수렴, 내부토론 등을 거쳐 세부 프로그램(Action Plan)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2015년 11월 현재 추진현황>

- (데이터분석 및 심사관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위한 주제 제안, 명확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품질 매트릭스 등과 자동화된 사전 심사 검색파일럿, 기록의 명확성 및 면담 관련 연수 등
-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프로그램) 기록의 명확성 파일럿의 변경 등
- (기록의 명확성 향상) 「기록의 명확성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Clarity of the Record Pilot)」을 통해 심사관이 주요 용어들의 정의와 청구항 해석의 주요 부분, 청구항 허락 및 거절의 상세한 사유를 심사 기록에 기재
- (심사품질 평가 개선) 심사업무의 동일한 측면을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선정절차 변경 (Transforming Our Review Data Capture Process)」을 추진

- 종래에 심사관의 업무 평가를 위해 활용된 여러 평가방법을 통합하고, 온라인 서식인 '통합평가서(master review form)'에 따라 동일한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015년 7월 현재 추진현황>

- (심사관 교육) USPTO는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주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미국 특허법 제101조 및 제112조와 관련된 특허적격성 및 특허청구항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색 기술 및 면담 절차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선함, 특허심사 교육을 제공함
- (조직 간소화) 특허품질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품질관리국 (Office of Quality Management)을 신설하고, Valencia Martin Wallace를 특허품질 담당 부국장(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Quality)으로 임명하여 품질개선 절차의 조직적 관리를 도모함
 - Office of Process Improvement, 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 Office of Patent Training, Office of Patents Ombudsman and Stakeholder Outreach 등이 품질관리국으로 통합됨.
- (대중 교육) USPTO는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웹을 통해 양방향 소통형 지식재산 세미나 시리즈인 「Patent Quality Chat」를 개최
- (지역사무소 운영 시간 확대) 특허 출원인, 변리사,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USPTO의 지역사무소에서는 특허 옴부즈맨(Patents Ombudsman)의 운영 시간을 확대함
- 한편,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을 통해 특허품질향상계획에 대한 1,1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특허품질향상계획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USPTO는 2015년 2월에 마련된 특허품질 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Patent Quality Summit」 을 개최하고, 대중으로부터 피드백을 위하여 웹 캐스트로 생중계함
 - 동 회의는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Michelle Lee 청장이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지정 토론자의 발언 후 공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됨
 - 6대 제안은 ① 출원인이 심사과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실익이 있는 쟁점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이 특허품질부서(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에 특정 출원서의 심사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② 심사관에게 적절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사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의 유용성 향상 및 새로운 도구의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③ 심사과정에서 공식 문서의 명확성 및 완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 모색, ④ 종합품질측정지표(Composite Quality Metric)의 효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⑤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재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⑥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 기회 확대 방안 모색 등임
- USPTO는 특허심사 적체해소 및 기간단축을 위해 ‘최종거절통지 후 심사파일럿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과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진행중
 -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AFCP 2.0)은 특허출원 절차간소화 및 특허심사 신속화, 심사관과 이해관계인의 공조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거절통지 (Final Office Action) 이후에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시행됨

- 신청요건은 출원인이 최종거절통지를 받았을 것, AFCP 2.0 신청서 (Form PTO/SB/434)와 한 개 이상의 독립청구항에 대한 보정서를 포함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다만, 보정은 독립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야 함), 심사관의 면담 요청에 응할 것에 동의할 것, USPTO의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것 등임
 - 동 프로그램이 신청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AFCP 처리상태를 알리는 「AFCP 2.0 답변서 (PTO-2323)」를 발송하며, 최종 거절통지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검토후 거절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하여 출원인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AFCP는 심사적체를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RCE란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 QPIDS는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의 신청을 감소시켜 특허심사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도입되어 기간연장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QPIDS는 특허 등록료를 납부한 이후에 제출된 정보공개진술 (IDS)을 검토하기 위하여 RCE를 진행하여야 했던 요건을 삭제함
 - 신청요건은 특허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것, USPTO의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QPIDS 신청서(PTO/SB/09), IDS 진술서 및 수수료, RCE 신청서 및 수수료,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철회 신청서(petition to withdraw the application from issue)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동 프로그램이 신청되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IDS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된 IDS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RCE를 진행하여 특허심사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심사가 불필요할 때에는 「정정된 허여 통지(Corrected notice of allowablity)」를 발행함
- USPTO Michelle K. Lee의 청장의 행보에서 보는 혁신의지
- 텍사스주에서 열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USPTO 청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Michelle Lee는 USPTO 사상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
 - MIT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Hewlett-Packard社, Google社 등을 거쳐 2012년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위성사무소 소장 및 USPTO 차장을 역임
 - 취임 직후, 「제25회 2015 PTO DAY」연설에서 주요 업무계획 발표함
 - (특허품질향상 계획) 동 계획은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 성과물(work products)의 우수성, 특허품질 평가의 우수성, 고객 서비스의 우수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허심판위원회의 운영)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설립 당시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개방형 데이터 계획) USPTO는 데이터가 공공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공개 및 배포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발전의 로드맵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 등을 개발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제4회 MANAGING IP 미국특허포럼(FOURTH ANNUAL MANAGING IP U.S. PATENT FORUM)」의 기조연설에서 미국 특허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

- (특허품질향상) USPTO는 2016년 2월, 특허품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수립에 착수하여 심사관의 기술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 세부 방안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있으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
- (특허심판위원회 절차 개선)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2016년 3월 중순까지 2,600건 이상의 당사자제 재심사(IPR)와 300건 이상의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BM)를 처리하였으며 특허분쟁의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수수료 규정 개정) 특허제도의 발전 및 USPTO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만간 수수료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을 위해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의회 지식재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위원회(Congressional Caucu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iracy Protection)」에서 지식재산제도 개선의지 표명
 -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지식재산은 혁신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집약산업은 미국 내에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GDP의 약 1/3(5조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USPTO의 활동) USPTO는 미국의 지식 재산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가들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품질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Quality Summit」 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 (지식재산제도 개선 지지) USPTO는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IP 국제협력

- USPTO는 2016년 1월 11일부터 2년 간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권청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과 PPH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조기로 함
 - 시범 프로그램은 특허 심사 적체를 감소시키고 심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양국간 특허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USPTO는 유럽 특허청(EPO),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IL)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10월)
 - (EPO) USPTO는 EPO와의 MOU를 통해,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에서 25,000명 이상의 심사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의 국제적 채택 및 양 특허청 간의 협력을 강화
 - (IPOS) USPTO는 IPOS와의 MOU를 통해 IPOS가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미국 특허출원의 국제적 선행기술 조사(ISA) 및 예비심사 업무(IPEA)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 (IPOPHIL) USPTO는 IPOPHIL과의 MOU를 통해 기존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모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특허심사 과정의 운영 향상 및 조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착수함으로써 공조를 강화함
- USPTO는 한국 특허청(KIPO)과 공동으로, 선행기술문헌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심사, 업무의 중복 방지 및 심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CSP)」을 시행함
 - 동 프로그램은 양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1차 심사결과 통지 전 면담 프로그램(First Action Interview(FAI) Program)을 기초로,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면서 독립항이 3개 이하이고,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할 것, 한국 및 미국의 청구항이 동일할 것

- 한국 및 미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하고,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양청에서 심사 착수 전일 것 등의 요건과 시범 운영기간 중 전체 CSP 신청 건수는 400건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있음
- Michelle 청장은 중국특허청(SIPO)과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이 자국의 법체계 하에서 최적의 특허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같은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 양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USPTO는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구축에 관한 합의(2012. 6월, IP5 특허청장 회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서비스인 Dossier Access1를 개시
 - Global Dossier 도입의 일환으로 개시된 「Dossier Access」는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Global Dossier에 참여하고 있는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출원 정보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고품질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적시에 접할 수 있게 됨
 - 현재 유럽 특허청(E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SIPO)이 Global Dossi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에 Global Dossier를 도입할 예정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 및 각 장에 대한 개요(chapter summary)를 공개함
 - USTR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제18장)에서 TPP 상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미국의 혁신적 강점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무역과 혁신을 장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당사국 간의 과학, 기술 및 창의적 성과 공유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TPP로 도입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 처벌) TPP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국영기업에 관한 정의) TPP는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의 적용에 있어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이 제외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규정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며,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에는 영업비밀 집행 절차도 포함됨
 - (바이오의약품과 지식재산) 혁신 장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 8년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거나 이 기간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지리적 표시) 미국 수출업자들은 지리적 표시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경우 외국 시장 진입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사용에 관한 적법절차(due process) 및 기타 절차들을 강화함
 - (국제협력) TPP 당사국들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각국 특허청 간의 검색 및 심사 결과 공유 등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USPTO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특허출원 업무의 공조를 위하여 일본 특허청(JPO)과 협정을 체결하여 녹색기술 분야의 국제출원 심사에 대한 심사의 폭을 넓혀 출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
- JPO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USPTO가 수리할 국제출원 중 총 5,000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첫 해에는 분기당 300건, 2년차와 3년차에는 분기당 475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ISA와 IPEA으로 활동
 - 요구조건으로서 해당 출원이 영어로 이루어질 것, 해당 출원의 청구항이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분야에 관한 것일 것, 출원인이 JPO를 관할 관청으로 선택할 것 등이 있음

-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중국 관세당국(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과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양해각서 부칙(IPR addendum)에 서명(6월)
 - 동 양해각서 부칙은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식재산 범죄를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위조상품의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양국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정보 공유) 상품의 명세서, 수량, 단가, 수출입 일자, 알려진 제조업자 및 운송업자, 컨테이너 번호 등의 압수된 물품들에 대한 정보 공유
 - (업무 공조) 적발된 위조상품의 교환, 단속 활동 강화, 지식재산권 집행 세미나 초청 등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 특허소송

-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전망(주요 로펌을 통해 확인)
 - 종래 FRCP에 따르면 특허소송 제기 시 'FRCP의 서식 18(Civil Form 18. Complaint for Patent Infringement- 특허침해 소장)의 기재사항에는 특허번호, 날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기 등 매우 빈약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명확화 및 구체화가 요청됨
 - Civil Form 18을 삭제하고, 새로운 특허소송의 소장은 주장 사실에 대하여 Twombly 기준('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여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사건에서 원고에게 최소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이나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명시하도록 요건을 부여할 수 있음
- 2015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전년대비 15% 증가
 - 2015년에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건수는 5,774건으로 전년도 5,006건에 비하여 15% 증가, 2013년 6,0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임
 - 특기할 사항은 전술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이 발효되기 전인 11월에만 844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전년(334) 대비 153%가 급등하여, 동 규칙이 특허소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음
 - 한편,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에 접수된 심판건은 2015년에 1,797건으로 전년 1,677건보다 7% 증가하였고, 이 중 IPR(당사자계 심판)이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4) 법제도 개정 동향

□ 특허개혁 관련 입법동향

- PATENT Act(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of 2015(S. 1137))
 - 상원의원 Charles Grassley 등이 발의하여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으로서, 2015년 6월 3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해를 넘기되 되었는데, 하원에 계류 중인 Goodlatte 의원의 「혁신법(Innovation Act)」과 유사한 면이 있는 있어, 두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다면 양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침해에 대한 소제기 및 답변 요건 강화) 특허침해에 대한 소장인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Form 18을 삭제하고¹⁾,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에게 침해된 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소비자에 대한 소송 중지) 침해주장의 대상이 된 제조업체의 소비자가 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소송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증거개시 제한) 소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 재판지 이송신청(motion to transfer venue) 및 피고 분리신청(motion to sever the accused infringer)이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된 증거개시절차를 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소송비용 이전) 패소자의 소송 행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objectively reasonable)이지 않은 경우,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승소자가 부담함

○ INNOVATION Act(H.R. 9)

- 동 법안은 특허피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Bob Goodlatte 위원장 등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6월에 하원 법사위원회를 24대 8로 통과하여 하원 본회의에 상정됨
- 동 법안의 심의 당시 많은 수정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법안을 둘러싼 업계의 큰 시각차가 존재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 Bob Goodlatte 위원장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다수의 수정안은 철회됨
- 동 법안이 특허제도가 헌법적 기반에 충실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특허피물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온 남용적인 특허소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Bob Goodlatte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은 동 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는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올해 안에 특허소송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는 반면,
 - 동 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경고장 발송 남용, USPTO의 수수료 전출(fee diversion)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John Conyers 의원) 반대 지적에 대하여
 - 발명가 및 미국대학협회 등은 2015년 6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이 소송비용 및 시간의 증가, 해외에서의 특허권 행사의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 법안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TROL Act(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 Act of 2015(H.R. 2045))
- 경고장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악의적·기만적인 경고장 발송을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청에 악의로 기만적인 경고장을 보내는 기업에 대하여 기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STRONG Act(Support Technology and Research for Our Nation's Growth Patents Act of 2015(S. 632))
- 특허권 남용 규제가 목적인 타 개정안과 달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 유효성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요건인 고의 입증 정도를 연방 대법원 판례의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향후 전망
- 최근 주요로펌과 접촉하여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5년내 국회 통과가 예상되던 Patent Act가 해를 넘기게 되었고, 대선정국 등의 영향으로 국회 논의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 혁신법안에 대하여는 금년 내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혁신법안의 내용이 Patent Act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향후 동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함

□ 주요 IP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 USPTO의 Michelle K. Lee 청장은 지난 2015년 제 3분기 특허공공자문위원회(PPAC)에서 '15년 주요성과를 발표
 - IT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 IT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Patent End-to-End」 를 개발하는 한편,
 - 심사관의 업무량 및 업무 우선순위 관리를 돕는 맞춤형 검색 시스템인 「Docket and Application Viewer」 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1만 명 이상의 직원에게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을 이행하여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함으로써 국제협력을 강화
 - 2015년 10월과 11월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텍사스주 댈러스에 지역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심사관 및 심판관을 충원하는 한편, 심사관 면담·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선행기술 검색 도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의 추진을 통해 특허 심사를 포함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임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 2015년 8월 발표한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초에 최종 개정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며, PTAB은 AIA 심판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 결정계 심판의 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USPTO, 특허 수수료 조정안(Patent Fee Setting and Adjusting Proposal)의 공청회 내용을 공개(2015년 11월)
 - USPTO가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15년 10월 20일에 공개한 특허 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특허 수수료는 10% ~ 25% 인상되며, 특허심사에 대한 수수료도 약간 인상될 예정
 - 특히, 당사자계 무효심판(IRP) 청구료는 9,000달러에서 14,000달러로 56% 인상예정인데, 공청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산업계 대표들은 현재의 수수료 조정안은 기업의 수익에 중대한 악영향과 무효심판 청구비용을 상승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대한 우려를 표명
-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분기별 회의(Quarterly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PPAC) Meeting)」의 개최사에서 강력한 특허제도 마련을 위한 USPTO의 노력을 소개함
 - (특허품질향상계획 추진)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1) 등을 통해 특허품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에 대한 1,2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3개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주요 의제는 ① 심사관은 본인의 의견을 기록에 명확히 남길 것, ② 제법특허(process patent)에 관한 조치와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 관한 조치를 구별할 것, ③ 면담의 유형보다 면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특허심판위원회의 규칙 개선) USPTO는 2015년 8월 20일,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후, 2015년 말에 최종 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설명회 개최) USPTO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PLA)와 공동으로 미국 전역에서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허품질향상 프로그램, PTAB 규칙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미국 상무부와 공조) 미국 상무부가 시행하는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USPTO의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공조하고 있음
- USPTO, 외국 특허청과의 정보 및 문서의 전자적 공유를 통하여 특허 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전자 파일 공유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2015년 10월)
 - 동 개정에 따라 외국 특허출원에 대응하여 부과된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하여 외국 특허청이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종전보다 용이하게 USPTO에게 외국 특허청의 접근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됨
 - 또한, 종전에는 USPTO가 외국 특허청에 출원과 관련된 전자 서류를 제공할 때, 출원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됨
 - 출원정보요약서(Application Data Sheet)의 서식(PTO/AIA/14)을 변경하여 출원인이 'PDX 프로그램' 등 전자적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 거절이 없는 한 USPTO가 외국 특허청 등과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USPTO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정 25주년을 맞아, USPTO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소개
 - USPTO는 '14. 8월부터 「어코모데이션 포인트(Accommodation Poi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가 있는 직원 및 구직자들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을 도모해 오고 있음

- 웹사이트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요청과 이용 및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수화통역자나 휠체어 에스코트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음
- USPTO, 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2015년 5월)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동 프로그램은 USPTO와 협력을 맺은 각 주의 비영리기관 및 로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각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발명가에게 특허와 관련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직접 출원 지원 프로그램(Pro Se Assistance Program)) 동 프로그램은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USPTO는 이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피드백을 제공
 - (로스쿨 실습 프로그램(Certified Law School Clinic Program)) USPTO는 45개 로스쿨과 협력을 맺고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하에 특허 및 상표 출원서의 초안 작성을 포함해 출원절차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에 대한 지원 및 로스쿨 학생의 실무 수습 기회를 제공
 - (수수료 감면) 출원인이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또는 초소형 단체(micro entities)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50%, 75%의 관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
- 특허 출원 알림 서비스(Patent Application Alert Service, PAAS)무료 보급(2015년 4월)

- 「제3자의 등록 전 정보 제공(third-party preissuance submissions)에 대한 공개회의에서 PASS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추진, 주요내용은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특허 출원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충족하는 특허 출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심사의 품질과 특허결정을 받은 발명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허법 제정 225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과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4월)
 - 「Where We Have B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 Directors' Perspectives」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Michelle Lee 청장을 비롯하여 4명의 전직 USPTO 청장인 Gerry Mossinghoff, Q. Todd Dickinson, James Rogan, Jon Dudas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 각 청장들은 재임기간 동안 USPTO의 혁신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IP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반응이 좋아 향후 동 행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주요 IP 판결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ClearCorrect v. ITC and Align Tech 판결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할(jurisdiction)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data)'에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결(2015년 11월)
 - ITC는 2014년에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동법 제337조의 '물품(article)'에 해당하며, 동법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제품을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수입(import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ClearCorrect社의 특허침해 및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인정함

- CAFC는 ITC의 결정을 번복하고 '침해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 that infringe)'에 대한 ITC의 관할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세법 제337조의 '물품'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체물(material things)'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Commil USA v. Cisco 판결에서 특허를 무효라고 믿은 것은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또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대한 항변도 될 수 없다고 판시(2015년 5월)
 - 동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가 무효일 것이라고 믿은 것이 유도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유도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허의 존재 및 유도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Global-Tech 판결을 재확인함
 - 한편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이 특허괴물에 의해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힌 후, 판사들에게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벌 및 승소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이전 규정을 통해 악의적인 소송을 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언급함
-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Apple社와 Wisconsin 대학 내 기관인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의 특허침해소송에서 Apple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WARF에 2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2015년 10월)
 - 2014년 1월, WARF는 마이크로칩의 성능 향상 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특허를 Apple社가 허락 없이 iPhone 5s와 6, 6 Plus, iPad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4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동 법원의 배심원은 Apple社의 iPhone 및 iPad에 내장된 칩이 WARF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pple社는 WARF에게 2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 한편, Apple社는 동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USPTO에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InterDigital社와 Microsoft社의 특허소송에서 Microsoft(Nokia)社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무선통신 관련 특허는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2015년 8월)
 - ※ 2013년 9월, Microsoft社가 Nokia社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동 소송을 승계함.
 - ITC 전체 심의위원회는 Microsoft社가 InterDigital社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배제명령 또한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InterDigital社가 대상 특허에 대하여 RAND 원칙에 따른 라이선스를 체결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는 Akamai v. Limelight 판결에서 5월에 있었던 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Limelight社가 Akamai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2015년 8월)
 - 특허침해의 각 단계가 복수의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었을 경우(공동침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일부만을 실시한 침해자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많은 기술 기업들이 동 판결을 주시
 - 2014년 6월, 연방대법원은 특허의 직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일의 당사자가 방법특허에 기재된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하며,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도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Limelight社의 행위는 유도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CAFC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 2015년 8월, CAFC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의 CAFC 판결을 파기하고, 한 당사자가 일부의 단계만 실시하였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행위를 지시 또는 통제(directs or controls)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Limelight社가 Akamai社의 특허를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단

- 2015년 5월, CAFC는 파기환송심에서 Limelight社가 전 단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Limelight社의 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침해가 없으므로 유도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Microsoft v. Motorola 판결에서 Motorola社의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협약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2015년 7월)
 - Motorola社가 자사의 영상과 Wi-Fi 관련 표준특허가 Microsoft社의 Windows와 Xbox 게임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동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안하면서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데 대하여
 - Microsoft社는 Motorola社가 제품 가격의 2.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 Motorola社의 RAND 협약 위반을 이유로 소 제기(2010년 10월), 1심 법원은 Motorola社의 RAND 협약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 Motorola社는 CAFC에 항소(2013년 11월), CAFC는 Motorola社가 RAND 협약상의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Microsoft社에 대한 손해배상액(1,452만 달러)을 확정하는 한편, RAND 협약이 대상이 된 특허의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명령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In re Cuozzo Speed Tech 판결에 대한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 신청을 기각하고, 2015년 2월 4일 선고된 항소심을 확정(2015년 7월)
 - 동 판결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이었으며, CAFC는 특허청구범위 확정에 있어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을 채택한 PTAB의 결정을 지지한 바 있음

- CAFC는 USPTO의 IPR 개시 결정을 검토할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USPTO는 IPR 대상이 된 해당 특허청구항의 범위 확정에서 있어 법정 규칙제정 권한(statutory rulemaking authority)에 근거하여 최광의 해석(BRI)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바, PTAB의 광범위한 청구항 해석과 그에 따른 자명성 판단은 적절하였음
 - Cuozzo社의 선행기술 회피를 위한 청구항 축소 청구에 대한 PTAB의 거절 결정은 적절하므로 PTAB의 최광의 해석 기준 적용에 대한 Cuozzo社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기각함
 - 의회는 USPTO에게 IPR을 제정하고 규율하는(establishing and governing inter partes review)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 권한을 부여(미국 특허법 제316조(a)(4))했으며, USPTO는 이에 근거하여 IPR 절차에 대하여 최광의 해석(BRI) 기준을 도입했음(37 C.F.R. § 42.100(b))
- 연방 항소법원(CAFC)은 Intellectual Ventures v. Capital One 판결에서 Intellectual Ventures社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지나치게 추상적어서 특허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2015년 7월)
- CAFC는 Alice Corp v. CLS Bank 판결의 기준에 따라, Intellectual Ventures社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판단하고 동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 3개(Patent Nos. 8,083,137, 7,603,382, 7,260,587) 중 2개의 특허는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졌으며, 1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음.
 - 137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은 '미리 설정된 소비 한도(예산)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추적'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동 청구항이 독창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적격성이 없음

-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단지 통상적인 컴퓨터 작업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성요소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382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와 웹사이트 탐색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지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어온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함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Allvoice Developments v. Microsoft 판결에서 Allvoice Developments(Allvoice)社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Microsoft社의 특허침해를 부정(2015년 5월)
- 2013년 12월, 1심 법원은 Microsoft社가 Allvoic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Allvoice社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의 청구항 60부터 68까지는 특허법 제101조2에 따른 특허적격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llvoice社는 항소
- 동 판결의 쟁점은 Allvoice社가 침해를 주장한 273 특허의 청구항 중 제60항이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는데, CAFC는 해당 청구항이 특허법 제101조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적격성을 부정함
- 동 사안에서 쟁점이 된 청구항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 없이 소프트웨어의 명령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이 구성요소로서 실체가 있는 ‘기계’ 또는 ‘조성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됨
- 한편,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방법’을 직접적인 청구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허의 대상이 유형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선례와는 다른 논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Hewlett-Packard(HP)社가 ServiceNow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8건의 특허 중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2015년 3월)
 - 2014년 2월 6일, HP社는 자사가 보유한 「통신 네트워크 모델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포함해 총 8건의 특허를 ServiceNow社가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
 - 이에 ServiceNow社는 HP社가 침해라고 주장한 특허 중 4개는 특허적격이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함
 - 법원은 ServiceNow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HP社가 피침해를 주장한 특허 8건 중 4건의 특허는 법적 보호를 받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특허에 대하여 무효 판결함
 - Reuters 통신에 따르면, Alice v. CLS Bank 판결 이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된 사건에서 20건 이상의 무효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수천 건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무효의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특허심사 과정에서도 거절되는 건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임

□ 기타 IP 업계 동향

- 미국 Thomson Reuters社는 「2015년 100대 혁신 기업(2015 Top 100 Global Innovators)」을 발표(11월)
 - 100대 혁신 기업은 전체 특허 출원 규모, 특허허락 비율, 세계시장 진출(global reach), 인용에 의해 증명된 발명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선정되어 순위가 아니라 명단만을 발표
 - 100대 혁신 기업에는 일본(40개), 미국(35개), 프랑스(10개)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LG전자社, LS산전社, 삼성전자가 5년 연속 10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됨

- 2015년에 처음으로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분야는 미디어 인터넷 검색 및 탐색 분야에서 Amazon이,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Chevron, Exxon Mobil, Idemitsu Kosan 등이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됨
 - 지난 5년 동안, 100대 혁신 기업의 재무성과는 다른 기업들의 성과보다 뛰어났으며,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특허 보호가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미국 정책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NCPA)는 「미국경제에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o the U.S. Economy)」을 발표(2015년 9월)
- NCPA는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식재산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
 - '10년 미국의 지식재산 총 가치는 약 5조 60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5%를 차지, 미국의 지식재산 침해규모는 연간 2천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약 2,7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최소 보호 기준을 정하고,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지재권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16년 지식재산집행 합동 전략 계획(2016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2015년 9월)

- IPEC(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는 08년에 설립된 백악관 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및 침해방지를 통합적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
 - IPEC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3년마다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특허상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고 있음
 - IPEC는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집행 및 정책적 선결과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
 - 동 계획의 목표로 ①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물품 감소 ② 중복·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 집행 조치 ③ 지식재산집행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④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네트워크의 중단·제거 등을 제시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한다고 발표(2015년 7월)
- 동 발표는 DHS의 Alejandro Mayorkas 차관과 ICE의 Sarah R. Saldaña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확장된 ICE 사이버 범죄 센터는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에 강화된 운영 및 교육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사이버 범죄 센터의 대규모 확장에는 5,000 제곱피트의 포렌식 연구소 증축, 증거보관소 및 여러 개의 교육실과 회의실의 마련 등이 포함됨
 - Mayorkas 차관은, HSI의 직원들은 아동 착취, 지식재산권 도용 등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이버 범죄 센터의 발전은 이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과 도구를 갖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힘

- Saldaña 국장은, ICE는 네트워크 침입, 지식재산 및 수출 제한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절도, 신용카드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경제 범죄, 아동 착취, 불법암시장 등과 같은 사이버화 될 수 있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센터의 확장으로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NAPA(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는 USPTO의 재택근무에 관한 검토 보고서인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Telework Internal Control and Program Review」를 발표(2015년 7월)
 - USPTO의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심사장(Supervisory Patent Examiner, SPE)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의 내부 통제 및 효율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동 조사를 수행한 연구팀은 재택근무제도가 비용 절감,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비상사태 시 작업의 계속성 보장 등의 면에서 USPTO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USPTO의 감독 및 경영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
 - 보고서의 제안사항으로서는 심사장은 관리자로서 재택근무자가 특허심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업무 효율성 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USPTO는 지속적으로 근태관리 지침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또 USPTO는 풀타임 재택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 또는 조건부 기간을 설정하고, 2년 동안의 근태 평가 후 풀타임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재택근무를 위한 계약에 재서명하도록 하며, 특허심사품질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Pricewaterhouse Coopers(PwC)는 「2015 미국 특허소송 연구 보고서(2015 Patent Litigation Study- A change in patentee fortunes)」를 통해 5년만에 미국내 특허소송이 감소하였음을 발표(2015년 5월)
 - 2014년에 특허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13% 하락한 5,700건으로,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특허소송이 2014년에는 급감하였는데, PwC社는 최근 몇 년 간 의회가 특허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는 점과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판결이 주 원인이라고 함
 - ※ 2016년 1월,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된 소송건수는 5,006건으로 차이가 있음
 - 한편, 동 판결은 특허소송 제기를 고려하던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적격성 및 집행에 대한 기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
- 미국 Google社는 「특허 매입 프로모션(Patent Purchase Promotion)」을 발표(2015년 4월)
 - Google社는 동 프로모션을 통해 특허 거래가 빠르고 간단하며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시장의 갈등 해소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5월 8 ~ 22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원하는 특허를 판매가를 명시하여 접수받고, 추후 특허권자와 매입 대상 특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 Google社는 접수 마감 즉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2015년 6월 26일까지 매입 대상이 된 특허의 권리자에게 특허 매입 의사를 알리고,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거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Google社는 동 프로모션이 신속한 특허 자산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잠재적인 특허 판매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허 판매자들이 특허 매매에 대한 경험을 쌓고, 개인 또는 기업들과 특허피물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

-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미국 Lex Machina社, 「2014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4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를 발표(2015년 3월)
 - 이에 따르면, 2014년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5,012건으로, 이는 2013년 대비 1,070건 감소한 수치이며, 2012년에 비해서도 433건 감소한 것임
 -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여전히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법원인데, 두 법원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허소송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4.9% 감소하였고, 델라웨어 법원은 41.2% 감소함
 -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중부·북부 지방법원은 약 1년이 소요되어, 미국 법원의 평균(1년 반)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Gilstrap 판사는 2014년 982건의 새로운 특허소송을 처리하여, 지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처리함
 - 2014년에 결정된 관할 이송 신청 건 중,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한 인용율과 기각률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비율을 기록한 반면,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더 높은 인용률을 기록함
 - Fish & Richardson 로펌은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에도 델라웨어의 Morris, Nichols, Arsht & Tunnell 로펌과 텍사스의 Tadlock 로펌이 각 해당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함
 - The Alice v. CLS Bank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 발명법(AIA)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판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 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처리 사건은 증가한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활동은 최고치에 달했던 2010-201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지식재산을 연구하는 미국의 51명의 교수는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의 진보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2015년 3월)
 - 동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특허소송의 대부분은 특허주장기업 (Patent Assertion Entity, PAE)이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혁신기업(신생기업 및 벤처기업)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축소되는 상황
 - 동 성명서를 통해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 진보를 저해하여 오히려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한편, 의회에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개정을 촉구함
 -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회와 법원, USPTO는 특허소송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특허소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동 성명서와 같은 학계의 목소리가 현재 국회계류중인 여러 개의 특허개혁법안, 특히 PATENT Act 등에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

5) 우리나라 특허청·출원인 관련 USPTO 정책 동향

□ 2015년 USPTO 주요 업무성과

- 2015년 12월 15일, USPTO는 「2015년 업무성과 보고서(2015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고객(기업 및 대중)에게 USPTO의 업무성과와 재정 상태를 알리고 차기 년도 업무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전망할 수 있도록 매년 업무성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2014-2018 전략계획(USPTO's 2014-2018 Strategic Plan)」에 명시된 ①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②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③ 지식재산의 글로벌 정책·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④ 조직 우수성 달성 등
-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USPTO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와 함께 특허 및 상표 심사 활동, 출원, USPTO의 인력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주요 업무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부문에서 평균 1차심사(First Action, FA) 기간은 17.3개월로 목표(16.4개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평균 총 심사 기간은 26.6개월로 목표(27.7개월)를 달성하였고, 특허품질 종합 점수는 42.9로서 목표(83 - 91)를 달성하지 못함
 -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부문에서 평균 FA 기간은 2.5개월로 목표(2.9개월)를 달성하였고, 평균 총 심사 기간은 10.1개월로 목표(12.0개월)를 달성했으며, 전자 출원 비율은 82.2%로 목표(80.0%)를 달성하였음
 - 지식재산의 글로벌 정책·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부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 지식재산 집행기관의 제도 개선,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 개선 및 정부 간 협력기구의 설립 등에 있어 목표(75% 이상을 이행한 우선대상국의 비율 75%)를 달성함
 - 조직 우수성 달성 부문에서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강화 교육을 받은 외국 공무원의 수가 5,283명으로 목표(6,300명)를 달성하지 못함
- 기타 특허 및 상표 심사관련 현황
 - 2015년 8월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약 32만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현재 심사적체 건수는 전년 대비 6.4% 감소한 57만건 미만임(12월 통계 없음).

- 2015년 11월 현재 특허심사관 8199명으로 전년보다 249명이 감소하였으며, 상표심사관은 456명임
- 특허의 경우, '19년까지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통지까지의 기간 (First Action, FA)을 10개월로, 출원일로부터 평균 심사처리기간(Average Total Pendency)을 20개월로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중

□ 출원, 등록 및 심사 관련

- 우리나라 출원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선행기술 조사 무료 검색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USPTO Patent Search(<http://patft.uspto.gov/>): 사용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Help Section"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Free Patents Online(<http://www.freepatentsonline.com/>): USPTO보다 원문을 파일형태로 얻기 쉽고, 이미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검색이 용이하고, 검색결과로 나온 특허가 모두 하이퍼링크 되어 쉽게 원문접근이 가능하며, forward/backward citation 특허도 쉽게 얻을 수 있음
 - Google Patent Search(https://www.google.com/?tbs=pts&gws_rd=ssl): 엔진이 가볍고 상기 두 사이트보다 검색속도가 빠르며 데이터 커버리지는 USPTO외에 가장 폭넓지만, 최신 특허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검색 첫 단계로는 권하지 않음
- 지난 8월 17일부터, USPTO는 발명가지원센터(IAC: Inventors Assistance Center)의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 이전까지는 IAC의 업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8월 17일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국에 걸쳐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해안지역과 4개의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s : 달라스, 덴버,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에 심사, 심판 업무 체제가 잘 정착되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USPTO의 방식심사 관련 주요 용어와 근거법령 및 등록방식 심사에서 거절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 (한국)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미국)Assignment recordation procedure
 - (한국)등록(Registration)→(미국)Recordation
 - (한국)신규등록(New registration)→(미국)Initial assignment recordation
 - (한국)등록변경(Change registration)→(미국)Assignment recordation procedure
 - 방식심사 근거법령은 35 USC 261, 262, 115이며, 평균 방식심사 기간은 2011년 1일에서 2012년 이후 2일로 늘어나 2014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 등록요청 건수 중 거절되는 비율은 2012년 3.68%에서 2014년 1.5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거절 이유는 서식상의 오류나 서류의 하자 등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청 특허심사관의 한-미 Work-sharing 추진
 -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국 특허청의 이미현 심사관이 USPTO에 파견되어 CPC 협력을 촉진하고 PPH 협력강화에도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양국 특허심사실무에 관하여 심사관간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USPTO는 공동특허분류 시스템 전환에 따른 특허 심사관 교육 진행하여 2015년 1월부터 모든 특허 심사관이 C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에게 약 20시간 동안 CPC를 통한 효율적인 특허 검색 및 분류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이후 약 120시간 동안의 현장 교육도 실시함
 - USPTO 국제특허협력실(OPIC)는 지난 2월 한국 특허정보진흥센터(PIPC) 소속 분류담당자 2명에 대하여 USPTO에서 교육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특허청, 특허정보원 및 PIPC 분류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 CPC 협력이 강화되었음

-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 2005-2014년의 주요 기술분야별 특허허여율(allowance rate) 추이를 발표(8월)
 - 2010년 이후 전기·전자분야, 컴퓨터통신, 기계분야의 특허허여율은 70 - 80%를 유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허여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 각 기술분야별 특허허여율이 60-80 %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분야의 특허허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Patently-O는 AIA 특허(AIA-patents)1) 출원 동향과 등록비율 추이를 발표(12월)
 -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의 출원(즉, AIA 특허 출원)으로 분류된 미국 특허 출원을 출원 공개일(application publication date)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최근에 공개된 출원 중 약 60%가 AIA 출원이며 AIA 이전의 출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AIA에 따른 선출원주의 전환 규정의 시행일(2013년 3월 16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4년 9월과 10월에 AIA 특허 출원 공개 비율이 급증
 - 2015년 12월까지 약 36,000건의 AIA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새롭게 등록되는 AIA 특허의 비율은 약 20%에 이르고, AIA 특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쯤에는 새롭게 등록되는 특허의 상당수가 AIA 특허일 것이라고 예측함
- USPTO는 심사관 및 일반 대중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7월)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 법칙에 관한 청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를 제공함
 - 자연 기반 제품(nature-based products)에 관한 청구항의 경우, 종래 청구대상 발명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상물 사이에 '현저하게 다른 특성(markedly different characteristics, MDC)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 추상적 아이디어의 유형으로 제시된 '기본적인 경제 관행(fundamental economic practices)',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아이디어 그 자체', '수학적 관계·공식(mathematical relationships/formulas)'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 심사관은 특허적격성 미비에 대한 추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선행 판례법, 출원인이 개시한 자료 또는 증거'를 이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밝힘
 - USPTO 심사국은 심사관들에게 「2014 IEG」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밝히며, 심사관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건의 부록을 추가로 제공함
 -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전체적인 특허적격성 분석 절차를 밝지 않고도 특허적격성이 있음이 명백한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함
-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10월)

- ABA는 동 지침에 제시된 특허적격성에 관한 방대한 예시는 심사관, 출원인,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특허적격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며 심사업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ABA는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한 특허심사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함
 - ABA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기계 또는 변형 기준(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1)',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 기준(law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on test)', 'Alice v. CLS Bank 기준'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 3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USPTO가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많은 결정들이 청구항에 대한 실제적 분석보다는 특허적격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심사관들은 감독관들로부터 명백히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적격성을 부정하도록 압력 받고 있다고 언급함
 - 나아가 ABA는 출원인이 특허적격성을 충족하는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도와줄 것을 권고하며, 특허등록을 위해 심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1)은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10월)
- BSA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지식재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하며, 2가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아래와 같음
 - 특허부적격성에 근거한 특허거절결정을 할 경우, 심사관은 그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할 것

- BSA는 최근 자신의 회원사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심사관이 출원자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심사관의 명확한 거절 근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함
- 추상적 아이디어의 유형 중 하나인 ‘인간 활동 체계화의 일정한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례를 제시할 것
 - 「2014 IEG 개정안」에서 인간 활동 체계화의 일정한 방법으로 (i) 사람 간의 관계 또는 거래의 관리, (ii) 법적 의무의 충족 또는 회피, (iii) 광고, 마케팅, 영업 활동 또는 행위, (iv) 일정한 유형의 정신적 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음
 - BSA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범위를 ‘인간 활동의 체계화를 향상시키는 최종 효과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활동의 체계를 향상하는 모든 발명이 필연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USPTO 특허 연차료 납부 동향

- 연차료 납부 시기는 특허등록으로부터 3.5년, 7.5년, 11.5년의 3회로, 최초 납부(1,600달러)는 등록 비율이 높은 편이나, 2차 납부(3,600달러) 시에는 많은 특허권들이 포기되고 있으며, 3차 납부(7,400달러)시 연차료 납부 특허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특허유지를 위하여 증가하는 비용, 향후 특허권에 대한 예상 가치, 잔여 존속기간, 일반적인 경제 동향, 재정 등의 요소들이 연차료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

□ 심판 관련 동향

- USPTO는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8월)을 발표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특허권자가 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문가 증언(expert declaration)과 같은 새로운 진술증거(testimonial evidence)의 제출 허용, ② 조사의무(소장, 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기록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USPTO의 제재 조치 마련, ③ PTAB의 심판 절차 중 만료되는 특허의 청구항 해석시 법원과 일치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외의 모든 사건에서는 합리적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기준을 적용할 것, ④ 특허권자가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적절히 입증할 수 있도록 PTAB의 정정청구(motions-to-amend) 관련 규칙 개선 등임
- 1인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결정 임시 프로그램인 「Single-APJ Institution Pilot Program」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8월)
 - 동 프로그램은 1인의 APJ가 IPR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TAB의 인적 자원을 절감하여 PTAB의 심판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IPR 절차가 특허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현재는 3명의 APJ가 IPR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인의 APJ가 IPR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함
 - USPTO는 일정 기간 동안 수리된 모든 신청 가운데 동 프로그램에 포함될 신청을 선별하며, 만약 선별된 신청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 신청인과 특허권자는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또는 포함을 요청할 수 없고, 프로그램은 IPR 절차에 한정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2인의 APJ를 추가적으로 배정되어 중간 판결(interlocutory decision)을 내리고 최종 심결문을 작성함
- USPTO가 애플의 디자인특허(D618677)에 대한 재심사 중간결과로서, 무효의견을 내어 놓은 상태로 최종결정(Final Decision)까지는 7-8개월이 소요되어 2016년 상반기중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
 - FOSS Patents를 비롯한 국내외 몇몇 언론에서 USPTO의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가 지난 8월 5일 디자인특허(아이폰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 특허, D618677)를 재심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
 - 재심사부는 최종 무효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Apple의 D618677 디자인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중간 거절 통지서(Non-Final Rejection)를 발송
 - 중간 거절 통지서에서는 Apple의 선출원 특허의 우선권주장(priority)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Office Action에서는 그 전에 고려되지 못했던 다른 선행기술(LG전자(미국특허 D546,313), 샤프전자(일본특허 JPD1,235,888)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함
- USPTO은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을 소개(7월)
 - 2015년 6월 15일, USPTO은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여러 건의 결정계(ex parte) 심판을 신청한 신청인이 심판을 철회하는 경우 다른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 프로그램을 도입
 - 동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순위의 조정) 여러 건의 결정계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은 먼저 판결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중요한 발명에 대한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PTAB의 특허심판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음
- (신속성) 현재 PTAB에서의 특허심판 처리 기간은 약 3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동 프로그램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최대 2년에 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간단한 절차) 동 프로그램의 신청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석 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명서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식(PTO/SB/438)을 PDF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수수료도 면제됨
- (계속심사의 보장) 단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이 허락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여 해당 출원이 포기되는 경우, 계속심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1)를 신청하여 절차를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출원이 포기되지 않도록 함

6) 한-미 지재권 협력 환경과 추진전략

- 세계 특허사에 있어서 특허분야의 IP5 시대가 개막되고 '08. 9월 한-미 지재권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된 이후, 상표 분야의 TM5 및 디자인 분야의 ID5 체제가 결성됨에 따라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은 증진일로에 있음
- TM5와 ID5에서 각각 공통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상표분야의 심사결과 비교사업과 ID5 협력과제 도출 등에서도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
- CPC 전면 도입과 PCT-PPH 가속화, 미국 특허문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분류 서비스의 지속 실시 및 심사품질 향상 협력방안 마련 등 양국간 지재권 협력사업이 확대되어가고 있음

- 특히, USPTO 역사상 최초의 여성 청장인 Michelle K. Lee의 親한국 특허청 경향으로, CPC, CSP 시범사업, 양청간 전문가 파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 청장지명 후 첫 직원회의 및 Patent Quality Summit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한국 특허청의 CPC 전면도입을 모범사례로 평가
- 우리 특허청은 IP5 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IP 규범의 통일화와 Harmonization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
 - 미국의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와 다양한 지재권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국 user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법·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TM5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ID5에서 주도적인 변화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다원화되고 심층적인 IP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함
- 한-미 양국 특허청은 CPC의 성공적인 도입과 PPH의 지속적인 운영 및 Global Dossier 등 특허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TM5 공통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ID5 협력과제 도출 등에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 2015년 12월,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정보전문가 회의를 정례화하고, 심사관 교환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2016년에 한국 특허청에서 IP 국제심포지엄 개최시 PTAB의 판사(ADJ) 등 전문가를 파견키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유지·발전시키기로 함

2. 중국

1)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

- (수립배경)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08)」 이후 매년 지식재산권 실시 계획을 수립·실천, 지식재산권 최대 출원 국가로 도약 추진
- (목적)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종합실력을 향상, 혁신을 통한 발전과 중국 경제의 성장 촉진
 - (자주적 지식재산권 실현) '08~'13년 1단계 5개년 목표를 실현
 - 자주적으로 지식재산권 양적, 질적 성장 추진
 -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및 지식재산 집약산업 비율 증대
 - 불법복제, 위조품 차단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형성
- (전략목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법치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산정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
 - (창출) 고품질 고가치 특허 창출과 유명 브랜드 육성
 - (활용)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가치 향상 촉구
 - (보호) 강화된 법집행 및 효과적 제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
 - (관리) 지재권 행정관리 및 국가 R&D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수립
 - (기반) 국가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인재 네트워크 규모 확대

<2014~2020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주요 예상지표>

구분	지표	13년	15년	20년
창출	인구 1만명 당 발명특허 소유량(건)	4	6	14
	PCT 출원(만 건)	2.2	3.0	7.5
	국내 발명특허 평균 유지 기간(년)	5.8	6.4	9.0
	작품 저작권 등록량(만 건)	84.5	90	100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만 건)	16.4	17.2	80
활용	기술계약 거래 총액(만 억 위안)	0.8	1.0	2.0
	연간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금액(억 위안)	687.5	750	1800
	라이선스 비용 및 특허 수출입 비용(억 달러)	13.6	20	80
기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영업수입 연평균 증가율(%)	18	20	20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점)	65	70	80
관리	발명특허 출원 평균 심사기간(월)	22.3	21.7	20.2
	상표 출원 평균 심사기간(월)	10	9	9

<주요 내용(행동)>

□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및 산업구조 전환 지원

- (집약산업 발전 추진) 고품질 특허 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 비중 증대
 - 핵심 기술에 관한 특허풀 형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 축적
 -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고유한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발전 지원
 - * 「전국 특허운영 및 산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특허 거래시장 및 특허 활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 지식재산 집약산업 단지 건설을 통해 단지 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추진
 - 문화 브랜드 개발을 강화하여 문화 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 (농업의 현대화 촉진) 농업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강화
 - * 식물신품종, 농업 관련 특허기술, 지리적표시, 농산물 상표 등
 - 선진적이고 고효율의 농업 기술장비의 현대화 추진

- 식물신품종 개발 지원 및 육종 성과의 권리화 촉진
- 종자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의 협력 강화
- 식물신품종권 양도를 위한 거래 플랫폼 구축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고급화 추진

-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 규범 수립, 서비스 종사자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 참여 격려, 지식재산권 담보용자의 범위 확대 인도
- 지역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위험 보상기금 조성 격려
- 지식재산권 보험 종류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보험 시장 육성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 (행정정보 공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정보의 공개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 및 이에 대한 행정처벌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전 경고 및 행정집행자의 공정한 집행 촉진
- 행정정보 통계 범위에 위조품 단속업무 현황 포함, 연간 평가지표에 활용
- 악의적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평가 체계에 포함, 중국 사회 신용 수준의 향상 도모

○ (지식재산 집행 강화) 민생안전 및 국가 중대 사업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법집행 강화

- 중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 추진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해외사이트 통해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감독 방안 탐색

- 중국 자유무역지구(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한 조사 실시, 적당한 시기에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모델 구축
- (소프트웨어 정품화)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용 추진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감사 통한 규범화 촉진
- (처벌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 강화, 벌금 상향을 통해 권리 침해자의 재범죄 가능성 박탈
-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예방적 측면에서 공증을 통한 증거 보전업무 강화, 신속한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 업무 규범화 추진

□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

- (혁신 과학기술의 지재권 관리 강화)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 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 지식재산권 목표 평가제도 구축,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완료 후의 성과를 평가
 -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담당기관과 각 참여기관의 지식재산권 이익공유 체계 탐색
 -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 보완, 지식재산권 사업화 기관의 설립 추진
- (지식재산권 심사 강화) 지식재산권 심사 방식의 최적화 추진
 - 특허출원에 관한 빠른 심사처리제도 보완 및 상표 출원에 관한 녹색통로, 소프트웨어 신속 등록 통로 구축
 - 특허 심사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저품질 특허에 대한 검사역량 향상
- (중대경제활동 관련 지재권 평가) 중국 정부가 추진한 투자활동, 산업기획 등 중대 경제활동에 관한 지식재산권 평가제도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규범화 추진
 - 기업의 자발적인 지재권 평가업무 시행을 통해 지재권 침해 위험방지

- (기업 IP자산 관리 강화) 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가치분석 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경영활동에서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 강화
-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국방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익분배 방법의 규범화, 국방 지식재산권 비밀해제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 지식재산권이 군용 과학기술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 경쟁력 향상 추진

-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국내외 출원인을 동등하게 보호
 - 국제조직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교류 증대를 통해 자국 지식재산권 발전 도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한 심사능력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주중 외국 대사관의 지식재산권 업무 역량을 강화,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연구 수행
- (대외무역 관련 규칙 보완)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 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진행상황을 파악, 공평한 무역환경에서 보다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이끌어 내도록 추진
 - 수출·수입 상품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추진
- (기업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 추진)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강화
 - 주요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즉시 수집·발표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제 수립 추진, 해외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연합 조성을 지지하여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기초과제

- (개요) 중국 정부는 주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통계제도 보안 및 인력 육성을 기초 과제로 제시

-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프로젝트) 산업재산권, 저작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 각종 지재권 기초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 연결 추진
 - 지재권 기초정보자원 저가제공을 통해 정보이용 편리성 제고 및 전문화된 지재권 정보제공 통해 다방면의 수요 충족
- (지식재산권 조사통계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산업 통계제도 설립 및 지재권 서비스업 통계 제도 보완, 통계범위 명확화 추진
- (지식재산권 인재 네트워크 건설 프로젝트) 국가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센터 및 지재권 교육·홍보 시범학교 설립
 -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 보장조치

- (개요) 조직적 업무수행, 관리감독의 강화, 재정지원, 법제도 보완이 뒷받침 되어 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주장
- (조직실시 강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부서간 연석회의를 통해 행동계획의 실시 및 지역 지재권 전략실시 지도 추진
 - 지재권 강국건설을 위한 연구 및 전략목표, 사고방식 및 조치 제안
- (감독검사 강화) 연석회의는 전략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평가 진행,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역 지재권 전략실시 업무를 감독·지도
- (재정지원 강화) 중앙재정은 지재권 전략실시 업무 지원
 - 지재권 정책 보완 통해 중소기업 출원·유지비용 절감,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지지 역량 확대
- (법률법규 보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체제 설립,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추진, 권리남용 규제 연구

2) 「2015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 계획」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청)은 2015.4월 「2015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은 지재권 보호강화 및 창조능력 제고, 지재권 활용 강화를 통한 산업별 경쟁력 제고, 지재권 관리 및 대중 서비스 수준 향상, 지재권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 전략실시 수준 향상 등의 5대 전략을 바탕으로 80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지재권 중점분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치환경 조성 및 지재권 창출·활용 활성화
 -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지재권 관리수준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재권을 경제사회 영역의 발전과 연계·융합, 지재권이 기타 영역 발전을 견인토록 조치

3) 최신 동향

□ 중국 국무원, 중국혁신추진 발전전략 발표(2015년 3월)

- 중국 국무원은 지재권 제도를 통해 혁신을 보장하고, 기업의 주도력을 유도, 혁신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가지 의견”을 발표
- 발전전략은 지재권 보호강화(법률개선 및 집행강화), 지재권 사업화 촉진(창업인큐베이션, 지재권 기술거래 시장 확대 등), 지재권 금융활성화(창업기반을 위한 투자시장 조성), 직무발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

□ 중국 정부,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 중국 국무원 “2015 전국 지재권 침해와 위조상품 제조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요점”을 발표(2015년 4월)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 보안솔루션 업체인 치후360사에 '전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탁
 - * 전통적인 단속방식으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곤란
-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인터넷 상 권리침해와 위조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關於加強互聯網領域侵權假冒行爲治理的意見)」을 발표함(2015년 10월)

□ 중국 국무원 '중국제조 2025'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
-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향상, 정부의 지재권 서비스 개선 등을 강조

4) 중국의 법제도 개정 동향

□ 중국 공상행정관리 총국,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재 규정 발표

- 공상행정관리총국 뿐만 아니라 발개위 등에서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발표하여 어떤 규정으로 통일이 될지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지재권 권리제한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
- 중국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예외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성이 증가
 - * 중국 경쟁당국은 쉐컴사가의 부당한 특허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60억위안의 과징금 부과(15년 2월)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재권의
남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절차를 규정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법 개정 지속 추진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2년 이래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식산권이 제출한 개정안이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발효되지 못함.
- 올해 마련된 개정안은 종전개정안과 비교할 때 특허활용 촉진 및
서비스 기능강화 내용도 마련됨
- 활용강화 : ① 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활용을 태만히 하는 경우
직무발명가가 직접 특허 실시 가능, ② 특허 당연허가실시제도
도입, ③ 표준필수 특허에 대한 묵시적 허가실시제도를 규정
- 서비스 기능 강화 : ① 부정한 전리 대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② 지역지식산권국의 집행권한을 명시하고,
위조품 처리 권한을 부여, ③ 특허정보 전문 서비스 기관을 육성

5) 향후 예상되는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중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중국정부는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발표한 이래 상표법
개정('13년), 특허법원 설립('14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
행동계획 발표('14년) 등 국가 지재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2015년에는 국무원을 주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국의
혁신전략의 바탕으로 하는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여 앞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국무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가지 의견’ 발표(15.3월) :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한 혁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재권 보호, 금융 및 직무발명 강조
 - * 국무원 ‘2015 전국 지재권 침해와 위조상품 제조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요점’ 발표(15.4월)
 - * 국무원 ‘중국제조 2025’ 발표(15.5월) : 제조업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 활용 강화 필요
 - * 국무원 ‘창업활성화 대책’ 발표(15.6월) : 창업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지재권 거래 촉진
- 한편,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실시(15.8월)하여 정당한 지재권 보호와 권리의 남용을 명확히 규정함

□ 그러나 우리기업의 중국내 지재권 침해 지속

- 한류 확산으로 우리기업 제품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유통됨.
- 특히, 최근 들어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청됨.

□ 향후, 중국내 지재권 분쟁이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내 지재권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 2014년 국가지식산업국의 집행은 24,479건(전년 대비 50.9% 증가)이며 사법집행은 8,220, 행정집행은 16,259건임.
- 지재권의 출원 증가,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강화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지재권 소송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이 이와 같은 중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3. 일본

1) 지적재산정책비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향후 10년동안 해결·추진하여야 할 지적재산정책비전 수립
 -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

< 일본 지적재산정책비전 4대전략 및 정책방향 >

전략목표	정책방향
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1.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2.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 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정비
	3.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
II.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치밀한 지식재산 활동 지원
III.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1.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변화에의 대응
	2. 콘텐츠정책의 우선순위 향상
	3. 콘텐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4.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축진의 기반정비
IV.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 강화	1.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일체적 활동
	2. 일본의 전통문화에 기초한 콘텐츠·제품 등의 발굴·창조
	3.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화
	4. 전략적인 해외전개 추진
	5. 국내외 관광객을 일본으로 끌어들이는 인바운드(in-bound) 추진
	6.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
	7. 콘텐츠 인재 육성

2)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의 관련 내용

- 2015년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의 8대 주요시책 중 하나로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제시
- (추진배경 및 정책) 신흥국의 지식재산제도 및 보호수준의 차이가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로 대두
- (신흥국에 지식재산시스템 보급) 일본의 심사관, 지식재산 인재를 신흥국에 파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아시아 신흥국 정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심사 실무에 관한 일본의 지식재산제도의 광범위한 보급 추진
 - FTA, EPA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ACTA의 조기 발효를 각국에 독려
- (모방품·해적판의 대책 강화) 해외사이트에 위법하게 업로드된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요청, 합법적 사이트 이용유도, 모방품·해적판을 취급하는 사이트 근절 노력*
 - * 소비자 주의환기, 검색사이트에서 위법사이트 표시 자제 요청, 위법사이트에 광고 자제 요청 등
 - 민간대처방안 모색, 해외 서버 등 국경을 초월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방향성 검토
 - 침해발생국 단속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연수 등 개최, 현지 피해실태 및 지식재산권제도 조사 결과 등을 현지 일본기업에 제공
 - 농수산물·식품의 지리적 표시 등 모방품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대책 강화, 국내에서 침해대책 및 계발활동의 연속적 실시

3)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 지재 소송시스템 개선 추진

- 논의 배경
 - 일본의 지재고등법원 설립이 10년을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소송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 특허의 가치는 소송에서 결정되고, 이러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소송제도는 벤처투자와 창업, 기술이전 등에도 영향 미치는 핵심요소
- 그 동안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고 손해배상액이 적다 등의 지적 제기,
- 아베총리는 지재소송시스템 종합개선 지시(2015년 6월)
- 중점 논의 과제
 - 지재분쟁처리시스템 : 증거수집절차, 권리의 안정성*, 손해배상액, 금지 청구권 등에 대한 검토
 - * 권리의 안정성은 사법(법원)과 행정(심판)의 연계 등이 검토 중
 - 권리분쟁처리시스템의 활용 촉진 : 소송수행 부담에 대한 대응 (중소기업 등), 상담체제의 강화, 화상시스템 활용, 지방에 전문가 접근 등
 - 지재분쟁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및 해외 발신
- 검토 현황 및 향후계획
 - '15년 지재전략본부 내 '지재분쟁처리 시스템 검토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선 방안 모색 중('16년 3월 최종 결과 발표 예정)

□ 차세대 지재시스템 개선 동향

- 논의 배경
 - 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터, IoT(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정보의 대량생산과 활용관련 지재 제도 검토 필요
- 중점 논의 과제
 -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새로운 지재제도 : 대량의 정보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콘텐츠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정보의 취급, 자동적으로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
 - 기술혁신에 의해 새롭게 발생하는 정보의 취급 : 인공지능(AI)에 의해 발생한 창작물 등의 지식재산제도 상의 취급, 3D 데이터의 지재제도상의 취급

- 국경을 넘어 선 인터넷 상의 지재침해에 대한 대응 : 표현의 자유와 네트상의 이차 창작물의 효과 등에 대한 균형점 검토, 지재이외의 법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검토 등

○ 검토 현황 및 향후계획

- 지재전략본부 내 '차세대 지재시스템 검토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선 방안 모색 중

□ TPP 합의에 대한 지재권법 개정

○ 추진 배경

- '15년 10월 TPP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금년도 중으로 후속조치로 저작권법, 약사법, 특허법, 상표법 등 개정 필요

○ 지재권법 개정 사항

-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을 위해 약사법, 특허법 등 개정

*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

*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사실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비 친고죄 도입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 '15. 4, 아베 총리는 이시카와 현 등의 지방순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재전략 지원 강화 지시

- '15. 6, 일본 재생전략개정2015에 새롭게 지역중소기업의 지재전략 강화가 포함

- '15. 11, 종합적인 TPP관련 시책 대강에 '외국에서의 지재권 출원,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강화'가 명기

○ 지원 내용

- 47개 도도부현 57개소에 설치된 지재종합지원 창구의 기능 강화
- 의욕적이고 선진적인 지역에 예산 지원 및 지재금융의 지원
- 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지재활용의 촉진을 담당하는 인재를 파견 (신규사업)
- 조사부터 출원, 침해대응까지 체계화된 해외 전개 지원 : 정보 수집(각 국가의 지재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정보 조사, 해외출원 지원, 지역단체 상표 해외 출원, 해외 침해 대응, 해외 지재소송보험(신규) 등 추진
- 발명의 인센티브 향상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이해 촉진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등

4. EU

1) 다원화된 EU 지재권 정책 추진

- EU에서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회원국 정부, 지식재산권 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예: 유럽특허청)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집행위원회는 유럽단일특허, 유럽공동체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단속) 등에 관련된 정책수립과 규정의 설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간의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 및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또는 규정은 EU전역에 효력을 미침
- 각 회원국의 정부는 EU차원의 통일화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과 병행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련된 정책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 각 회원국의 특허청은 EU 집행위원회, 유럽특허청 등과 협조하여 자국의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재권 정책을 추진(예, 영국 특허청의 경우 2016-2020년 지재권 전략계획 수립 등)
- 제3의 지식재산권기관으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해 설립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을 들 수 있음
- EU 전체 회원국이 유럽특허기구의 회원이기는 하나, 유럽특허청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특허의 심사 및 등록업무에 관련된 정책을 채택,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성격의 국제기관임

2) EU 지식재산권과 산업경쟁력

- EU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하에서 지재권을 경제의 주요 핵심(backbone)이며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14년 3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지식재산권과 특허는 성장과 혁신의 주요 동력이라는 것을 재확인
- 유럽특허청(EPO)/유럽상표청(OHIM)에서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EU 경제활동의 약 39%(연 4조7천억 유로)가 지재권 집약산업(IPR-intensive industries)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지재권 집약적인 산업은 EU 고용의 26%(5,600만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9%의 고용에 대해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EU 전체 무역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음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평균 임금은 非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비해 41%이상 높게 나타남
 - 평균 임금 수준은 주당 715유로에 해당하며 특히 특허분야의 집약산업의 경우 64%가 높고 주당 831유로로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특허권 외에도 상표권 분야가 42%, 디자인권 분야가 31%, 저작권 분야와 지리적표시 분야가 각각 69%, 46% 非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

3) 분야별 지재권 정책 동향

(1) 특허 분야 정책동향

□ 투명하고 역동적인 특허시장을 위한 특허시스템 개선

- EU 집행위와 회원국은 특허의 획득을 촉진하여 투명하고ダイナミック한 지재권 시장을 건설을 목표로 EU 특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이를 위해 EU 단일 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단일특허제도 도입은 투명성, 거래비용, 특허시장에서 인식제고에 도움을 주고 통합특허법원 도입은 소송 비용의 절감, 법적 불안정성 제거 등의 효과를 기대
- EU는 단기적으로 IP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IP 시장을 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으로 유럽지역발전펀드(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특허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과 지원 서비스를 제
 - 유럽특허청은 PatLib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유럽집행위는 유럽 IPR Helpdesk 같은 유럽기업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
 - 유럽 IPR Helpdesk는 유럽집행위의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IP 관련 문의사항, 훈련, 인식제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 특허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단기적 처방으로 특허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재권 인식제고, 거래절차 간소화, 유연한 사업화 자금 제공 등에 집중
 - 회원국 특허청의 데이터를 유럽특허청 등록처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빠르고 광범위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여 특허시장에서 투명성 제고
 - 미활용 특허(unused patent)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범실시 등 중소기업이 쉽게 현재의 특허교환의 상황을 알수있게 웹기반의 특허교환 플랫폼을 제공하여 특허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
 -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특허문헌에 대해 기계 번역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특허가치평가 서비스를 개선하여 특허 거래 비용절감
 - EU Horizon 2020 전략에 따라 집행위는 초기 창업(early-stage)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투자할 수 있게 연구개발을 위한 자본시설(equity facility)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추진

- EU 특허제도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동일한 특허효력을 가지는 EU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을 추진 중
- 2012년 12월 유럽의회(parliament), 이사회(council)는 단일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와 번역요건에 관한 2개 규정(Regulation)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
- EU 단일 특허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 특허의 재판 관할 등 3가지였으며 이중 언어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었음

- EU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은 통합특허법원 조약(UPC Agreement)의 발효시점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통합특허법원 조약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13개국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마쳐야 발효됨
 - 즉, 단일 특허제도에 참여하는 25개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국 이상이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일특허제도가 시행
 - 최근 핀란드가 의회비준을 함으로써 2016년 2월 현재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마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등 9개국임
- 2016년에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이태리, 에스토니아 등이 UPC 조약을 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도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유럽특허청(EPO)의 최근 동향

-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청은 2015년 1월 발표에 의하면 생산성(productivity), 적시성(timeliness), 품질(quality)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선행기술검색(search) 및 심사(examination)와 관련하여 365,000건을 처리하여 2014년 대비 14% 증가한 실적을 처리
 - 특허 등록건수는 2014년 64,600건보다 조금 증가한 68,400 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률(grant rate)은 약 48% 수준이며 심사청구(examination request)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median time)은 약 28개월 소요
 -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보고서(search reports)와 견해서(written opinions)를 출원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리하는 “조기 확실성 확보계획”(Early Certainty from Search)의 목표대비 약 85% 달성

- 2015년 12월 심사 전 과정(특허정보, 등록이후 행정, 심사 등)에서 ISO9001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 강화정책으로 추진중인 내부 품질측정인 지표인 CASE(Conformity Assurance in Search and Examination) 준수율 중 검색(search)의 준수율은 98.6%, 심사는 98.7%로 목표(95%) 대비 초과 달성
- 새로운 성과평가제도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기술의 복잡성, 고품질의 특허심사에 대한 압박감, 소통 부재의 조직 문화 등으로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품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

(2) 상표관련 정책동향

-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 차원의 상표제도와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 조화,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강화등을 위해 EU 상표법 규정 개정을 발표
- 2015년 12월 15일 EU 상표법 개혁법안(Trade mark reform package)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과 상표 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2016년부터 적용하게 됨
 - EU 상표법 개혁 법안의 대상은 1989년 제정된 상표지침(Directive)과 1994년 제정된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Regulation)임
- 2015년 개정된 상표지침(2015/2436)은 회원국간 달리 규정하고 있었던 단체표장(collective marks)을 통일화하는 등 회원국간의 상표법과 절차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음
- EU 28개 회원국은 2019년 1월까지 3년 동안 지침(Directive)의 대부분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하며 2023년 1월까지 각 회원국 특허청은 상표취소(trademark cancellation)를 위한 행정절차를 도입해야 함

- 기존의 지침(2008/95)은 19개 조문(artic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새로운 지침은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새로운 지침에 반영
- 또한 개정된 상표규정(Regulation)으로 지금까지 유럽상표청이라 불렀던 OHIM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의 명칭이 2016년 3월 1일부터 유럽연합지재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
- 또한 유럽연합 전역에 상표권의 효력을 가진 공동체 상표 (Community trade mark, CTM)의 명칭도 2016년 3월부터 유럽 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됨
- 수수료 체계도 변경되어 현재 기본 3개류(class)까지는 동일한 수수료로 출원과 갱신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1류 1수수료 체계(one-class-per fee system)로 변경되어 불필요하게 류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기업부담이 줄어들음

(3)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정책 동향

- 저작권은 EU 경제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작권 집약산업은 EU 전체 고용에서 약 3.2%, GDP에서 4.2%를 담당
- EU 저작권관련 기본규정은 2001년에 채택된 지침인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일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1/29/EC)으로 2001년 EU 저작권 지침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어 저작권 집약산업이 EU 전체 고용이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 EU 저작권 지침과 현실과 괴리현상이 발생
-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에 부응하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혁신을 조장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작권 지침을 개정 추진

- 이에 EU 집행위는 보다 현대적인 저작권 체계(-framework)를 위해 2015년 12월 EU 집행위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Regulation)과 EU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는 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
 - 콘텐츠 접근을 EU 전체로 확산(Widening access to content across the EU): 문화작품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이동가능성(content portability)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즉 유럽인들이 자국에서 영화, 스포츠, 방송, 음악, e-book, 게임에 대해 온라인으로 구독하거나 구매할 경우 EU 어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됨
 - 혁신과 통합사회를 위한 저작권 예외 규정(Exceptions to copyright rules for an innovative and inclusive society): EU 집행위는 저작권 예외를 두어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 사용을 허용
 - 공정한 시장형성(Creating a fairer market place): EU 집행위는 온라인에서 창작자나 창조적인 산업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다양한 시장플레이어(market players)에 의해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적절하게 허가되고 라이선스를 통해 적절한 보상
 - 해적물과의 전쟁(Fighting piracy): 소위 follow-the-money 접근법을 통해 불법 해적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재권 집행관련 법률을 개선

(4)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관련 동향

- 100 여 년 전부터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해 오던 원산지명칭 보호제도를 1992년 EU가 출범함에 따라 전체 회원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보호(Geographical indications)로 완화하여 지재권으로 일부로 보호

- EU 지침(510/2006)은 원산지 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를 구분하여 보호
 - 원산지 명칭보호(PDO)은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리적 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만 있으면 지리적 표시로 보호가능
- 2014년 4월 말 현재 336개의 증류주(spirits), 1,577개의 와인(wines), 1184개의 식료품(foodstuff and agricultural products)이 등록되어 총 3000개 이상의 지리적 표시로 EU에 등록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으로 2010년 543억 유로(115억 유로의 수출 포함)에 달함
 - 평균적으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물품의 평균가치가 지리적표시가 없는 물품보다 약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U는 지리적 표시보호를 통해 품질 높은 생산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표시 생산자가 주로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하고 지리적 표시보호를 적극 보호
- EU 차원에서 단일 지리적 표시 보호는 1970년에 와인, 1989년에 증류주(spirits), 기타 농산물과 식료품은 1992년에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와인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는 2013년 규정(NO. 1308/2013)이고 증류주는 Regulation No110/2008, 농산물의 주요 법적 근거는 Regulation No 1151/2012 임
- EU는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과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지리적 표시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EU는 지리적 표시가 반드시 농산물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구체적인 제조 기술이나 전통과 같이 비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

-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요소(human factors)까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수공예 제품(handicrafts)과 같은 것은 특정 지역의 자원과 그 지역의 전통이 내재되어(embedded) 있다고 봄

(5) 지재권 집행(IPR enforcement) 관련 동향

- EU는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재권 집행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위조 상품(counterfeit) 및 도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2012년 유럽상표청(OHIM)내에 「유럽지재권 침해감시기구」 (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bservatory)로 확대 개편하여 지재권 집행업무를 강화
- 유럽 지재권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는 지재권의 역할강화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분석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분야별 위조품의 경제적 피해상황 보고서를 발표

<2015년에 발표된 위조품의 경제적 분석 현황>

- 향수, 화장품 등 미용산업(cosmetic)과 개인생활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의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매년 47억 유로. EU 전체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의 7.8%에 해당되며 약 5만명의 일자리 감소(3월 발표)
- 의류 및 신발분야의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해 EU 전체 정품의 판매 손실액은 263억 유로로 해당 분야 소비액의 9.7%에 달하고 약 36만명의 일자리 감소(7월 발표)
- 스포츠 용품(sports equipment) 위조품(counterfeit)으로 인한 피해 규모: 약 5억 유로,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6.5%에 해당하고 2,800명의 일자리 감소(9월 발표)
- 장난감 및 게임분야의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해 EU 전체 정품의 판매 손실액은 14억 유로로 해당 분야 소비액의 12.3%에 달하고 일자리 감소는 약 6,150명에 달함

- EU의 지적권 집행은 EU 회원국들의 상표위조, 저작물 불법복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적권 침해 구제에 대한 통일을 목표로 EU 지적권 집행지침이 마련
- EU의 지적권 집행(enforcement)은 지침(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PRs, IPRED)와 지침(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 근거
- 2014년 1월 이후 EU 국경(borders)에 대한 집행은 EU 의회 규정(Regulation No 608/2013)과 집행위 규정(Regulation No 1352/2013)에 근거하여 집행
- EU 외부 국경에서 관세당국은 지적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거나 침해 물품이라 판정이 된 경우 물품을 압수(detain)하거나 발매를 정지(suspend the release)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관세당국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거해서 압류조치를 하게 되지만 지적권 침해가 확실할 경우 직권으로(ex officio) 압류 조치 가능
 - 이 경우 보통 하루 이내(within working day) 수입업자에게 압류통지(detention/suspension)를 통보해 주고 동일한 날에 권리자에게 알려줌.
 - 권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하루이내에 압류조치 신청(application for action)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 물품을 해제해야 함
- 매년 EU 집행위는 국경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특히 연보(annual report)는 지적권 침해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 발표
- 2013년에는 약 87,000 건(cases)의 물품을 압수하였는데 2001년에 비해 약 1000%나 증가하였으며 주로 인터넷 판매 때문으로 분석됨

- 세관에 압류된 물품(articles)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2011년에 1억1천4백 점에서 2013년 3천 6백점으로 감소함

<2011-2013년 세관에 의한 지재권 집행현황>

세관조치(customs actions)	2011	2012	2013
권리자에 의한 신청 (applications by rightholders)	20,566	23,134	26,865
건수(number of cases)	91,254	90,473	86,854
물품(number of articles)	114,772,812	39,917,445	35,940,294
소비자가(domestic retail value)	1,272,354,795	896,891,786	768,227,929

- 압수된 물품의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상표가 가장 많고(93.33%), 디자인(2.89%), 특허(2.41%), 저작권(0.94%)이며 압류결과 대부분의 물품은 파기(76.85%)되고 일부 소송으로 진행(15%)
- 물품의 유형으로 의류(12.33%), 의약품(10.1%) 담배(8.9%), 기타 (11%) 주로 의류와 의약품이 주된 물품임

4) 관찰 및 평가

- EU는 지식재산권은 경제의 주요 핵심(backbone)이며 성장과 경쟁력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임
-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와 상표법 개혁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임

- 저작권의 경우는 2001년에 마련된 EU 저작권 지침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EU 저작권법을 통일화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작업이 추진중임
- 또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재권 집행관련 법률(legal framework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rights)을 개선하기 위한 공중의견(public consultation)을 현재 진행중임
-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들은 EU가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인 상표, 저작권, 지리적표시 등의 지식재산권을 유럽 이외의 시장에서까지 보호 받기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제3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1. 개요

-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환경 변화 및 최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국가지식재산 전략인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 중
 - 「지식재산 富國, 국가성장의 新 모멘텀」이라는 비전 하에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잠정)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표준 특허 확보 추진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빅데이터, 5G 등 미래 ICT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의 선제적 표준화 및 ‘기술개발-특허-표준’ 연계 확대를 통해 국제 표준특허 증가**
 -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율 : ('14) 4.5% → ('15) 7.1%
 - ** '15년 표준특허수는 782건으로 세계 5위 수준이나, 점유율은 6.4%로 세계 1위인 미국(3,101건, 25.6%)과 약 4배 차이로 여전히 미약한 실정

-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다각화·선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보호·집행역량은 미흡*한 상황
 - * 지식재산 보호순위(IMD)는 상승(31위('12)→40위('13)→41위('14)→27위('15))하고 있으나, 위조상품 시장규모 증가(5.0조원('14)→5.3조원('15)) 등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아직 개선 필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16.4),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14.12),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14.12) 등 해외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체계 기반마련, SW·콘텐츠·저작권 불법 유통 방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공고화

-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등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치평가·금융·거래 연계 촉진을 통한 IP 산업 내실화 등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15.4), 「특허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15.7),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15.12) 등 IP·기술 거래 및 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추진
 - 민관합동 TCB, TDB 운영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저작권 유통과 수익창출 기반 마련**
 -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기술신용 대출 확대, IP 매입·활용 및 회수지원펀드확대 등으로 IP·기술 거래 리스크 경감,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금융지원과 기술평가의 연계·활용 강화
 -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허락계약 건수 (‘14)4195건→(‘15)4,384건, 저작물정보 수집제공 건수 증가(‘14)256만건→(‘15)383만건
 - 그 간 정부주도의 지식재산 활용정책에서 전환하여 민간부문 활성화 등 시장중심적 지식재산 활용촉진 정책 강구 필요
-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 마련(‘15.7),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 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 익명제보센터 설치(‘15.3), 신고포상금제 도입(‘15.7)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종자·생물·전통지식 자원의 창출 및 활용 촉진 기반 마련
 - 범부처 전략 종자개발 R&D사업인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에 따른 수출중심의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기대
 - 생물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상용화 추진
 - * 특허출원 건수(4건('13)→20건('15)) 대폭 증가, '15년 2건의 기술이전(구강위생 조성물('15.7) 및 전통누룩 제품개발('15.9))을 통해 제품개발 상용화 추진
 - 한국 전통지식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과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시
 - * 범 국가차원의 전통지식 관리·활용 정책 추진, 전통식품 분야 국가지식 분류 및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국가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2. 지식재산위원회 등 상정안건 주요 내용

1) 창출분야

(1)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제9차 제24호, 2013. 11. 13.)

- 제안이유
 - 특허행정 서비스의 전 과정 개선을 통해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함
- 강한 특허를 위한 고품질 출원 환경 조성
 - (과제1)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R&D 유도
 - 정부 R&D 연구기획·과제선정 시 선행특허조사 의무화 및 지원대상 범위를 응용·개발 과제에서 기초연구 과제로 확대

- 유사 선행기술 검색, 다국어 번역기능 등을 탑재한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

(2) 지식재산 핵심 실천전략(제9차 제28호, 2013. 11. 13.)

□ 제안이유

- 기 시행 중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추진 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핵심 실천전략으로 반영

□ 10대 핵심 실천전략: (2) 고부가가치 원천, 표준특허 확보

- (배경)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특허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주요국은 연구개발-특허-표준을 연계한 국제 표준화 전략을 중점 추진*
 - * (일본) ‘ICT 표준화·지재센터’ 설치, (중국) ‘기술 특허화, 특허 표준화, 표준 글로벌화’ 추진, (유럽) 7대 R&D 사업에 특허-표준 연계 평가항목 설정
- (문제점) 국가 R&D 전 과정(기획, 수행·관리, 평가)에서 지식재산 관리전략 미흡
 - ‘先 연구개발, 後 지식재산 관리’에서 탈피, 연구 초기단계부터 우수·유망 특허를 발굴·관리하려는 노력 필요
- (추진과제: 창출 강화) 표준특허 창출 유망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특허-표준의 연계 강화
 -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특허 확보형 R&D 추진
 - 국제표준화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 R&D-특허-표준 연계 과제의 결과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표준화 지원 투자 활성화

< 연구개발 전 과정에 표준특허가 연계한 연구개발시스템(예시) >

단계	연구개발	특허	표준
연구 기획	* 표준특허 연계 과제 기획	* 표준특허 동향조사 * 표준특허전문가 지원	* 표준화 동향
과제 선정	* 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표준특허전문가 지원	* 표준전문가 지원
연구 수행	* 표준특허를 성과지표로 설정 및 관리(주기적으로 점검)	* 표준특허 분석·창출지원 * 표준특허전문가 지원	* 표준전문가 지원
연구 평가	* 표준특허 성과를 반영한 과제 평가 실시	* 표준특허 동향조사 * 표준특허 관련 성과	* 표준화 동향 * 표준화 관련 성과

- (추진과제: 확산 기반 조성) 지식재산 중심의 R&D(IP-R&D)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특허동향조사* 내실화 및 민간 확산 인프라** 구축

* 응용·개발연구과제의 특허동향 조사·분석 : (11) 89.9% → (12) 91.1%

** 연구기관-특허정보분석업체 간 자율중개시스템 및 산학연 협력종합정보망 구축 등

(3)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제9차 제22호, 2013. 11. 13, 제14차 제8호, 2015. 7. 22)

- 관계 부처 합동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해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구성, 논의를 거쳐 제9차 지재위에서 방안 확정(‘13.11.)

* 표준특허 관련 정부·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12.5. 발족)

- 표준특허 확보방안 추진현황 점검(‘14.9), 제5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개최(‘14.12)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

□ [추진 목표] '17년 표준특허 세계 4강 진입

- 표준특허 세계 4강 진입 ('12) 6위 → ('17) 4위
- 표준특허 보유기관 확대 ('12) 17개 → ('17) 30개
- 표준특허 전문인력 확충 ('12) 126명 → ('17) 300명

□ [추진 과제] 4대 전략 및 13대 중점 과제

전략	중점 과제
1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시스템 구축	1-1 쉐주기적 연구개발-표준-특허 삼각 연계체계 구축 1-2 표준특허 타겟팅 전략 연구개발사업 추진 1-3 범정부 표준특허 정책 통합관리 강화 1-4 표준특허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2 표준특허 강소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	2-1 유망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지원 강화 2-2 대학·연구기관 표준특허 창출역량 제고 2-3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시스템 구축
3 표준특허 보호 및 활용 생태계 조성	3-1 고품질 표준특허 심사환경 조성 3-2 표준특허 검증·평가 및 활용 지원체계 구축 3-3 표준특허 분쟁대응 지원서비스 강화
4 표준특허 전문인력 및 정보서비스 확충	4-1 체계적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4-2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고도화 4-3 표준특허 정책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창출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13.11)	○ 쉐 주기적 연구개발-표준-특허 삼각 연계시스템 구축 ○ 표준특허 정책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 국가 R&D특허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14.7)	○ 선순환적 SW R&D 생태계 정립 ○ K-ICT SW기술 글로벌 선도
SW중심사회 실현전략('13.7)	○ SW분야 핵심기술개발 및 SW기반 신시장·신산업 창출
ICT R&D 중장기전략('13.10)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경쟁력 확보
정부연구개발 혁신방안('15.5)	○ 원천 연구시 국내·외 시장분석 의무화

2) 활용분야

(1)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제9차 24호)

□ 특허권 거래 활성화

- (개방 특허) 특허권자가 불특정 제3자에게 자신의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특허료 감면 및 특허 실시자로부터 일정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개방 특허 제도 도입
- (특허료 감면) 제3자에게 무상 실시 허락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공유 특허권 양도 요건 완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지분 양도 허락 가능한 제도 도입
- (특허 거래)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 지원
 - 수요·공급 특허기술 매칭 및 중개를 위한 특허기술컨설팅 확대
 - * 지원 규모: ('13) 65건 → ('17) 100건
 -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IP거래정보시스템*' 운영
 - * 거래대상 IP 검색, 온라인상에 기술료 산정평가 및 계약서 작성 가능

(2)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제13차 5호)

□ 정책방향

-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제약하는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공공 플랫폼에 거래·평가·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 人的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거래를 촉진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재정립하며, 창의적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여 선진형 IP·기술 시장 육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과제, 17개 세부과제 추진

○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 * ① 통상·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 ②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 ④ 출원 중 IP의 활용 활성화,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 *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접목, ②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 *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IP 서비스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 * ① R&D 미드필더 기능 강화, ② 예산 확충 및 운용 독립성 강화

(3)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제14차 4호)

□ 특허 무상 개방에 대한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 개방특허의 무상 실시를 중소·중견기업에 허락할 경우 해당 계약 유지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특허료 50% 감면 혜택 부여

- 개방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상 양도한 기업·출연(연) 등에 인센티브 제공

□ 기업·출연(연) 개방특허의 벤처·중소기업 이전·사업화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 지역에 배치된 '특허거래전문관*' 간의 연계 및 특허거래 전문관 확대(9명 → 17명)를 통해 개방특허 이전 활성화

- * 특허청이 운영하는 수요 기술 발굴, 공급 기술 매칭 등을 담당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

- 개방특허 이전모델을 1:1 맞춤형컨설팅, 특허 사업화 공모전 등으로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금융, 이전기술개발지원 등 후속 사업화 지원 강화

□ 특허기술 수요자-공급자 간 개방특허 매칭 기반 구축

-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금융기관, 공공·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IP 활용 네트워크) 조성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고도화를 통해 개방특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개방특허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특허기술 수요-공급 정보, 기술거래사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개방특허DB

(4)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제14차 6호)

□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 현재 국유·공공(연) IP·기술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의 실시를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전용실시를 허용하고 있어, 기술 이전·사업화 등 국가 R&D 성과물 등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 (전문가 人的 네트워크 접목·가동) IP·기술 공공 DB 및 거래 플랫폼에 거래(이전·사업화 등)·금융·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 人的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하여 기술시장 속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거래 및 시장 형성 촉진

□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 (수요기반 관계형 거래 촉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에서 탈피, 전문가팀(거래·금융 등)이 고객이 願(customer-pull)하는 IP·기술 및 솔루션 제공

* 특허기술 미활용의 주된 이유는 수요기관 발굴의 어려움(62.4%)(‘13년도 지식재산실태조사)

- (사업기회 발굴 등 윈스톱 지원) 상품성·활용성 등 고객 수요에 기반한 사업기회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P·기술 거래 전문서비스기업 육성 등

□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기능 최적화) 대학·출연(연) 담당조직의 전문성 및 예산·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의 순과정에 걸쳐 시장성·사업성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내부 마케팅(Internal Marketing) 역할 대폭 강화

(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제14차 9호)

□ 공공기관 대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 공공기관(총 316개 기관)이 따라야 하는 시책 수립을 통해 참여 공공기관 및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확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개정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저작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방 추진을 위한 법령상 근거 정비

□ 공공저작물 활용 사업모델 창출

-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 사업모델 창출

*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상용화 컨설팅 제공('14년 6개 → 15년 15개 목표)

□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지원

-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저작권리 확인을 지원하고 확인된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부착하여 개방 지원

* 14년 문화재청 포함 32개 기관 지원 → 15년 40개 이상 기관 지원 예정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홍보 및 관련 인식 제고

○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미디어 활용 홍보 등

* 상반기 : 관계기관 설명회(1회), TV광고, MBC 드라마 ‘화정’ 통한 홍보 등 실시

<활용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특허 개방 및 활용촉진 방안 ('15.7)	○ 특허기술 수요자-공급자간 개방특허 매칭기반 구축 ○ 기업·출연(연) 개방특허의 벤처·중소기업 이전·사업화 지원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14.12. 국과심)	○ 質 중심 특허성과 정보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 방안 ('15.12)	○ 콘텐츠 가치평가 기반 금융기관의 연계 강화
시장 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15.4)	○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 기업 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14.10. 과기자문회의)	○ 금융권의 기술평가 기반 금융 활성화 ○ IP·기술기반 금융투자 활성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13.11)	○ 유망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지원 강화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15.5)	○ 중소기업 맞춤형 R&D지원체계 구축

3) 보호분야

(1) 지식재산 핵심 실천전략(제9차, 2013.11.13.)

□ 추진과제

○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해외지재권 침해 대응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 해당국 정부에 조치 요구, 국제기구·관련단체와 협력 등에 대한 필요 조치 지원

** 해외 진출기업의 권리 확보 및 침해 대응을 위해 구축된 IP-Desk의 기능 강화

- (정보제공) 해외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동향정보 제공, 인식제고
 - 지재권 세계동향, 주요 분쟁 및 이슈, 각국의 보호제도와 대리인정보, 침해실태 현황 등 관련 정보 제공·공유
- (해외 분쟁지원 강화) 국내·외 지재권 분쟁 정보·애로 상담 등 선제적 분쟁예방 및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 및 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 강화, 소송보험 지원 등
 - *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활성화 및 재외공관, KOTRA, 해외저작권센터, IP-Desk 등 연계, 국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 대·중소기업, 동종기업 간 국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국제 지재권분쟁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한 분기별 점검 개선 추진

(2) 중국 등 FTA 시대를 대비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제12차, 2014.12.10.)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홍보 및 현지 권리 확보) 상표 무단 선등록 피해 대응 등에 대한 기업 홍보 강화 및 해외진출전 先권리확보를 위한 해외 상표출원 지원 확대
- (해외 상표 브로커 대응) 현지 상표 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국내에서 중국 상표 상담, 상표 검색서비스제공 및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기업피해사례 접수를 통한 One-Stop 기업지원체계 구축

□ 해외 모조품 단속 강화

- (산업 밀착형 단속지원)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직접 기업의 모조품 단속지원을 하도록 하여 현장 집행력 강화 추진
 - * 침해피해가 많은 산업단체(전자, 의류,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협회)를 우선지원('15년)하고 추후 농수산물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16년)
- (해외거점 기능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에서의 온/오프라인 침해감시기능 강화

□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 K-브랜드 모조품의 현지 세관단속을 통한 국경조치 유도를 위해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 확대
- (K-브랜드 보호환경 조성)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 캠페인 개최 등 해당 국가 세관 협력을 통한 해외 모조품의 타국 유입 차단 분위기 조성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의 의견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한 해외 브랜드 보호체계 구축
 - 지재위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 (국제협력 강화) 한·중 협의채널을 통한 브랜드 보호협력, FTA 협상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 위원회 구성 등 국제협력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 *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상표청장회담, 中지방정부협력등, (한·베트남/태국) 특허청장회담등

(3)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제12차, 2014.12.10.)

□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차단조치 확대

○ (관세청)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IPIMS를 통해 반입 즉시 지재권자에게 통보·침해사실 확인 등 신속한 통관 보류조치 강화
 - * IPIMS: 세관에서 침해물품을 사진과 함께 시스템에 등재하면 상표권자 등에게 SMS로 즉시 통지, 상표권자가 침해감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면 세관에서 확인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하여 관세청·특허청간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 강화
- 정품과 위조상품의 동일성 외에도,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세청·특허청간 정보 협력체계 구축 강화
 - * 수출·입 단계에서 위조상품 침해판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의 상표 심사·심판 노하우에 기반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외교부) 한·중 지재권 양자 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

(4) 2015년 K-브랜드 보호 세부추진계획 (제13차, 2015.4.10.)

□ (특허청) 지재권 침해대응 종합체계 구축

- (침해단속 강화) 산업단체 중심 모조품 단속 지원,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 등
- (국내기업 지원 강화) K-브랜드 상담창구 운영, 해외출원·지재권 등록 등 IP-DESK 지원기능 강화, 'K-브랜드' 컨설팅 실시 등

□ (관세청) 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 (정책협의회 운영)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관세청(통관지원국) 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세관협력 추진
- (외국세관 협력 강화) 중국·태국·베트남 등 세관협력을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협력 강화, 현지 공무원 대상 모조품 세미나 개최, 단속노하우 공유 등

□ (외교부) 침해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제고

- (지재권 중점공관 추가지정) 특허청·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재권 중점공관 추가 지정 검토
- (해외 협력체계 구축·강화)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 추가 구축 (칭다오, 광저우, 프랑크푸르트 등) 추진 및 재외공관 지재권 매뉴얼 송부 등 기능 강화

□ (무역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및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 (종합대책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능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통한 법령·제도 설계, 유관기관 협력, 역량강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 기반 마련
- (실태조사 추진) '15년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

(5) 2015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 (제13차, 2015.4.10.)

□ (관세청) 위조상품 반입 방지 및 국내불법유통 단속 강화

- (반입 방지) IPIMS를 통한 위조상품 통관보류 조치 강화, 해외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국제공조 및 불시·집중 모니터링
- (유통 단속) 특허청과 주기적 정보교류 확대(불법사이트 정보공유 등)

- (외교부) 해외 위조상품 유입 예방을 위한 한·중 상표 및 특허당국간 양자 협의(상표 7월, 특허 11~12월)시 외교부 차원의 지원 및 협조

(6)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제14차, 2015.7.22.)

□ 지재권 보호전략

- (IP-DESK의 지원 등에 의한 행정구제절차의 활용) 사법구제에 비해 간소한 절차, 적은 비용, 행정기관의 정기적·지속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 * 중국 IP-DESK는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등 5곳에 설치·운영 중
- (저작권 침해 대응) 중국 현지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저작권인증, 라이선싱, 행정기관 신고(행정처벌), 민형사 소송 등, 저작권 애로발생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 지원활용 가능

(7)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제15차, 2015.12.23.)

□ 소송보험 운영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 수행보험사 참여*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업단체 등의 단체가입 활성화를 통해 보험료 인하 유도
 - * 수행보험사 : '13) 3개 → '14) 3개 → '15) 3개 → '16) 5개 이상
- 지자체 예산 매칭(부산, 대전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확산('16.상)
- 수출기관·기업단체 등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가입 기업수를 확대하고 '18년 이후에는 연간 1,000개 이상 기업 가입 유지(~'18)

□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 중소기업을 위한 차이나 단체보험('15년 시범) 개선 운영('16.상~)
 - * '15년 피소대응 상품(시범운영)에 '소제기' 보장내용 추가 등

- 기술별·업종별 소송보험 단체상품 개발 및 지원('17~)
 - * 전자·정보·통신, 농업기술 등 관련 업종단체와 공동 개발 및 가입 지원
- 중소기업 등의 가입자 선호(소액, 단체보험 등)에 따른 상품가입 지원 강화('16.상) 및 수요자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추진(~'18)
 - * 수요자가 보험의 보장지역 보장내용 보장한도 등을 선택하여 설계 가능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인프라 구축

- 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상담 창구 운영, 컨설팅·분쟁정보 제공 사업 등과 연계('16.상)
- 지역별·권리별 분쟁통계, 분쟁대응 소요비용 등 소송보험 관련 통합정보 DB 구축·공유('17.하~)
- '소송보험 온라인 종합포털'(가칭 IP-Insure) 구축 및 운영('18.상)
 - * 보험가입 지원, 보험관련 종합상담, 주요통계 공개, 교육콘텐츠 제공 등

(8)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제16차, 2016.4.6.)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현지보호 확대

- (해외진출 사전교육) 해외진출 예정기업 등 대상,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등 교육 실시 (서울·부산·광주 등 실시)
- (해외 IP-DESK 확대) 신규진출 법인수 등을 고려하여 IP-DESK를 확대,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강화
- (소송보험 가입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K 브랜드 보호사업 등 대상 기업들은 해외 소송보험료 가입지원 우대

□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대비 보험지원 확대

- (기술 중소기업 지원 강화) start-up기업 및 분쟁대비가 시급한 벤처기업에 소송 보험료 지원 확대

- (소송보험 저변 확대) 시장 효율적 소송보험 확산을 위해 가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료 인하 추진

<보호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16.4)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K-브랜드보호종합대책('14.12)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해외 모조품 단속강화 ○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 강화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 대책 ('14.12)	○ 위조상품 반입방지 및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 불법 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등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15.4)	○ 중소기업 IP·기술유출 및 침해대응 지원 ○ 특허심사 품질제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15.4)	○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 해소 ○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 ('14.3)	○ 심사지원 전문성 강화 ○ 강한 특허 창출 지원

4) 기반분야

(1)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9차, '13.11)

- 사용자·종업원 간 호혜적·협력적 제도 환경 조성
 - (과제1) 호혜적 보상규정 모델 및 보상기준 마련
 - (과제2) 자율적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체계 확립
- 제도 도입·운영 및 정부 지원시책 간 연계 강화
 - (과제3) 정부사업 참여우대 확대 및 참여자격 연계
 - (과제4) 특허심사 우대 및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

□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효과성 제고

- (과제5)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타겟팅 강화
- (과제6)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보상금 세제 개선

(2)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0차, '14.3)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 ('14년 상반기)

- (현행) 콘텐츠 창작자는 대부분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 위주로 소수 유통사와의 계약 관계상 불리한 지위, 불공정거래가 관행화
※ 콘텐츠 기업의 94%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95%는 종사자수 10인 미만(2013, 문체부)
- (개선) 콘텐츠의 저작권 계약 시 기본적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저작권의 공정거래 정착 도모
 - 일반적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 '공통 표준계약서' 마련 및 콘텐츠 장르별 이용형태 등을 반영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완
 - 콘텐츠산업 내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조건에 반영 △산업계 종사자 교육·홍보 등 추진

□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14년 상반기, 공공부문 → 하반기, 민간부문)

- (현행) 공모전 주최측은 공모전 요강에서 '저작권재산권은 주최측에 귀속됨'을 사전 고지하고,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것이 관행화
 - 대부분 대학생, 취업준비자인 응모자는 수상작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저작물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불가
- (개선)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전 취지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창작자의 계약상 지위 보호 방안 강구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의 당사자로서 콘텐츠 제작·유통사는 저작권 귀속 주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반면,
 - 창작자는 저작권 귀속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약자의 지위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될 소지가 높아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선)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되, 거래상 '갑을관계'의 불합리한 저작권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다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균형 유지와 콘텐츠산업 위축 방지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

(3) 창작자의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 (10차, '14.3)

□ 창작자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14.3~)

- (현행) 상대적으로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통사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 수용 우려
- (개선) 창작자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 제공
 - '일반 표준계약서 해설집' 마련, 배포('14.6~)
 - 저작권 불공정계약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맞춤형교육 실시('14.3~)

□ '찾아가는 저작권 컨설팅' 실시('14.3~)

- (현행)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에 따른 피해 호소, 저작물의 경제적 활용에도 미흡
- (개선)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구성, 저작권 법률상담 및 비즈니스 멘토링 제공

□ 저작권 안심 콜센터(대표 상담센터) 운영('14.5월 개소)

- (현행)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증가하는데 비해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저작권 상담 수요 증가
- (개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이용, 보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저작권 상담 서비스 제공

(4) 창작자가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조성 (10차, '14.3)

□ 민관 합동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 (추진체계)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연계 민관 합동 추진
- (주요내용) 공익광고 캠페인을 비롯, 대중매체, 온라인, 영화관 등 생활접점 매체의 전방위 활용으로 대국민 밀착 홍보

□ 콘텐츠 이용자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확대

- (현행) 특히 청소년 및 젊은층에서 온라인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이 높아, 온라인으로 주 수익원이 이동하는 콘텐츠산업 성장에 걸림돌
- (개선)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 확대 및 콘텐츠 이용자 대상별 저작권 교육 확대

(5) 지재권 표시 질서 확립 및 인식제고 (14차, '15.7)

□ 올바른 지재권 표시 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 소비자들이 “출원”의 의미를 등록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법 시행 규칙 정비* 추진

* 출원과 등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특허출원 표시를 할 때 “특허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로 표시하도록 규정

※ 국민들이 출원과 등록의 의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기반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15.7)	○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 사업모델 창출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15.4)	○ IP서비스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방안('15.7)	○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행정·사법적 조치강화 ○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 개선 지재권 표시 질서 확립 및 인식제고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14.12)	○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지재권 보호교육 강화 ○ 위조상품 반입방지 및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 불법 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등

5) 신지식분야

(1)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추진현황

□ (추진배경)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전략이 필요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달러 → '12년 449), 10대 다국적기업이 70%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 심화

[주요 추진 실적 (요약)]

① 주요 수출대상국 법·제도 및 시장정보 조사

- (법·제도) 주요 수출대상국(21개 국가*)의 종자산업 및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정책 등을 조사('13~'14)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
 - 조사내용 : 수출입 제도, 품종보호제도, 관련기관 정보, 정책동향 등

* 21개 국가 : 아시아 11개국, 유럽 6, 북중미 2, 아프리카 1, 오세아니아 1

○ (시장동향) 10개국 14개 품목에 대해 시장 선호 형질(맛, 형태 등), 시장규모, 경쟁업체 동향 등을 조사('12~'15)하여 육종전략 수립에 활용

* 조사지역 및 대상품목(10개국/14개 품목) : 중국·일본(고추, 배추, 양배추, 토마토), 이집트(고추, 수박, 토마토, 벼), 인도네시아(벼, 감자, 옥수수), 터키(파프리카, 양파, 토마토, 감자 등), 스페인(수박, 옥수수 등), 베트남(종돈, 종계) 등

② 품종육성 기초 마련

○ (유전자원 수집) 식물 유전자원 7천점, 종돈 3천마리, 종계 12천마리 등 목적 품종 개발에 필요한 유용 유전자원 확보

○ (계통육성) 확보한 유전자원 간 교배를 통하여 목적형질을 보유한 '계통(특정 형질을 고정적으로 보유한 집단)' 1만개 육성

* 계통간 교잡을 통하여 원하는 형질을 하나의 개체에 집적한 신품종을 개발하게 됨

○ (기반기술 개발) 품종개발 효율성 향상, 개발기간 단축 및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한 기초·기반 기술 개발

- DNA 분자마커 473건 개발, 기업 등에 분석 서비스 제공(10만건)

* 기존 선발방식과 DNA 분자마커 활용 방식 비교

기존 방식	DNA 분자마커 활용	분자마커 활용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배 후 수백~수천 개체를 1년간 재배하여 원하는 특성 보유개체 선발 (연1회 수년간 반복수행) <p>- 시간소요 ↑(10년), 비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배 후 어린 개체의 잎 등을 채취,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원하는 특성 보유개체 선발 (1년에 수차례 시험 가능) <p>- 시간소요 ↓(7년), 비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짧은시간, 저비용으로 원하는 형질 보유 개체 선발(신속한 품종개발로 경쟁력 향상) (단) 마커개발에 많은 비용 및 노력이 소요 (품목, 형질별로 다른 마커 필요)

- 고추 풋마름병, 수박 덩굴쪼김병, 배추 뿌리혹병 등 병리검정기법 개발

- 품질지표 기준(파프리카), 채종기술(무), 종자 가공처리(수박) 등 상품화 기술 개발

③ 국내·외 육종 및 유통 기반 구축

- (해외 육종기지) 수출 대상국의 기후 및 토양 등 현지 환경조건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품종개발을 위해 해외 육종기지 구축(7개국)
 - * 육종기지 설치 현황 : 벼(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옥수수(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아열대 바리(베트남, 말레이시아)
- (해외 전시포) 수출국 현지 종자 판매상 및 농업인 등에게 품종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전시포 운영(14개 품목*, 23개 국가** 123개소)
 - * 14개 품목 : 고추, 배추, 무, 수박,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벼, 감자, 옥수수, 바리과
 - ** 23개 국가 : 아시아 13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1개국, 미국
- (해외 유통채널) 수출전략 품목의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 거점 유통법인 및 사무소 운영(4개국)
 - * 4개국 : 중국·인도(농우바이오), 베트남(아시아종묘), 캄보디아(한화무역)
- (국내 홍보) 개발된 신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비교 전시포 운영 및 농가현장 실증시험포 등 주산지 중심의 홍보 추진
 - 전시포 77개소(파프리카 등 7개 품목), 농가실증시험 27회(양배추, 양파, 토마토 등 6개 품목), 품평회 63회(양배추, 토마토 등 6개 품목) 개최

④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

- (제도운영) 품종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심사업무 품질 제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시행('13.8.13.), 「품종보호 분쟁 사례집」 배포('14.10.)
 - * 식물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과 MOU 체결('14.4.)
 - 품종보호 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12)*, 세계 7위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 * ('98) 종자산업법 시행, 27작물→('02)113작물→('08)223작물→('12)모든 작물
 - ** 상위국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⑦한국, 최근 5년('09~'13) 국내 품종출원 건수 2,913건

- (대외협력) 품종보호 관련 국제 교류·협력 강화
 - 품종식별 연구 및 영양체 보증체계 기술교류 MOU 체결(네덜란드 '14.11.)
 - 싱가포르 특허청과 품종보호 MOU(종자원이 재배심사 수탁) 체결('15.7.)

⑤ 품종개발 및 수출·수입대체 성과 창출('13.7.~'15.11. 실적)

- (품종개발) 수출전략 품목(고추, 무, 배추 등) 85개 품종, 수입대체 품목(토마토, 양파 등) 58개 품종 등 현재까지 143개 신품종을 개발
 - * 산·학·연 축적 육종소재와 육종연한 단축기술(유전자분석 등)이 접목, 조기에 성과 창출

	<p>◆사례1 : 중국 수출용 고추 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병저항성, 매운맛 강, 붉은빛 강 ·현지 일반 종자(250\$/kg)에 비해 SJSKY-1 30% 이상 고단가로 수출(350\$/kg) (에스케이그린) ·'14년 9만\$, '15년 15만\$ 종자수출 		<p>◆사례2 : 수입대체용 양파 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형 좋고, 추대 적으며, 저장성 강 ·국내 8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대 이조은플러스 체 및 중국시장 수출 가능 전망 (농협종묘) ·'14년 3억원, '15년 3억원 종자판매
---	--	---	---

- (종자수출) 개발된 신품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393만달러 수출
 - * 기업 설문조사 결과 종자 수출기업의 56%가 GSP사업 참여 이후('13년 이후) 처음 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
- (수입대체) 종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109억원 수입대체
 - 개발된 품목은 품평회, 전시포, 유통기업 협력* 등을 통해 농가 확산 유도
 - * (사례)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신품종을 개발·제공하고 이마트는 농가와 계약재배 및 상품화, '15년도에 4개 품목(양파, 양배추, 배추, 파프리카)에서 5억원 매출

◆ 품종개발에 최소 5~7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품종개발 및 수출·수출대체 등 궁극적인 성과는 연구 2단계('17~'21)에서 본격화 전망

* 연구 1단계('12~'16)는 기반·기초연구, 2단계('17~'21)는 품종개발 및 수출 등 성과 달성

제3장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제1절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년~2016) 기간 중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의 예산 누적 투입액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12조 7,756억원 규모

* 년도별 중앙부처 수 : '12년(21개), '13년(20개), '14년(19개), '15년(18개), '16년(19개)

○ 이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투자목표(10조 1,533억원) 대비 25.8%를 초과 달성한 투자 규모임

- 신지식 분야(11.6% 부족)를 제외하고, 활용(75.7%), 기반(43.3%), 보호(28.4%), 창출(21.2%) 분야 모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투자 계획 대비 초과 투자 달성

<2012~2016년 분야별 투자 누적액 현황(단위: 억원)>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비관리*
기본계획	75,631	4,145	9,631	3,140	8,986	-
실시계획	91,649	5,323	16,921	4,499	7,939	1,425

※ 기본계획(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상 재정투자계획)

※ 실시계획(각 년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각 중앙부처 재정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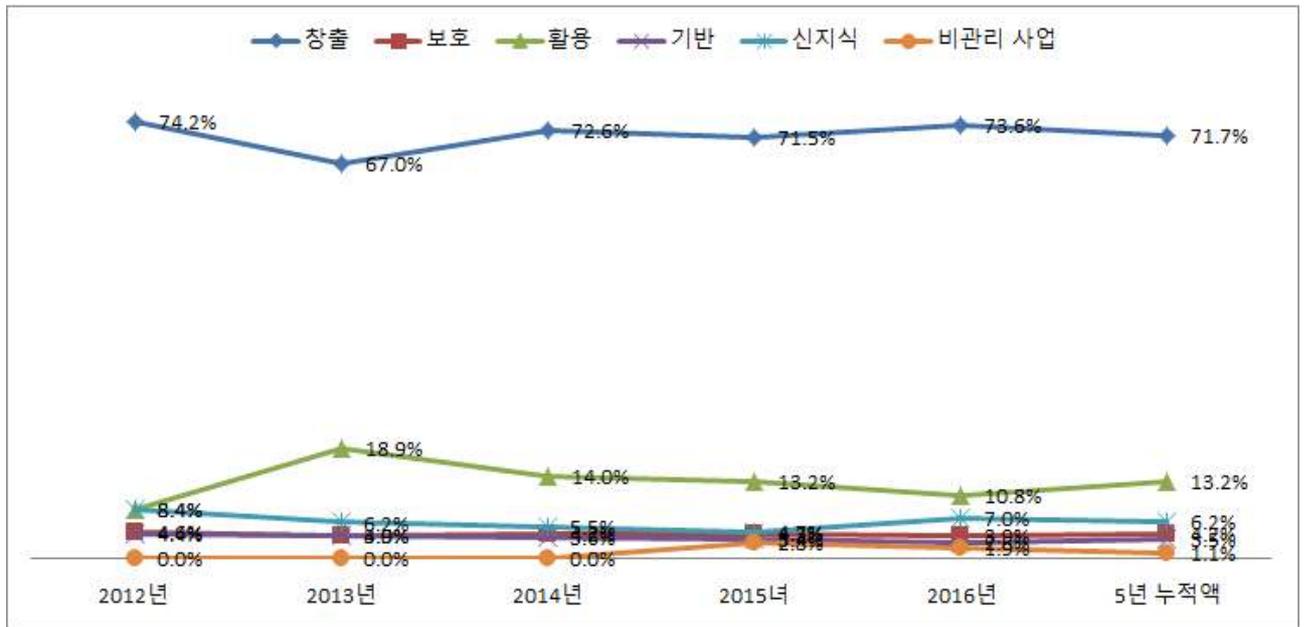
* 기본계획상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의 예산으로 '15년도부터 포함됨

○ 5년('12-'16)간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는 창출분야가 9조 1,649억원 (총 누적액 대비 71.7%)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활용 1조 6,921억원 (13.2%), 신지식 7,939억원(6.2%), 보호 5,323억원(4.2%), 기반 4,499억원(3.5%) 순으로 나타남

*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1,425억원(1.1%) 별도

- 특히 창출 분야는 과제수 기준 94% 정도가 R&D 사업으로 되어 있어, 타 분야의 예산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며, 기존의 R&D 사업과 지식재산 사업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줌

<2012~2016년 분야별 투자 비중 추이>



○ 과제 수 기준으로는 신지식분야가 총 341개(총 누적 과제수 대비 28.3%)로 가장 많았고, 기반 234개(19.4%), 창출 224개(18.6%), 보호 214개(17.7%), 활용 191개(3.5%) 순

- 창출 분야는 대부분 R&D 사업으로 한 과제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과제수로는 18.6% 수준이나 투자규모는 71.7%에 달함
- 보호 분야가 과제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타 분야에 비하여 투자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활용 분야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시행된 2013, 2014년에 가장 많은 규모의 투자 증가를 보이며 타 분야에 비하여 빠른 확대를 보임
- 신지식 분야의 경우는 특성상 과제수는 많으나 예산 규모는 오히려 2013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의 추세를 보임

※ 신지식 분야는 기존에는 지식재산으로 취급되지 못했던 종자, 생물 등의 자연자원, 전통지식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화를 추진하는 사업들로, 주로 재도의 개선 또는 DB 및 아카이브의 구축 등의 내용으로 추진됨.

<2012~2016년 분야별 투자 계획 및 현황>

(단위 : 억원,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창출	계획*	13,217	14,621	15,666	15,971	16,156	75,631
	투자**	12,330	16,350	18,992	20,379	23,598	91,649
	과제수***	53	51	48	35	37	224
보호	계획*	731	808	836	868	902	4,145
	투자**	771	977	1,108	1,214	1,253	5,323
	과제수***	53	44	42	36	39	214
활용	계획*	1,494	1,883	2,069	2,193	1,991	9,631
	투자**	1,395	4,615	3,672	3,770	3,469	16,921
	과제수***	43	37	38	39	34	191
기반	계획*	591	609	627	646	666	3,140
	투자**	723	960	954	975	887	4,499
	과제수***	54	52	43	41	44	234
신지식	계획*	1,464	1,964	1,841	1,828	1,888	8,986
	투자**	1,389	1,511	1,444	1,336	2,259	7,939
	과제수***	82	72	66	61	60	341
(비관리)	투자**	-	-	-	810	615	1,425
	과제수***	-	-	-	1	1	2
합계(계획)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합계(투자)		16,609	24,411	26,170	28,485	32,081	127,756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재정투자계획 금액

** 각 년도별 시행계획 상 투자 금액

***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된 관리과제수로서 비예산 과제가 다수 포함

□ 5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창출(17.6%), 보호(12.9%), 신지식재산(12.9%) 분야 순으로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기반(5%) 분야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활용분야는 '13년 2.3배의 대폭 확대 이후 추가적 예산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생명자원 발굴 및 기반구축 등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가 현저히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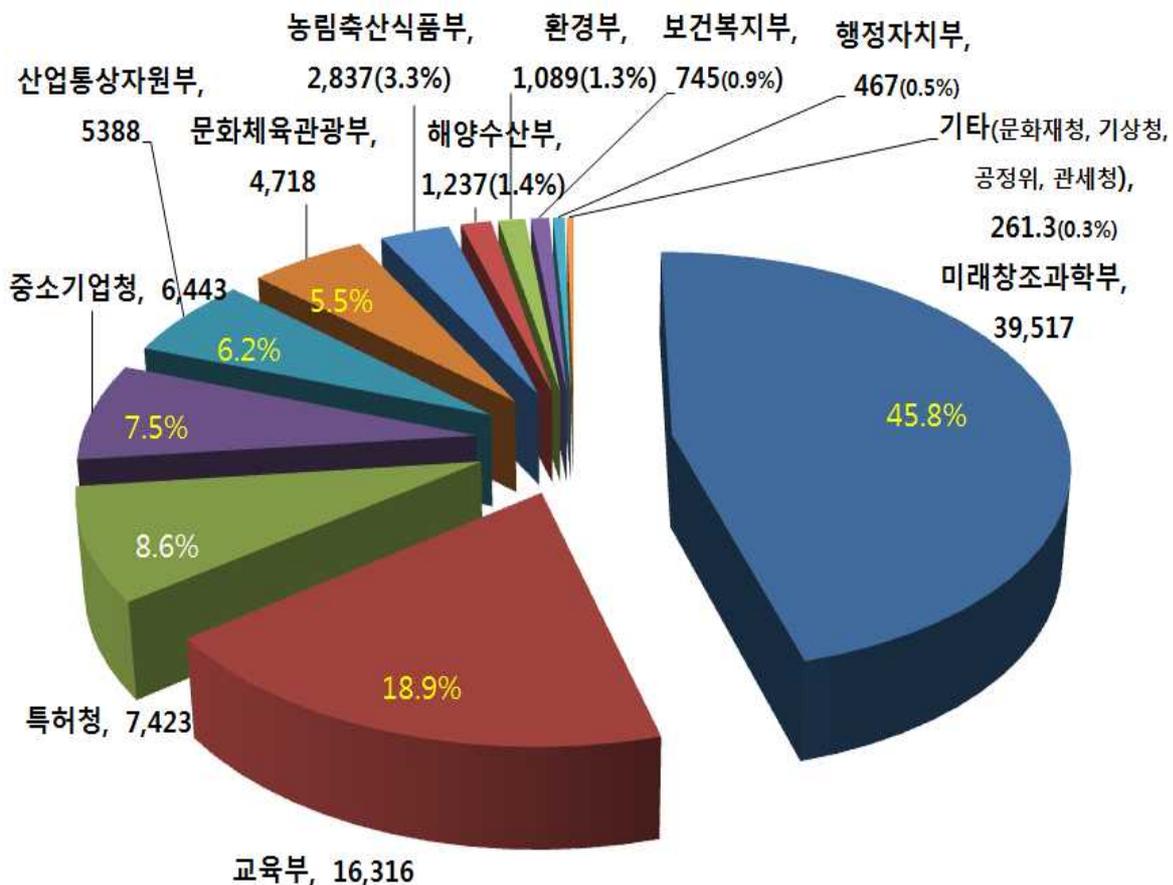
※ '15년 대비 '16년 투자증가 : 민간육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84.1%, 농식품부), 품종판별 기술개발 시스템구축(251%, 농식품부), 생물자원의 보존관리표준화(52.1%, 환경부) 등

□ 부처별 예산투자 규모는 3개년('14~'16) 누적 총 투자액*에서 미래부, 교육부, 특허청, 중기청이 약 80%(약 6.97조)를 차지

* 3개년 전 부처 누적 총액 약 8.6조(2013년 부처 개편으로 2014년 이후 부처별 집계)

○ R&D 예산 규모가 큰 미래부(3.95조), 교육부(1.6조) 뒤를 이어, 기업 및 산업의 특허 창출 및 활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0.74조), 중기청(0.64조), 산업부(0.54조) 順으로 지식재산 과제에 투자

〈부처별 지식재산 사업 예산 (2014~2016 누적액(억원), %)〉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4개년간 ('13년~'16년) 관리과제는 총 3,072개이며, 투입하는 예산은 총 5조 2,000억원 규모임

○ 총 3,072개의 관리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323개)가 가장 많고, 인천시(301개), 강원도(264개), 대구시(261개), 울산시(237개) 순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가 8,043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경기도 6,360억원, 부산광역시 6,319억원, 전라북도 5,579억원, 울산광역시 3,590억원 순

< 지방자치단체 관리과제 및 재정투자 현황('13-' 16) >

지방자치단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관리 과제 (수)	재전 규모 (억원)								
서울특별시	40	719	34	766	33	882	40	956	147	3,323
부산광역시	75	833	40	1,126	40	2,402	36	1,958	191	6,319
대구광역시	59	2,690	51	966	76	2,203	75	2,184	261	8,043
인천광역시	76	1,750	85	70	75	920	65	683	301	3,423
광주광역시	31	270	34	293	27	269	25	240	117	1,072
대전광역시	36	279	36	396	16	136	21	235	109	1,046
울산광역시	67	1,095	65	1,058	60	1,013	45	424	237	3,590
경기도	48	1,918	49	1,923	49	1,585	47	934	193	6,360
강원도	70	1,203	64	203	68	175	62	162	264	1,743
충청북도	48	326	46	384	39	340	36	475	169	1,525
충청남도	24	174	21	47	21	751	21	722	87	1,694
전라북도	121	2,385	107	1,819	45	749	50	626	323	5,579
전라남도	43	1,499	43	876	37	673	17	63	140	3,111
경상북도	33	96	57	563	56	1,019	50	1,632	196	3,310
경상남도	28	651	26	52	23	47	23	58	100	808
제주특별자치도	53	175	38	72	38	189	38	207	167	643
세종특별자치시	14	26	19	81	18	67	19	220	70	394
합계	866	16,089	815	10,695	721	13,420	670	11,779	3,072	5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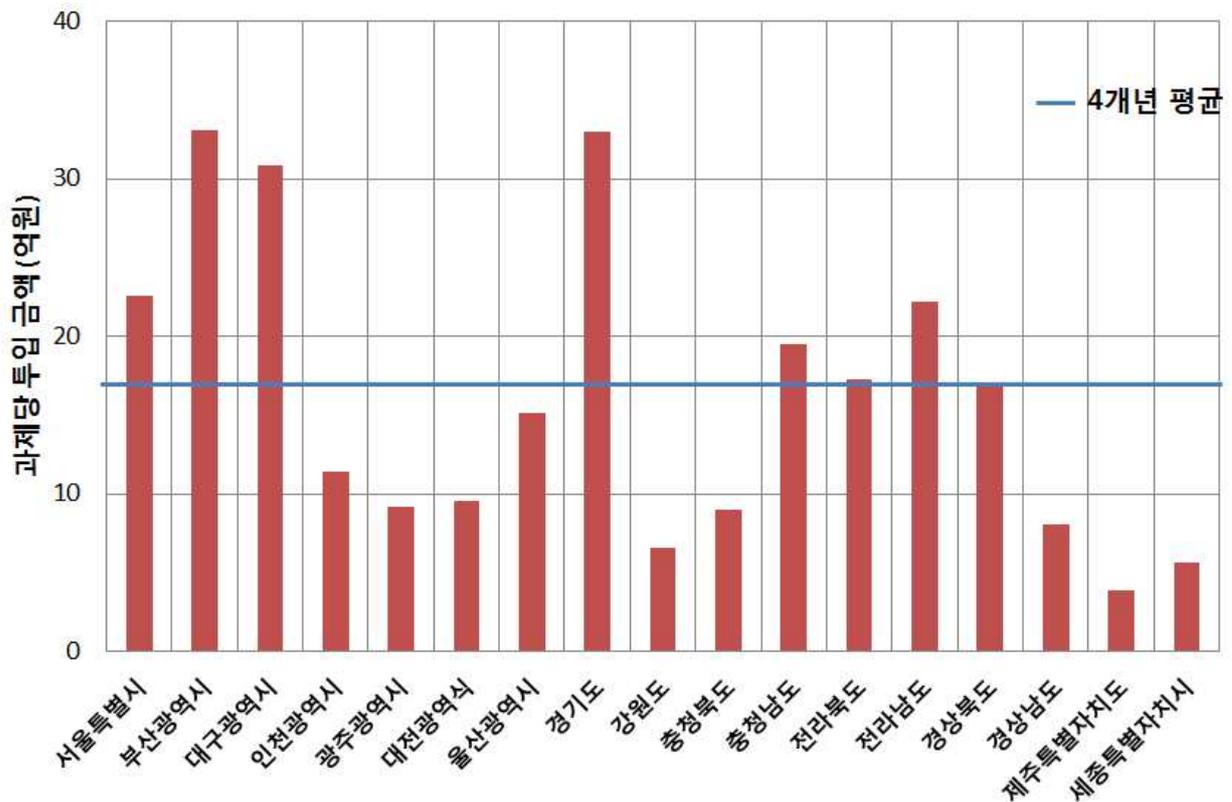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4개년간 ('13년~'16년) 1개 관리과제당 투입 예산평균*은 17억원 규모임

* 과제당 투입 예산 평균은 '13년 18.6 억원, '14년 '13.1 억원, '15년 '18.6 억원, '16년 17.6억원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1개 관리과제당 평균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가 33.1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경기도 33억원, 대구시 30.8억원, 서울시 22.6억원, 전라남도 22.2억원 순

- 이는 주요 광역도시권 별로 대형 과제가 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관리과제당 투입예산>



제2절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1.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결과

□ 2012~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주요결과

* '12년부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점검·평가는 '13년부터 실시

○ 4년*간 총 76개 평가과제 중 우수 17개(22.4%), 개선필요 10개(13.2%) 선정

* '12년~'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 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과제 19개 중 우수 4개(21.0%), 개선필요 3개(15.8%)로 나타남

※ 역대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 ('12) 우수 19.0%, 개선필요 14.3% → ('13) 우수 27.8%, 개선필요 11.1% → ('14) 우수 22.2%, 개선필요 16.7%

○ '개선필요' 과제는 차년도에 평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고려시 총 70건 중 7건(10%) 개선필요 과제가 도출됨

- 2개 과제가 다년도*에 걸쳐 개선필요 과제로 집계

*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문화 조성'(보호, 문체부, '14, '15년), '지식재산활동 고도화기반 확립'(기반, 교육부, '13, '14, '15년)

- '개선필요'는 보호 및 기반 분야에 총 8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창출 및 활용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 중

<분야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12~'15)>

(단위 : 과제 건수)

5대분야	우수	보통	개선필요	계
창출	4	8	0	12
보호	2	11	4	17
활용	3	14	0	17
기반	3	5	4	12
신지식	5	11	2	18
합계	17	49	10	76

- '개선필요' 과제는 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요구나 네트워크 강화 등 정책협조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개선필요 지적사항 : 1)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및 대안제시 노력 필요('대중소 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공정위, '14)), 2)장기적인 근본 해결책 제시가 필요('소프트웨어 정품이용 문화 조성'(문체부, '14, '15)), 3)마스터 플랜 구축 및 전담 조직 필요('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확립'(교육부, '15),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해수부, '15)) 4) 정책협조체계 개선('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제고'(법무부, '13), '현지침해 대응 지원'(외교부, '12)) 등

○ 분야별로는 창출 분야가 우수 4개(33.3%), 개선필요 0개(0%)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2012~2015)>

분야	과 제 명 (연도)	주관기관
창출 (4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2년)	특허청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13년)	미래부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14년)	미래부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15년)	특허청
보호 (2개)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12년)	관세청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13년)	특허청
활용 (3개)	사업주체별 지원체계 확충('13년)	중기청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14년)	금융위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15년)	금융위
기반 (3개)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12년)	문체부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고도화('14년)	특허청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15년)	공정위
신지식 (5개)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12년)	농식품부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목록 구축('13년)	환경부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13년)	해수부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14년)	농식품부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15년)	농식품부

- 보호 분야는 우수 2개(11.8%), 개선필요 4개(23.5%), 활용 분야 우수 3개(17.6%), 개선필요 0개(0%), 기반 분야 우수 3개(25%), 개선필요 4개(33.3%), 신지식 분야 우수 5개(27.8%), 개선필요 2개(11.1%)로 나타남

□ (창출)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2개 평가과제 중 우수 4개, 개선필요는 한 개도 없어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

<창출분야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특허청)	R&D 기획단계에 전략적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의 질적 창출성과 제고	특허기술조사분석
'13년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미래부)*	R&D 관리체계에 질적평가와 사후관리 도입 및 IP경영진단모델 개선	-
'14년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미래부)	기술수요조사, 기술경제성 분석, NEPS 3.0 등 다양한 사전분석으로 신규과제를 기획하여 IP 창출 기반 고도화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15년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특허청)	특허정보를 R&D 쉐 단계에 연계하여 R&D사업 효과제고	특허기술조사분석

* 미래부 해당 과제는 '14년 종료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총 21개 중 우수 3개*, 미흡 1개 등 전반적으로 사업성과와 추진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13년, 미래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14년, 미래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12년, 환경부)

□ (보호)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7개 평가과제 중 우수 2개, 개선필요 4개로 나타나 성과 제고 노력 필요

<보호분야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 조치 내실화(관세청)	취약시간 집중단속, 국제공조,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지식재산권보호강화지원
'13년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특허청)	특허심사 및 PCT출원 처리기간 단축, IP5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특허심사지원, 상표심사 지원, 디자인심사지원,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 대부분 비R&D 사업으로, 같은 기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총 11개 중, 우수 1개*, 미흡 2개**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13년, 공정위)

**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 부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평가 미실시가 지적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

□ (활용)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총 17개 평가과제 중 우수 3개, 개선필요는 한 개도 없어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3년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유망 전략제품 기술 발굴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산학협력기술개발, 창업 성장 R&D, 수출역량강화
'14년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TCB 지정, TDB 구축 등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가치평가 기반 공고화	-
'15년	기술가치평가 투자확대 (금융위)*	기술신용 대출정책 로드맵 구축,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

* 해당 금융위 과제는 비예산사업임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총 11개 중 우수 3개* 등 해당 사업 모두 보통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14년, 문체부),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육성('14년, 중기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13년, 특허청)

□ (기반)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2건 평가과제 중 우수 3개, 개선필요 4개로, 이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성과제고 노력 필요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문체부)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홍보 매체 다양화, 정책수요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4년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고도화(특허청)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을 통한 대학·공공(연)의 IP창출 인프라 구축 및 특허 사업화 역량 제고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 지원, IP-R&D 전략지원
'15년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공정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익명제보센터 등 제도개선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반면,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총 21개 중 우수 2개* 등 모두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14년, 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13년, 문체부)

□ (신지식)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8개 평가과제 중 우수 5개, 개선필요 2개로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농림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정책 규모를 확대하고 70여개국에 종자 수출 성과 달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Golden Seed Project,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3년	생물자원 발굴확대 및 목록구축(환경부)	신종·미기록 후보종 1,194종, 해외 해양생물자원 1,040종 등 생물 자원을 발굴·확보하고, 해양생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생물자원 관리 추진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고유생물주권확보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해수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14년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 (농식품부)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사업 발굴·수행 및 민간주도 신품종 종자개발 지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Golden Seed Project,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5년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창출 (농식품부)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와 농업생명자원의 국가 등록 관리 및 민간활용 증진 체계 구축	농업기초기반연구,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산림유전자원개발,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19개 중 우수 4개*, 미흡 1개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증농식품지원(농식품부), 산림유전자원개발(농식품부), 산림품종보호 및채종원관리(농식품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식품부)

□ (반영방안) 2017년 재원배분 방향에 점검·평가 결과 환류

○ '17년 재원배분 강화방향과 부합되는 우수사업의 경우,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의 고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제안

-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 해당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전제로 투자확대를 고려할 필요

예시)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문체부) 사업은 '15년 지식재산사업 시행계획 점검 평가에서 '개선필요'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율화가 선행될 필요

2.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 2012~2015년 지식재산 관련 사업*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시행계획상 관리과제는 예산편성 및 추진의 기본단위인 '세부사업'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부사업(144개)의 일부 내역에 포함

○ 2012~2015년간 평가받은 83개 사업 중, 우수 13개(15.7%), 미흡 4개*(4.8%)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

* 이중 2개 사업은 '13년, '14년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음

- 2015년도에 평가받은 14개 사업중 우수 3개(21.4%), 미흡 1개(6.7%)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

* ('12)우수 5%, 미흡 0%→('13)우수 16.1%, 미흡 9.7%→('14)우수 20%, 미흡 15%

○ 분야별로는 활용 분야가 우수 3개(27.3%), 미흡 0개(0%)로 최근 R&D 성과활용 강화정책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출 분야**는 우수 3개(14.3%), 미흡 1개(4.8%), **보호 분야** 우수 1개(9.1%), 미흡 2개(18.2%), **기반 분야** 우수 2개(9.5%), 미흡 0개(0%), **신지식 분야** 우수 4개(21.1%), 미흡 1개(5.3%)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2012~2015)>

(단위: 백만원)

분류	부처명	세부 사업명	'16 예산	구분	평가결과
창출 (3)	미래부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19,090	R&D	13년 자체·상위 우수
	미래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27,482	R&D	14년 자체 매우 우수/상위 우수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5,800	R&D	12년 자체·상위 우수
보호(1)	공정위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160	비R&D	13년 자율평가 우수
활용 (3)	문체부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4,856	비R&D	14년 자율 우수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0,266	비R&D	14년 자율 우수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24,645	비R&D	13년 자율 우수
기반 (2)	문체부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1,456	비R&D	14년 자율 우수
	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	1,465	비R&D	13년 자율 우수
신 지식 (4)	농식품부	국가인증농식품지원	13,909	비R&D	15년 자율 우수
	농식품부	산림유전자원개발	1,080	비R&D	15년 자율 우수
	농식품부	산림품종보호및채종원관리	686	비R&D	15년 자율 우수
	농식품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56,096	R&D	13년 자체·상위 우수

○ 미흡사업의 경우 주로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의 적극성과 달성도가 저조*하고, 사업성과 및 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통한 사업의 추진 효과성 제고가 요구됨

□ 단, 일반 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지식재산 사업으로서 추진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반재정사업, R&D 사업 등은 평가 내용이 모두 고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와 적정성,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일반 재정사업 자율사업평가>

평가분야	평가 항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R&D사업 평가-자체평가>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계 획	
	1. 사업의 성과 목표·지표는 적절한가?
	2. 사업내용이 목표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관 리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가 이루어졌는가?
	2-1.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
	2-2.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였는가?
결과 환류	
	1.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2. 사업성과는 우수한가?
	3. 종합적 성과분석의 결과 사업은 효과가 있었는가?
	4. 평가결과를 사업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지식재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 정부 예산사업(세부사업)은 많은 경우 지식재산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과제가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임. 따라서 세부사업 단위의 평가결과를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로 직접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평가와 일반 재정사업의 자율사업평가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성과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예산 집행 효율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에 지식재산 사업으로서의 평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련 과제가 해당 세부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지식재산 성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지식재산 관련 해당 과제가 포함된 상위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선행될 필요

□ (환류방안) 재원배분 방향에 R&D 및 재정사업 평가 결과 환류

- 현재 재정당국은 사업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평가결과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국가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의 투자 확대 분야에 해당되는 지식재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중 우수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의 고도화를 위해 투자 확대를 제안
 - 단, 미흡사업의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조건을 전제로 투자확대를 고려할 필요

제4장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

제1절 자원배분방향 수립 추진현황

1. 추진 개요

- 목적 : 국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3조
 -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
- 추진경과 : '11년부터 '15년까지 총 5회 수립
 - * 매년 「자원배분방향」을 수립하기 전, 관계부처에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을 별도 수립

2. 추진 체계

- 중점투자방향과 자원배분방향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 중점투자방향 (매년 3~4월) : 관계부처에 지식재산 예산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자원배분방향(매년 7~8월) : 지식재산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을 기재부·미래부에 반영 요청
- 수립 절차
 -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및 관계부처 중기사업계획서 분석 (1~2월)
 -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마련 (3~4월, 본회의 의결)
 - 관계부처 심의자료 취합 (6월초, 차년도 예산요구서·지식재산 자율성과 분석서 등)
 - 심의 워크숍 개최(6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100여개 지식재산사업 심의)
 -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마련 (7~8월, 본회의 의결)

제2절 현황진단

1. 투자방향과 배분방향의 이원적 체계 및 수립 시기

- (현황)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국내외 동향분석 및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1월말 수립)을 검토하여 「중점투자방향」을 마련
 - 「중점투자방향」: 본회의 의결 후 관계부처에 송부(3~4월)하여, 해당 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5월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함
 - * 「'16년도 중점투자방향」에서는, '표준특허·디자인 등의 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IP 보호·집행 실효성 제고' 등 8대 방향 설정
 - 「재원배분방향」: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고, 분야별 전문가집단 심의를 통해 투자 강화가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을 선정·예산당국(기재부, 미래부)에 통보(7월 말)
 - * 380여개의 지식재산사업 중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100개 이내 사업을 집중 심의하여, 최종 30여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 (문제점) ① 「중점투자방향」과 「재원배분방향」이 사실상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안건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추진 검토가 절실
- ② 「재원배분방향」은 예산편성이 사실상 종료되는 7월*에 예산당국에 제시하게 되어,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곤란
-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일이 10.1('13) → 9.1('16)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 심의 일정도 7~8월 → 6~7월로 앞당겨짐

⇒ 현행 체제로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할 경우, 정부 예산심의 일정 이전에 배분방향을 수립·제시하는데 한계점 노출

2.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 (현황) ①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② 또한, 지재위는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 점검·평가 및 개선의견 통보(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 제10조)*

*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사업 평가결과와 「재원배분방향」과의 연계성 부족 등 성과 분석 결과의 환류기능이 미흡
 -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R&D 성과평가(미래부) 및 재정사업 자율사업 평가(기재부) 결과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환류기능이 미흡
 - 사업평가결과와 「재원배분방향」과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 공유 등 부처 간 협조가 절실
- ②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따른 필요 예산 등의 검토·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연계성 부족
 -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는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시행계획 및 사업의 평가결과와 「재원배분방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 (현황) 부처의 「시행계획」 과 「재원배분방향」 간 대상사업 기준 상이(相異)
 - 「재원배분방향」 은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 예산을 모두* 포함하여 380개 세부사업(8.8조원, '16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구성·관리 중
 - 7.91조('14년) → 8.78조('15년) → 8.72('16년)* 수준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 방향」 ('15.7)의 대상 사업 >

- (문제점) 「재원배분방향」 의 지식재산사업과 「시행계획」 의 관리과제의 기준이 상이하어 상호 관련 사업이 불일치*
 - * 사업(과제) 선정 체계가 「재원배분방향」 은 세부사업 단위로, 「시행계획」 은 기본계획상 관리과제 단위로 상이하어 일치에 어려움
 -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상 관리과제 기준으로 189개(3.2조원, '16년) 과제를 관리 중
 - '16년 기준, 세부사업(재원배분방향) 기준(8.7조)과 부처의 시행계획상 세부사업(4.9조), 내역사업(3.2조) 기준과는 차이 발생

	재원배분방향	시행계획
작성주체	지재위 성과기반과	각부처, 지재위 기획총괄과
발표시기	매년 7월	매년 4월
투자규모	8.8조 ('16년)	3.2조('16년)
집계단위	세부사업 380개 ('16년)	기본계획상 관리과제 189개 ('16년)
세부사업 기준환산 예산규모	-	세부사업 149개, 4.9조*

* 관리과제의 내용과 예산이 포함된 상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환산 시

⇒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사업을 「시행계획」의 대상사업과 일치시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 (현황)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해 각 부처는 관련자료 제출*, 부처-지재위 간 의견 교환 등에 참여
 - *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사업계획서, 지식재산 자율성과 분석서 작성 협조
 - 「재원배분방향」 수립 후 관계부처와 예산당국에 통보
- (문제점) 「재원배분방향」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
 - 하나, 이를 위한 예산당국-지재위 간 협조체계는 미흡
 - * 「지식재산기본법」은 위원회에 지식재산 예산에 대한 조정·배분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조가 필수적

⇒ 지식재산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수행 부처(19개) 및 예산당국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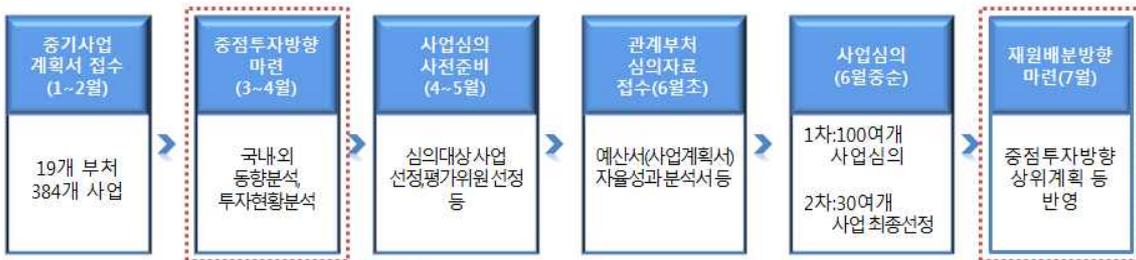
제3절 개편방안

1. 자원배분방향의 조기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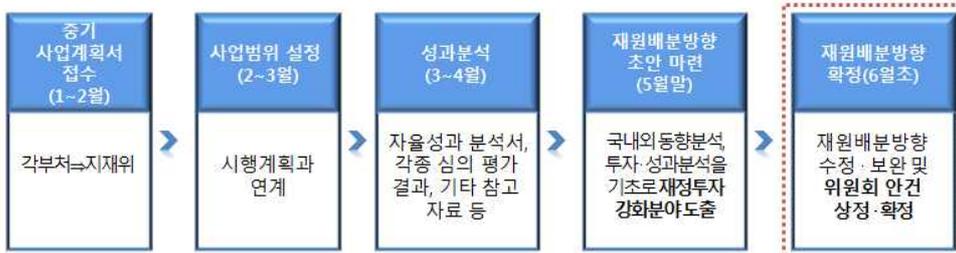
(현행) 「중점투자방향」 수립(3~4월), 「자원배분방향」 수립(7월)
 (개선) 「자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6월초)

- 「자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최대한 조기 수립하여, 중요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역량 집중
 - * 지식재산 기본법에는 자원배분방향 심의·조정권만 규정, 중점투자방향은 미 규정
-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관계부처 중기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전망을 분석하고, 차년도 자원배분 방향 설정
- 예산당국이 사업 심의를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자원배분방향」을 수립·제시하여,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절차 개선

[현행]



[개선안]



2. 지식재산 성과분석 결과반영 강화

(현행) 사업 평가결과 및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재원배분방향」 반영 미흡
(개선)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를 「재원배분방향」에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 법령*의 취지에 맞게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 시행령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 등”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관계부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
- 「재원배분방향」의 중점투자방향을 수립 시 해당 관련 지식재산 사업의 평가결과의 내용을 반영
-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배분방향」 수립
 - 우수 부처의 관리과제에 대한 재정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연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 「시행계획」 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필요 분야의 예산 규모가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3. 지식재산 사업범위 일치화

(현행)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 상이

(개선) 「시행계획」 상의 지식재산 사업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을 일치시켜 연계를 강화

- 「재원배분방향」 과 「시행계획」 의 사업범위 일치를 통한 연계 강화
 - 「시행계획」 의 관리과제를 포함하는 해당 세부사업*을 「재원배분방향」 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 정부 예산 신청·편성의 기본 사업 단위

(예)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사업(공정위), 연구윤리활동지원(교육부),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문체부), 무형문화재보호(문화재청),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미래부), 의료기기기술개발(복지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산업부), 지식재산연구활성화(특허청), 민간IP-R&D전략지원(특허청), 한반도생물다양성보전관리기반구축(환경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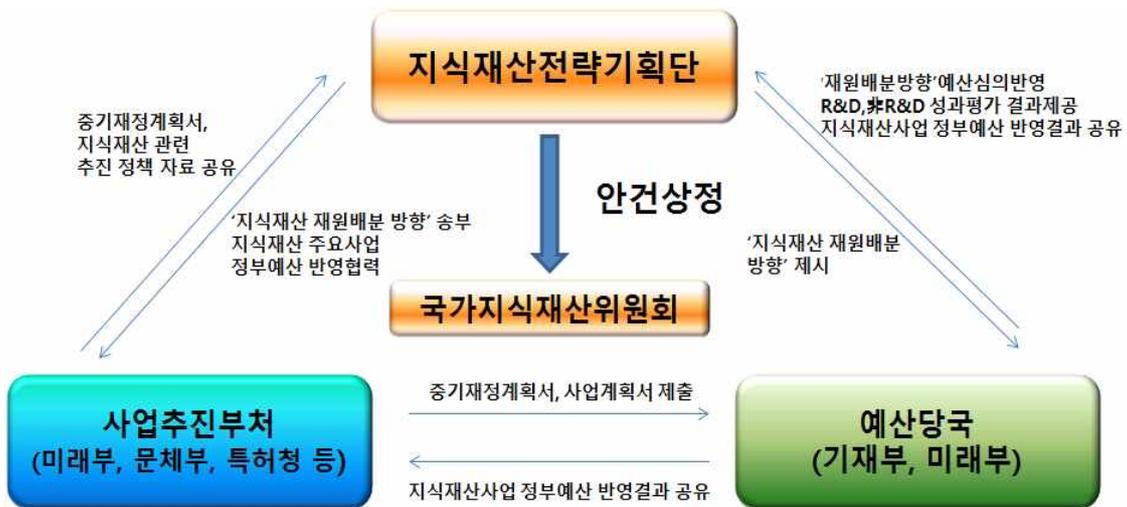
- 장기적으로 「시행계획」- 「시행계획 점검·평가」- 「재원배분방향」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추진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4.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현행) 별도의 협조체계 없음

(개선) 관계부처↔지재위↔기재부 간 지식재산 자원배분 협조체계 구축

-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수립의 궁극적 목적은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재위 - 사업추진 부처 - 예산당국 간 투자방향 및 사업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고, 예산심의 일정 공유 등 운영상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



- 지재위는 지식재산사업 수행부처 및 예산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배분방향과 정부 예산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노력
- (사업수행부처) 각 부처는 지식재산책임관을 중심으로 재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식재산 예산편성에 대응
- (기재부, 미래부)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 제공, 예산심의시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활용도 제고 및 정부예산(안) 공유

제4절 향후 계획

-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본회의 보고 및 관계부처 통보('16.4월)
-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및 본회의 의결('16.6월)
-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미래부, 기재부에 송부('16.6월)

<참고> 추진주체별 세부일정

① 위원회(지재단) 추진 일정

- 관계부처 중기사업 계획서 분석('16. 2~3월)
-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분석 ('16. 2~5월)
- 지식재산 투자 성과분석 ('16. 3~4월)
- 차년도 재정투자 강화분야 도출 ('16. 5월)
-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초안마련 ('16. 5월末)
- 관계부처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심의 부속서 작성 ('16. 6월初)
-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16. 6월初)

② 각 부처 추진 일정 (협조사항)

<지식재산 사업수행 부처>

- '16. ~'20.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6. 2월初)
- 2017년도 예산 사업계획서 제출 ('16. 6월初)

<기재부·미래부>

-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공 ('16. 4월)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예산심의 반영 ('16. 6~7월)
- 지식재산사업 정부예산 편성안 및 국회 확정안 공유 ('16. 9~12월)

제5장 2017년 정부
지식재산 배분방향

제1절 자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 투자 현황 통계에서 “창출”분야의 예산 규모가 많은 것은 R&D 비용과 특허 창출비용 등 지식재산사업이 모두 포함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식재산관점에서 과다계상 및 오해의 여지가 있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가?
- 재원투자방향에서 “원천·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의 논리가 다소 미약한 것이 아닌가? 즉, 선행적으로 원천·표준특허를 확보하면 어떤 영향 및 기대효과 등이 있는 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 원천·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지원이 대학, 공공(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기업이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한계가 있음
- 원천, 표준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 자원배분방향은 비교적 잘 구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원배분방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예를 들면 지재위를 중심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과 비공식적 협의채널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특정 사업 리스트 등을 만들어 전달·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됨
- 자원배분방향의 실효성제고의 일환으로 기재부 등에서 예산 심의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세부 사업을 적시하고 각 세부사업의 예산액까지 제시하는 것이 어떠한가?
- 자원배분방향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관련법에는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재부 등 예산관계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기능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액 등을 지재위가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창출분야의 통계관련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은 ‘심사관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이라 생각됨. 특허청-기재부-행자부 사이의 긴밀한 의견 조율과 설득이 필요함
 - 특히 심사관 확충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는 장기적으로 국가간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특히 한-중-일 3국의 IP 시장에서의 주도권 및 중-일 사이의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 제고의 핵심이 심사관 확충 (이광형 위원장 외)
- ‘선행기술조사’가 심사품질 개선에 매우 중요하며, 최근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고함, 이 부분의 고품질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투자는 특허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허청의 예산범위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기본 계획 등)에 접근 필요
 - 2017년 중점재원배분방향의 ② 우수 IP 발굴·관리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투자 강화부분의 활용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 플랫폼 기술특허의 권리분석을 통해 시장개척,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전략적 활용 지원 강화“에 방향성은 적절함
 -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계획 등에 플랫폼을 중소기업에서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역제안 하는 등의 방안도 기본 계획 등에 담는 것도 좋을 것임

- 2월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서 등은 각 부처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완성도가 낮았으나, 최근 예산요구서 대비 관련 사업 기획시 완성도 특히, 신규 사업들도 발굴되고 있어 time lag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
- 제1차 기본 계획수립부터 논의가 된 부분인데, 지식재산사업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예산 통계 등의 일관성 제고 필요
 - (특히 창출분야에서도 제기된 것처럼) R&D에 투입된 예산과 지식재산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투입된 예산액 구분 등이 필요

제2절 시행계획 점검·평가위원등 전문가 회의

1. 목적 및 주요 내용

- '17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수립
 - 국내·외 환경변화 및 전망 및 정책동향에 따른 중점 투자영역, 5대 분야별 최적의 재원배분 방향 마련
 - 2017년도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 ※ (경과) 지식재산 5대 분야별 전문위원 의견 수렴 완료

2. 개요

- 일시 : 2016년 5월 25일(수) 14 : 00 ~ 18 : 00
- 장소 : 엘 타워컨벤션 스포타워 5층 (오렌지홀, 애플홀)

<진행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4 : 00 ~ 14 : 05 ('5)	인사말	연규석 과장
14 : 05 ~ 14 : 15 ('10)	참석자 상호 인사	-
14 : 15 ~ 14 : 45 ('30)	재원배분방향 초안 보고	정동덕
14 : 45 ~ 18 : 00	자문회의	-
18 : 00 ~	만찬	

3. 참석대상

- 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 (총 26인)
 - (외부 전문가 구성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적정 배분하여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 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위해 시행계획 평가위원 참여
 - 지재위 안건 등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위원 참여

- 전년도 자원배분방향과의 적정 수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자원배분방향 수립 시 참여 전문가 참여
- 5대 분야별 전문가로 총 20인으로 구성
- (지재위 관계자 3인) 지재위 2명(연구석 과장님, 이승기 사무관)
- (KISTEP 4인) 김이경, 정동덕, 최대승, 방은진

<'17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안) 자문위원 현황>

분과	성명	소속/직위	비고
창출 (4명)	김연권	◦ 시안 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김주환	◦ 지식재산전략원창의혁신/팀장 ◦ R&D특허센터/그룹장	◦ 창출전문위원 ◦ 시행계획 평가위원
	장대자	◦ 식품연구원 영양식이연구단/단장	◦ 창출전문위원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조서용	◦ 서울대산학협력단/부장 ◦ (주)세렉트론대표/이사	◦ 시행계획 평가위원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보호 (4명)	계승균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송상엽	◦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지식재산팀)	◦ 보호전문위원 ◦ 시행계획 평가위원
	이윤경	◦ (주)큐리콘텐츠비즈니스/그룹고문 ◦ (주)김중학프로덕션/마케팅이사	◦ 보호전문위원 ◦ 시행계획 평가위원
	강대오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팀장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활용 (4명)	권재철	◦ 미래과학기술지주 전략기획본부/본부장	◦ '15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윤점열	◦ 전국은행연합회/기술정보부장(TDB)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수석팀장	◦ 시행계획평가위원
	최선희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사업기획팀장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김길해	◦ 테크비아이(주)/대표이사	◦ 활용전문위원
기반 (5명)	김광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교수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이광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부/부장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한경희	◦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조교수	◦ '15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조숙경	◦ 국립광주과학관/전시연구본부장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오상균	◦ 특허법인세원/대표변리사 ◦ (前)방송통신위원회/서기관	◦ 기반전문위원 ◦ 시행계획평가위원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신지식 (3명)	정의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책임연구원	◦ '15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이정현	◦ 경희대학교/컴퓨터공학과교수	◦ 신지식전문위원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서용원	◦ 고려대학교/생명공학부교수	◦ 신지식전문위원 ◦ '16년 자원배분방향 위원

4. 주요 논의 내용

- 고품질의 심사실현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심사체계 지원도 포함(예시 : 표준·원천특허분야에 대한 심사체계 수립)
- 표준특허와 핵심·원천특허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 표준특허는 ICT분야에 한정되고 핵심·원천, 표준특허로 구분 필요
- R&D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는 의무화되어있으므로, 과제발굴 단계에서 특허전략청사진과 부처 R&D와의 연계방안 필요, 국가 R&D질적 제고를 위한 R&D수행단계에서 IP-R&D의 의무화추진
- 한류콘텐츠시장을 ASEAN뿐만아니라 중국, 중동으로 확대하여 지재권 보호
- 기술사업화금융을 IP사업화 금융으로 특화
- 융복합 플랫폼 구축시 관련 산업분야를 다양화 필요(예시: 전통지식+문화+한의학+보건의료+식품 등)
- 지식재산존중문화구축을 위해 청소년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바, 청소년 특별 전시회, 초중등생 대상 지식재산 기초교육 강화
- 신지식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분쟁사례 추가

제3절 2017년 지식재산자원배분방향 수립

1. 기본방향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활용체계의 고도화와 보호 강화를 '17년 자원배분방향의 목표로 설정

□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 융·복합 분야, AI,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기술·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지식, SW, 콘텐츠·디자인·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 국가 간, 기업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 보호 제도 개선·정착 지원 강화
- 특히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

□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서비스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
-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 강화 등 시장중심의 IP 비즈니스 활성화

목 표

지식재산 창출·활용 체계의 고도화 및 보호 강화

기본방향

-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5대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창출

- 지식재산 전략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핵심·표준특허 확대
- 미래사회 핵심동력인 SW,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보호

-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공조
- 특허 심사품질 개선 등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활용

- 기술평가와 금융지원간 연계 강화 등 시장중심 IP 비즈니스 활성화
- 특허 개방·공유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IP 경영역량 강화

기반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인재양성
- 지식재산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및 IP 친화적 환경조성

신지식

- 생물·종자·전통지식 등 우리 고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촉진
- 한류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및 유망신지식의 발굴·활용 촉진

2. 5대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1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①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핵심·표준특허) 컨버전스 시대에 ICT·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핵심·표준특허의 중요성 증대
 - R&D·표준·특허 연계 등 다양한 노력으로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점유율은 아직 미흡하고 보유분야 및 기관도 일부에 편중**
 - * 국가별 현황('15.12) : 미국(25.6%), 핀란드(21.0%), 일본(17.7%), 프랑스(10.4%), 한국(6.4%)
 - ** 전기·전자·통신분야에 93.6%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3개 기관이 97.1% 차지 (LG전자 62%, 삼성전자 30.2%, ETRI 4.9%)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원천특허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관련 소송도 증가*
 - *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 ('10)10건 → ('11)37건 → ('12)51건 → ('13)70건 → ('14)239건 → ('15.7)1,630건
- (SW·콘텐츠·디자인) 미래 사회의 핵심동력인 SW,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 파워 확보 전략」 으로 전환 필요
 - (소프트웨어) 성장률 증가가 예상되나, 사회 전반의 SW 활용도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도 내수형 구조에 치중
 - * 세계 SW 시장규모는 연평균 3.1%씩 성장, '19년 1조 4,778억달러에 이를 전망('15.6, Gartner)
 - (콘텐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아직 낮은 편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는 '14년 1조 8,652억달러(전년대비 5.1%↑)
국내 시장 규모는 '14년 94.9조원→'15년 99.5조원(전년대비 4.8%↑)으로 미·일·중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출액은 58.3억달러(전년대비 10.5%↑) ('16.5, 콘텐츠진흥원)

-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산업간 융합 촉진,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가 커 대표적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으로 부상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0, 한은) : (디자인) 16.0, (자동차) 7.9, (반도체) 4.8

** 투자대비 매출 증대효과('10, 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14.4배, (기술 R&D) 5배

② 투자 현황 및 성과

- (투자현황) 제1차 기본계획 기간(2012-2016) 중 총 9조 1,649억원 예산 투입

* 제1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준

- 이는 같은 기간 투자 총액의 7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산규모가 큰 미래부·교육부 등의 R&D 사업이 많이 포함
- 계획(7조 5,631억원) 대비 21.2% 증가,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방송통신, 콘텐츠 분야 중심으로 예산 증가 현저

- (주요성과) 표준특허 창출, SW 수출 등 주요 성과목표 조기달성

※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17.3. 예정)

- '15.12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우리나라 표준특허는 전체의 6.4%(세계 5위)로 제1차 기본계획 목표('16년 5.0%) 조기달성

* 표준특허 확보비율 : ('10)3.1%→('13)4.1%→('14)4.3%→('15)6.4%

- '15년 SW 수출액*도 60.2억달러로 목표('16년 18억달러) 초과달성

* ('10)13.4억달러 → ('11)15.2억달러 → ('12)24.7억달러 → ('13)41.9억달러 → ('14)55.5억달러 → ('15p)60.2억달러('16.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5년 콘텐츠 수출액*은 58.3억달러(전년대비 10.5% ↑)로 저작권 무역수지** 3년 연속 흑자 지속

* ('10)30억달러→('12)46.1억달러→('13)49.2억달러→('14)52.7억달러→('15)58.3억달러

** ('10)-8.8억달러→('12)-2.7억달러→('13)0.2억달러→('14)6.4억달러→('15)6.8억달러

- 정부 R&D 특허생산성(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수)은 1.53으로 미국(공공연 0.26) 및 일본(대학 0.33)보다 높게 나타남('15.12, 특허청)

- 다만, 우수특허 비율은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이고, 계약당 기술이전 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10)42.8백만원 → ('11)35.5백만원 → ('12)42.4백만원 → ('13)33.1백만원 → ('14)23.4백만원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등 비영어권에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강화('14년 880백만원, 22개 기업 → '15년 920백만원, 23개 기업)

□ (평가결과)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2개 평가과제 중 우수 4개, 개선필요는 한 개도 없어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특허청)	R&D 기획단계에 전략적 특허 분석을 통해, 특허의 질적 창출성과 제고	특허기술조사분석
'13년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미래부)*	R&D 관리체계에 질적평가와 사후관리 도입 및 IP경영진단 모델 개선	-
'14년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미래부)	기술수요조사, 기술경제성 분석, NEPS 3.0 등 다양한 사전 분석으로 신규과제를 기획하여 IP 창출 기반 고도화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15년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특허청)	특허정보를 R&D 쉐 단계에 연계하여 R&D사업 효과제고	특허기술조사분석

* 미래부 해당 과제는 '14년 종료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총 21개 중 우수 3개*, 미흡 1개 등 전반적으로 사업성과와 추진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13년, 미래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14년, 미래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12년, 환경부)

- 특히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과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사업은 우수 IP 창출 및 기술이전 등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주요 정책

- 최근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15.4), 정부연구개발 혁신 방안('15.5) 등을 수립하는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전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창출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13.11)	○ 쉼 주기적 연구개발-표준-특허 삼각 연계시스템 구축 ○ 표준특허 정책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15.4)	○ 국가 R&D특허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14.7)	○ 선순환적 SW R&D 생태계 정립 ○ K-ICT SW기술 글로벌 선도
SW중심사회 실현전략('13.7)	○ SW분야 핵심기술개발 및 SW기반 신시장·신산업 창출
ICT R&D 중장기전략('13.10)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경쟁력 확보
정부연구개발 혁신방안('15.5)	○ 원천 연구시 국내·외 시장분석 의무화

- * (관련사업) 표준특허창출 지원(특허청), 특허기술조사분석(특허청),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미래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미래부), ICT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저작권기술및표준화(문체부), 표준안전 기반구축(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중기청)

④ 자원배분방향

- ◆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핵심·표준특허 확보 및 지식재산 창출의 전략성 강화에 선택과 집중
 - * 표준·원천특허 전략적 확보, R&D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성 강화
- ◆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동력인 SW·콘텐츠·디자인·브랜드와 ICT·산업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융복합 기반 신시장·신산업 창출
 - *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SW 신산업 창출, 콘텐츠·디자인·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핵심·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및 국제 표준화

- (핵심·표준특허 확보) 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표준특허 획득 및 연계 R&D 투자 확대**
 - 연구개발, 국제표준안 개발, 표준화 활동 등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 ※ '17년 표준특허 세계 4강 진입 및 보유기관 확대(30개)를 목표로 연구개발 -표준-특허 간 삼각 연계 구축('13.11,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 ICT 표준화 전략맵 수립, **표준과 연계된 기술개발과제 비중 확대**
 - 바이오 및 융합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의 핵심·원천특허 확보**
- 관련 세부사업** 표준특허창출지원(특허청), 글로벌프론티어지원(미래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미래부)
- (국제표준화 지원) 국가표준 제정시 특허전략 지원, 국제표준안 개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강화**

② R&D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성 강화

- (지식재산 서비스 강화) R&D 과제 발굴-기획-연구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에 특허청사진 구축, 특허동향조사, 맞춤형 특허전략 제시, 특허성과 분석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강화**
- (선행조사대상 확대) 신규과제 기획시 기술수요, 국내·외 시장분석 등 사전분석을 **다양화**하고, 국가특허전략 및 IP-R&D 지원과 연계 강화
 - ※ 정부연구개발 혁신방안('15.5)

관련 세부사업 특허기술조사분석(특허청)* * '12년, '15년 시행계획 우수

③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SW 신산업 창출

- (ICT 융합)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ICT기반 융합형 글로벌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관련 세부사업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미래부)* * '14년 시행계획 우수

- (SW신산업 창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관련 SW 기반 강화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연계 투자 강화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14.7)

관련 세부사업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미래부)*

* '14년 시행계획 우수

④ 콘텐츠·디자인·브랜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실감형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시장 선점, 새로운 형태의 문화상품(포맷) 핵심기술 개발, 전시·공예·전통 문화 등 기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관련 세부사업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미래부)*, 범부처GigaKorea사업(미래부), 문화기술연구개발(문체부) * '14년 시행계획 및 '13년 R&D 우수

- (융복합 콘텐츠 창출) 콘텐츠+플랫폼(IoT, HTML 등)+신기술(웨어러블 IT, 홀로그램, 3D프린팅, 로봇 등)의 접목을 통한 신산업 창출형 융·복합 콘텐츠 창출 지원

- 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 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수익화 단계까지 지원

관련 세부사업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미래부)*, 국내외연계형융합형창의인재(문체부), 대중문화콘텐츠사업(문체부), CT기반조성(문체부)

* '14년 시행계획 및 R&D 우수

- (디자인 산업 육성) 제품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 주도형 R&D' 확충, 상품기획·디자인·BM 개발 등 디자인기업 역량 개발 및 공학 기반의 디자인 융합 인재양성 지원

관련 세부사업 디자인산업진흥(산업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산업부),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산업부)

- (글로벌 브랜드 창출)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출원 및 상표권 확보를 위해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망 중소 기업 대상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강화

2

지식재산 보호·집행 실효성 제고 및 품질 강화

①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IP 보호역량)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건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Top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됨
 - 지식재산 보호 순위 세계 27위('15, IMD),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집행역량 8위('15, GIPC)로 보호환경 개선 필요

- (IP 국제 분쟁)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글로벌 무역의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대두
 - * 한국 대상 국제특허 소송건수('16.4, 현대경제연구원) : ('10)186건→('13)342건→('15)259건
 - 한·중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 기업 간 지재권 분쟁 확산 우려
 - * 국내 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지재권 관련 분쟁 10건 중 3.7건이 중국에서 발생, 지재권 분쟁 관련 소송비용은 평균 78백만원 수준('15.6, 특허청 분쟁실태조사)
 - * 중국 진출기업은 '지재권 침해'를 주요 수출 장벽으로 인식('15.4, 중소기업중앙회)

- (특허심사품질)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품질 제고 필요
 - * 우리기업의 1/5이상인 22.1%가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분석, KIIP, 2015)

- (분쟁해결제도) '16년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지식재산권 분쟁시 판결의 일관성 도모 및 전문성 강화 기대
 - * 1심은 고법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의 효과적 정착,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심리관·기술조사관 인력양성 등 후속지원 필요

② 투자 현황 및 성과

□ (투자현황) 2012-2016년간 총 5,323억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짐

※ 연도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기준

○ 이는 규모면에서 **기반분야(4,499억원) 다음으로 적은 액수임**

* 정책·제도개선 성격의 비예산 과제와 예산규모가 적은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

○ 연도별 예산규모(억원)는 ('12)771→('13)977→('14)1,108→('15)1,214
→ ('16)1,253으로 꾸준히 증가

□ (주요성과) IP 보호제도, 심사품질의 개선 및 기업의 IP 보호 인프라 구축

○ 특허·상표 심사처리기간, IP-DESK 컨설팅 건수,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등 제1차 기본계획 목표 조기달성*

* '16년 목표 대비 '15년 실적 : (특허 심사처리기간) 10개월 vs 10개월, (상표
심사처리기간) 6개월 vs 4.7개월, (IP-DESK 컨설팅 건수) 2,300건 vs 5,992건,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15% vs 13.5%

○ 보호제도 개선, 위조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 등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의식 향상에 힘입어 지식재산 보호순위(IMD)* 14단계 상승

* ('10)32위→('11)31위→('12)31위→('13)40위→('14)41위→('15)27위 ['16년 목표 : 26위]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저작권 침해 해외 현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권리구제** 지원

* ('12)110개사→('13)128개사→ ('14)283개사→('15)348개사

** ('12)358건→('13)1,039건→('14)852건→('15)676건

□ (평가결과)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7개 평가 과제 중 우수 2개, 개선필요 4개로 나타나 성과 제고 노력 필요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 조치 내실화(관세청)	취약시간 집중단속, 국제공조,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지식재산권보호강화지원
'13년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특허청)	특허심사 및 PCT출원 처리기간 단축, IP5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특허심사지원, 상표심사지원, 디자인심사지원,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 대부분 비R&D 사업으로, 같은 기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총 11개 중, 우수 1개*, 미흡 2개**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13년, 공정위)

**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 부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평가 미실시가 지적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

③ 주요 정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16.4),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15.4)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보호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K-브랜드보호종합대책('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해외 모조품 단속강화 ○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 강화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 대책('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상품 반입방지 및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 불법 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등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IP·기술유출 및 침해대응 지원 ○ 특허심사 품질제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 방안('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 해소 ○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지원 전문성 강화 ○ 강한 특허 창출 지원

* (관련사업)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문체부),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특허청), 심사·심판관역량강화(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특허청)

4] 재원배분방향

- ◆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
 -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강화, 해외 지재산 보호기반 및 국제공조 강화
- ◆ **심사품질을 개선하여 부실특허를 최소화하고, 그간 마련된 관할집중 등 지재산 보호제도·정책의 실효성 확보 노력**
 - * 심사품질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뢰성 확보, 지재산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집행역량 강화

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16.4) 등

- **(인프라 구축)**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기술임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정보보호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 **(현지 지원)** 해외저작권센터 및 IP-DESK 확대, 기업 맞춤형 지재산 컨설팅, 해외 집행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등 침해 및 분쟁 대응 현지 지원체계 구축 지원

관련 세부사업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문체부),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특허청)

- **(단계별 맞춤형 지원) 수출 진행단계별**(수출준비, 현지진출, 시장정착),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유형 다각화, 온라인 기술유출 방지 및 외부공격 대응을 위해 24시간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 기술유출 상담 통합창구 신설 등

관련 세부사업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산업부),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중기청)

② 심사품질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뢰성 확보

※ 국가특허심사 경쟁력 강화방안('14.3),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15.4)

- (심사 품질 및 전문성 강화) 고품질 심사 실현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표준·원천 특허분야 심사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심사품질관리 시스템 체계화, 선행기술조사 품질 평가기준 정립, 전문적 선행기술조사 요원 확충

관련 세부사업 특허심사지원(특허청), 디자인심사지원(특허청), 상표심사지원(특허청), 심사·심판관역량강화(특허청)

- (우선심사 대상확대) 핵심기술을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을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에서 VC,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확대 지원

③ 지재권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집행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력 강화) 저작권·상표권 침해 대응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운영, 상습·고질적 침해행위 및 침해 빈발지역 단속인력 확충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14.12)

관련 세부사업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문체부),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특허청)

- (분쟁 해결제도 실효성 강화) 관할 집중의 효율적 정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등 지재권 분쟁 해결제도 및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지적권 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적권 소송보험 활성화 기반조성

※ 지적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15.12)

- 저작권 관련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 실태조사·시정 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범부처 협의회 운영, 지적권 보호 정책 조정 및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등

④ 해외 지적권 보호기반 및 국제공조 강화

- (분쟁정보 제공) 국제 지적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탑재 정보의 상호 연계·통합,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 구축 등을 통한 고급 분쟁정보 서비스 확대
- (IP침해물품 국경조치) 수입 화물선별(C/S)을 통한 침해 우범화물 집중 선별검사, 민관합동단속, 국제공조 확대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식별정보 및 통관단계 선별 프로세스 구축

관련 세부사업 지식재산권보호강화지원(관세청)* * '12년 시행계획 우수

- (국제 공조·협력 강화) 한류콘텐츠의 소비수요가 많고, 우리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분포한 ASEAN, 중국, 중동 등과 협력 강화

관련 세부사업 WIPO신탁기금지원사업(문체부)

3

지식재산 공유·시장 활용 증진

①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IP 활용도) 정부 R&D 특허 출원*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의 질적 수준*** 및 성과 활용****은 민간 및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

* ('10)17,969건→('11)18,983건→('12)22,933건→('13)23,766건→('14)27,005건(특허청, '15.12)

** ('10)4,259건→('11)5,193건→('12)6,676건→('13)7,495건→('14)8,524건(산업부, '15.12)

*** OECD 특허품질지표(PQI) 우수특허비율('10~'14) : (정부R&D) 13% vs (외국인) 49%

**** 특허 활용률 : 대학·출연(연) 32.9% vs 기업 77.1%(사업화율 57.0%)(특허청, '16.2)

- (IP 비즈니스) 정부 주도로 기술신용평가(TCB)에 기반한 금융 지원, IP 시장거래 활성화 방안 등 비즈니스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민간 참여는 여전히 미흡*

* 민간 창의자본 규모('14, 특허청) : ('12)1,057억원→('13)850억원→('14)677억원

- (특허 개방) 테슬라의 특허공개로 시작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특허를 개방,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

*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동·동력전달 장치 특허 전체, (도요타) 수소자동차 특허 약 5,680건 등

* 삼성, LG, SK 등 8대 대기업들이 약 10만건 특허 개방(무상 개방특허는 1만3천건)

- (IP 경영) 중소·중견기업은 원천특허를 확보하고도 지식재산 경영 전략 부재로 후발기업에 추격을 허용하는 등 IP 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에 한계

* (한국) MP3P 원천기술 개발('97) → 특허 3건 보유 → 후발기업 추격 허용

* (미국) CDMA 원천기술 개발('95) → 1,200여건 특허망 구축 → '95~'05년 퀄컴사에 26억불 로열티 지급

② 투자 현황 및 성과

□ (투자현황) 2012~2016년간 총 1조 6,921억원 예산 투입

※ 제1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준

- 이는 규모면에서 창출분야(9조 1,649억원) 다음으로 큰 액수임
- 계획(9,631억원) 대비 75.7% ↑로, 5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연도별 규모(억원)는 ('12)1,395→('13)4,615→('14)3,672→('15)3,770→('16)3,469
 - * '13년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식재산 인식이 높아진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유관정책을 발굴·편입한데 기인 : 중소기업 사업화 등 지원(3,837억원, 중기청)

□ (주요성과)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기술거래·금융 인프라 구축

- 공공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산업적 활용 촉진
 - 정부 R&D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7.7%씩 지속 증가
 - * ('10)1,091건→('11)1,465건→('12)1,587건→('13)1,688건→('14)2,096건(특허청, '15.12)
 - 특허무상이전, 공동기술마케팅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 비율 감축*
 - * ('12)20.0% → ('13)16.6% → ('14)15.8% → ('15.6)14.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 활용 촉진
 - * KIPRIS 이용기관수 : ('14)47개→('15)51개(8.5%증가)
 - Open API 이용건수 : ('14)200백만건→('15)320백만건(65.6%증가)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확대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추가조성('16년 1,000억원), 투자형 TCB모형 개발

- 신성장동력 펀드 및 기술사업화 펀드 확대 운영('16년 500억원), IP 직접투자·IP스타기업·IP가치평가 연계 펀드 추가조성('16년 500억원)

□ (평가결과)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총 17개 평가 과제 중 우수 3개, 개선필요는 한 개도 없어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3년	사업화 주체별 지원 체계 확충(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유망 전략제품·기술 발굴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산학협력기술개발, 창업 성장 R&D, 수출역량강화
'14년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TCB 지정, TDB 구축 등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가치평가 기반 공고화	-
'15년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금융위)*	기술신용 대출정책 로드맵 구축,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

* 해당 금융위 과제는 비예산사업임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총 11개 중 우수 3개* 등 해당 사업 모두 보통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14년, 문체부),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육성('14년, 중기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13년, 특허청)

③ 주요 정책

○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15.12), 특허 개방 및 활용촉진 방안('15.7),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15.4) 수립 등 IP·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공공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활용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특허 개방 및 활용촉진 방안('15.7)	○ 특허기술 수요자-공급자간 개방특허 매칭기반 구축 ○ 기업·출연(연) 개방특허의 벤처·중소기업 이전·사업화 지원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14.12)	○ 質 중심 특허성과 정보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 방안('15.12)	○ 콘텐츠 가치평가 기반 금융기관의 연계 강화
시장 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 기업 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14.10)	○ 금융권의 기술평가 기반 금융 활성화 ○ IP·기술기반 금융투자 활성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13.11)	○ 유망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지원 강화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15.5)	○ 중소기업 맞춤형 R&D지원체계 구축

* (관련사업)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미래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행자부),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문체부),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사업)(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산업부),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특허청)

④ 재원배분방향

- ◆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기술가치·거래의 안정성 제고,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 강화 등 **시장중심의 IP 비즈니스 활성화** 유도
 - * 시장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조성, 우수 IP 발굴 및 산업적 활용 촉진
- ◆ **기업·공공(연)의 특허 개방 및 공유를 확대**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IP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지식재산 활용 환경조성 및 정보의 접근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① 시장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14.10),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등

- (가치평가체제 구축) 기술가치평가·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특허분석·가치평가·거래서비스 전문회사 및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 (IP·기술사업화 금융 확대)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NPE형 IP펀드, IP 직접 투자·IP 스타기업·IP 가치평가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운영
-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및 완성보증 등 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업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문체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문체부)

② 우수 IP 발굴·관리 및 산업적 활용 촉진

※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등

- (기술 사업화 촉진) 대학·출연(연) 등의 보유 기술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등 대기업 공개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 발명 발굴 후 권리 확보 및 새로운 IP투자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관련 세부사업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미래부), 보건산업기술이전촉진및 인큐베이팅사업(복지부), 기술확산지원(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산업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IP사업화 촉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우수 창업기업의 IP활용과 글로벌 진출시 IP보호를 적극 지원

관련 세부사업 IP-R&D전략지원(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특허청)

- (특허의 전략적 활용) 의약품, 3D 프린팅,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 플랫폼 기술특허의 권리분석을 통한 시장개척, 신제품 개발 등 전략적 활용 지원
- (네트워크 구축) 기업 수요에 기반한 IP 수요자-공급자 간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구축·확대

③ 지식재산 활용 환경조성 및 정보의 접근성 제고

- (개방특허 매칭 환경조성)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금융기관, 공공·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IP 활용 네트워크) 조성
- (개방특허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고도화를 통한 개방특허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 특허개방 및 활용촉진 방안('15.7)
- (공공콘텐츠 이용촉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 등 공공콘텐츠의 2차 이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가치는 최대 2조 800억원으로 추정('15.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 세부사업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행자부),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문체부)*, * '14년 일반재정 우수

④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 ※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15.5)
- 중소·중견기업의 강한 지재권 창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IP전략 지원, 표준화된 IP 경영모델 보급 등 IP 관리역량 제고
-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따른 R&D지원,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IP 초기 기업을 IP 스타 기업으로 육성

관련 세부사업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특허청)**,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특허청), IP-R&D전략지원(특허청)***

* '13년 시행계획 우수, ** '13년 일반재정 우수,

*** '15년 시행계획 우수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①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IP 정보) 해외 진출기업에게 필요한 분쟁정보, 법적상태정보 등의 정보와 ASEAN, BRICs 등 신흥수출 시장의 지식재산정보 불충분
 - 지재권 보호, 국제분쟁 등에 선제적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IP 인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에 따른 적시 공급이 필수적**
 - * '15년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비율은 20.6%에 불과, 이들 기업의 평균 전담인력 수는 '10년 3.9명에서 '15년 1.8명으로 감소추세
 -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국내기업의 47.6%가 침해 대응 애로사항으로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대담(특허청, 2015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각 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 (예) (중국)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11-'15)」의 추진으로 전문인력 약 8만명 육성
- (IP 서비스산업)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0.916(전산업 평균 0.726),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 21.096(전산업 평균 14.206) (특허청, 2015 지식재산백서)
 - ** 지식재산 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함(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
- (IP 존중문화) 위조상품 시장규모의 증가*, 중소기업으로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미흡** 등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
 - *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14년, 현대경제연구원) : '14년 5.0조원 → '15년 5.3조원
 -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기업 : '12년 43.8% → '15년 55.6%(중소기업 46.2%)

② 투자현황 및 성과

□ (투자현황) 2012~2016년간 총 4,499억원이 투입되어, 5대 분야 중 가장 작은 규모(전체 지식재산 예산의 3.5%)

※ 연도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기준

* 정책·제도개선 성격의 비예산 과제와 예산규모가 적은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

○ 연도별 예산규모(억원)는 ('12)723→('13)960→('14)954→('15)975→('16)887, 기본계획 시행 초기인 '13년 증가 이후 증가세 둔화

□ (주요성과) IP 존중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기업 : ('10)46.4% → ('14)51.5% → ('15)55.6%

- 다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7.7%)에 비해 중소기업(46.2%)의 도입률이 저조하여,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필요

○ 초·중·고 정규교과에 지식재산 교육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장애인 및 취약지역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 ('10)中 기술·가정(필수) → ('12)高 공학기술(선택) → ('15)初 실과(필수)

** 저작권 교육 수혜자 규모 : ('13)40만명 → ('14)44만명 → ('15)45.8만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및 특별 법률구조, 지식재산 재능나눔* 및 기술나눔** 확산

* 재능기부자와 재능수혜자 매칭 건수 : ('13)118건 → ('14)130건 → ('15)140건

** ETRI('13), SK하이닉스('14), LG디스플레이('14), SK하이닉스('15), LS산전('15) 등의 보유기술 217건에 대해 총 73개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나눔 실시

- (평가결과)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2건 평가 과제 중 우수 3개, 개선필요 4개로, 이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성과제고 노력 필요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문체부)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홍보 매체 다양화, 정책수요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4년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고도화(특허청)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을 통한 대학·공공(연)의 IP창출 인프라 구축 및 특허 사업화 역량 제고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IP-R&D 전략지원
'15년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공정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익명제보센터 등 제도개선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반면,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총 21개 중 우수 2개* 등 모두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14년, 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13년, 문체부)

③ 주요 정책

-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방안('15.7),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14.12) 수립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중

<기반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5.7)	○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 사업모델 창출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15.4)	○ IP서비스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15.7)	○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행정·사법적 조치강화 ○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 개선 ○ 지재권 표시 질서 확립 및 인식제고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14.12)	○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지재권 보호 교육 강화 ○ 위조상품 반입방지 및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 불법 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등

* (관련사업)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문체부)

4] 재원배분방향

-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인재양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P 서비스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의 질적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의 질적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① 지식재산 정보의 질적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 (정보의 질적 제고) 해외 지재권 보호, 국제분쟁 대응, 법적상태정보, 부가가치 창출 등 고급 서비스 창출 지원 및 수요자 지향적으로 가공·보급, 지식재산 정보 표준화 지원
- (정보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 지식재산 DB 정비, 다양한 산업분야(새로운 저작물+전통지식+한의학+보건의료+식품 등)의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수요자 지향적으로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관련 세부사업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문체부), 특허정보시스템개발(특허청),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특허청), 특허정보DB구축(특허청)

②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이공계열 등 지식재산 관련 대학원 IP 강좌 확대,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운영,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기술창업 교육 강화

관련 세부사업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특허청),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복지부)

- (관리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전문가 역량 강화, SW 자산관리 컨설턴트 등 저작권 지원 인력 양성
-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IP-R&D 전문인력, 번역·조사분석 등 서비스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연계 교육 과정 개발·보급

※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15.4)

③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 서비스 고품질화) 서비스산업 분야별 능력검증제도 확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및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품질 제고

관련 세부사업 표준안전기반구축(산업부)

- (지식재산 경영·관리 연계 지원)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평가-보증-대출-마케팅 등의 연계 지원

* (예시) 첨단 기술분야 또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IP경영, 시제품 제작, 제품홍보, 금융연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 **(산업간 연계 활성화)**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IP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타산업과 IP 서비스산업의 연계 지원**

* (예시) 첨단 기술분야 또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IP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IP 서비스 필요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간 중개 지원사업 등

④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IP 인식제고)**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강화, 스마트폰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홍보 매체 다양화,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관련 세부사업 저작권문화기반조성(문체부)*, 발명교육활성화(특허청), 발명장려 문화조성(특허청), 지식재산스마트교육(특허청), 지식재산인식 기반강화(특허청)

* '12년 시행계획 우수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기업규모·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마련,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16.4)

관련 세부사업 직무발명활성화(특허청)

-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도서·벽지·복지시설 대상 **저작권 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IP 교실 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및 특별 법률구조 지원**

5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촉진

①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생물·유전자원) 세계 각국은 생물·유전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체계 구축 중

- * (미국) 미국식물게놈계획(National Plant Genome Initiative) 5개년 계획(2014~2018) 발표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달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곤란

- (종자산업)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전략 필요

-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달러 → '12년 449억 달러), 10대 다국적 기업이 70%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종자에 대한 중복보호체계*, 영세기업, R&D투자 및 산업기반 미흡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 특허법과 식물신품종 관련 법제의 중복보호체계로 인해 행정비효율 지적

-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잠재적 활용가치가 부각되면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국내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DB 구축 및 개선, 체계적 활용과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 마련 시급

- (유망신지식) 신산업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침해 및 분쟁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나 대응체계 미비

- * 빅데이터, 핀테크, IoT, 스마트카, 3D 프린팅,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신산업 영역에서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점증될 가능성

- 방송 포맷의 경우 한류 확산에 따른 방송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 증가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성장가능성이 높음

② 투자현황 및 성과

□ (투자현황) 2012~2016년간 총 7,939억원이 투입되어, 계획(8,986억원) 대비 과소투자*(11.7% ↓)

※ 연도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기준

* 이는 계획 기간중 완료된 대규모 사업 등에 기인(예: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250억원)

- '16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방송통신기술 및 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증가 현저

* 연도별 예산규모(억원) : ('12)1,389→('13)1,511→('14)1,444→('15)1,336→('16)2,259

□ (주요성과) 전략적 종자개발,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DB 구축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성공적 안착

- 해외 시험·전시포 운영(23개국 123개소) 등 해외기반 구축 및 143개 품종 개발*, 14백만 달러 수출 및 109억원 수입 대체

* 수출전략형 품종 85개, 수입대체형 품종 58개 개발('13.7~'15.11)

- 육종연구기반 마련('16.8, 민간육종연구단지)으로 전문인력 육성, 전략적 수출·수입대체 품목 개발(20개) 및 유통기반 확충

- 생물·유전자원 DB 구축 및 산업적 활용기반 확충

-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외 생물자원 조사·수집, 특허미생물 복제본 제작('16년 목표 80%) 및 통합보존, 자생생물(42,756종) 정보 제공

-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 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한 4개 소재(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은행 구축 및 생물자원 확보*

* 생물소재 116,938점 확보 보존('15.8)

□ (평가결과) 2012~2015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총 18개 평가과제 중 우수 5개, 개선필요 2개로 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우수과제>

과제명(부처명)	주요 성과	해당 세부사업명
'12년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농림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정책 규모를 확대하고 70여개국에 종자수출 성과 달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Golden Seed Project,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3년 생물자원 발굴확대 및 목록구축(환경부)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해수부)	신종·미기록 후보종 1,194종, 해외해양 생물자원 1,040종 등 생물자원을 발굴·확보하고, 해양생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생물자원 관리 추진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고유생물주권확보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14년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농식품부)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사업 발굴·수행 및 민간주도 신품종 종자개발 지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Golden Seed Project,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5년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창출(농식품부)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와 농업 생명자원의 국가 등록 관리 및 민간 활용 증진 체계 구축	농업기초기반연구,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개발, 산림유전 자원개발

○ 같은 기간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19개 중 우수 4개*, 미흡 1개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증농식품지원(농식품부), 산림유전자원개발(농식품부),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농식품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식품부)

③ 주요 정책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GSP) 추진현황('15.12),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제언('15.12)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전통지식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노력 중

<신지식재산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

주요정책	주요 추진과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GSP)추진 현황 ('15.12)	○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유통역량 강화 ○ 개발 품종의 소비자 접점 홍보 강화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방안('15.12)	○ 전통지식 융복합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전통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글로벌 신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관련사업)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부)

④ 자원배분방향

- ◆ 생물·유전자원 및 종자, 전통지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R&D 활성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
 - *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및 산업적 활용,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육종 및 활용 촉진, 전통지식의 창출 및 산업적 활용 강화
-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 신지식재산의 발굴 및 산업적 활용 촉진, 한류 확산에 따른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 한류 방송콘텐츠 보호 및 유망 신지식 발굴·활용 기반조성

①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산업적 활용

- (생물자원 확보) 국내외 생물자원 조사·수집, 특허미생물의 복제본 제작 및 통합보존, 자생생물 정보제공 등 생물자원 빅데이터 구축 지원

관련 세부사업

나고야의정서 대응(환경부), 고유생물주권확보(환경부)*,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연구(환경부)*, 한반도생물다양성보존관리기반구축(환경부)*, 환경생물산업소재발굴(환경부),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미래부),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산업부)

* '13년 시행계획 우수

- (생물자원 가치제고) 생물자원의 가치발굴을 통한 활용도 제고, SPF 영장류/미니돼지 등 생물자원 확보 및 소재 발굴로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 촉진 지원

관련 세부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미래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식품부)*, 한의약산업육성(복지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해수부)**

* '13년 R&D 우수, ** '13년 시행계획 우수

②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품종 육종 및 활용 촉진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추진현황('15.12)

- (품종개발 및 산업 육성) 주요 수출대상국 시장조사, 전문인력 육성, 유전자원 수집, 품목별 기반기술 개발 등 수출·수입대체 품종 개발 지원
 - 종자 생산(채종), 가공처리, 포장 및 운송 등 상품화 기술개발,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해외 육종기지 구축·전시포 운영 및 유통채널 확충 등 국내·외 육종 및 유통 기반 구축 지원

관련 세부사업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부)*,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농식품부)*, 산림유전자원개발(농식품부)**, 산림품종보호및채종원관리(농식품부)***, 신 품종지역적응연구(농식품부)*, 품종심사및재배시험(농식품부)*
* '12년, '14년 시행계획 우수, ** '15년 시행계획 및 '15년 일반재정 우수
*** '12년, '14년 시행계획 및 '15년 일반재정 우수

③ 전통지식 창출 및 산업적 활용 강화

- (융복합 플랫폼 구축) 각 부처, 각 기관에 산재한 전통지식 DB 연계 등 전통지식 등* 융복합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 * 전통지식(전통의약, 전통식품 등의 분야에서 전승되어 온 지식)과 전통문화 표현물(음성·언어표현물, 음악·음성표현물, 행위표현물 등)을 포함
- (글로벌 신시장 창출) 전통문화(표현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콘텐츠 창작 등 전통지식·문화 분야의 고부가가치 글로벌 신시장 창출 지원
- (지역특화산업 연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전통향토음식 등 전통자원 발굴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통문화 연계 지원

관련 세부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농식품부), 신기술보급사업(농식품부)

④ 한류 방송콘텐츠 보호 및 유망신지식 발굴·활용 기반조성

- (방송 콘텐츠) 방송영상콘텐츠 창출 및 유통플랫폼 확보 등 유통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방송영상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 강화 및 방송포맷 등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보호 및 활용 기반 구축

관련 세부사업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미래부)* * '14년 시행계획 우수

-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등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지원, 우수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관련 세부사업 국가인증농식품지원(농식품부)* * '15년 일반재정 우수

- (유망신지식 발굴·활용 기반조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영역의 지식재산 관련 해외동향 조사·분석, 침해 및 분쟁 대응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발굴·활용 기반조성

3. 향후 조치계획

일 정	세부 계획	비 고
<p>[6~8月]</p> <p>201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p>	<p>○ 재원배분방향을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시</p> <hr/> <p>○ 재원배분방향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사업 예산 편성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 13조 제3항</p>	<p>국가 지식재산 위원회</p> <hr/> <p>기획재정부 미래창조 과학부</p>
<p>[6~11月]</p> <p>정부예산안 편성 지원 및 모니터링</p>	<p>○ 지식재산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자료 협조 등 예산 편성 지원 및 모니터링 ※ 사업 수행부처 협조</p>	
<p>[12月]</p> <p>「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p>	<p>○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시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반영</p> <p>○ 2018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관련 개선 사항 도출 ※ 재원배분방향 수립시기를 3~4월로 조정하여 각 사업 수행부처의 사업 기획·발굴시 가이드라인 제공,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각 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 각 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과의 연계 강화 등</p>	<p>국가 지식재산 위원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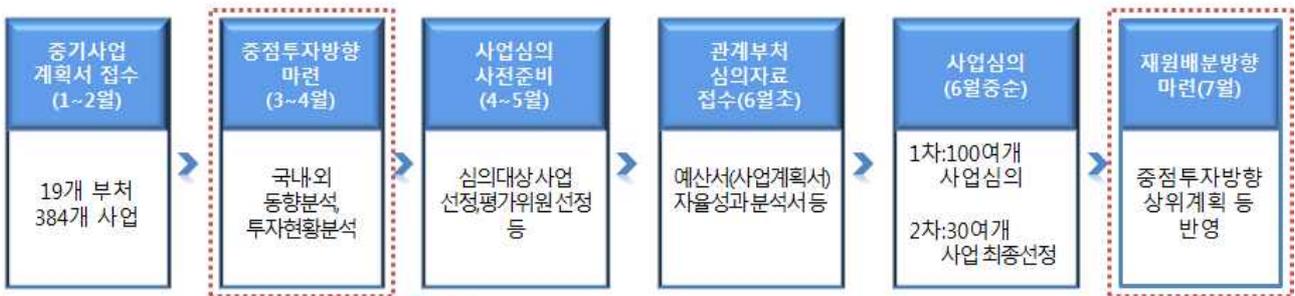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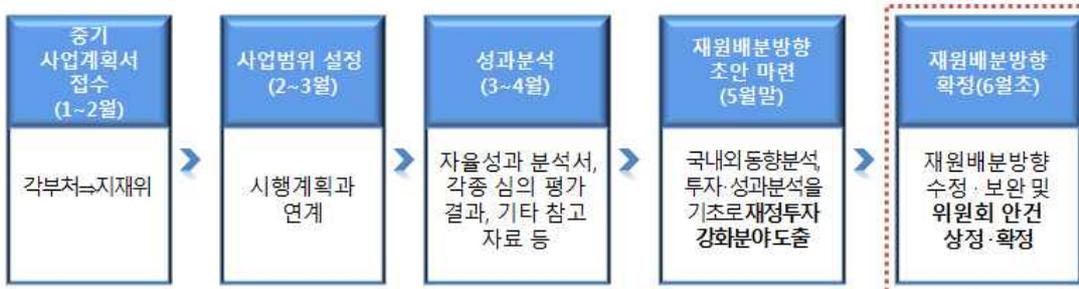
1. 자원배분방향 수립 시기에 따른 실효성

- 「자원배분방향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는 수립시기를 6월 초에 확정기로 함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일이 매년 9월초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 심의도 매년 6~7월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은 6월말~7월에 수립되어 예산당국(기재부, 미래부)에 통보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기에 예산당국에 제시하게 되어,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 이에, 2016년 4월 「자원배분방향 개편방안」 확정에 따라, 2017년도 부터는 수립시기를 개편하여 6월 초에 확정기로 함

[현행]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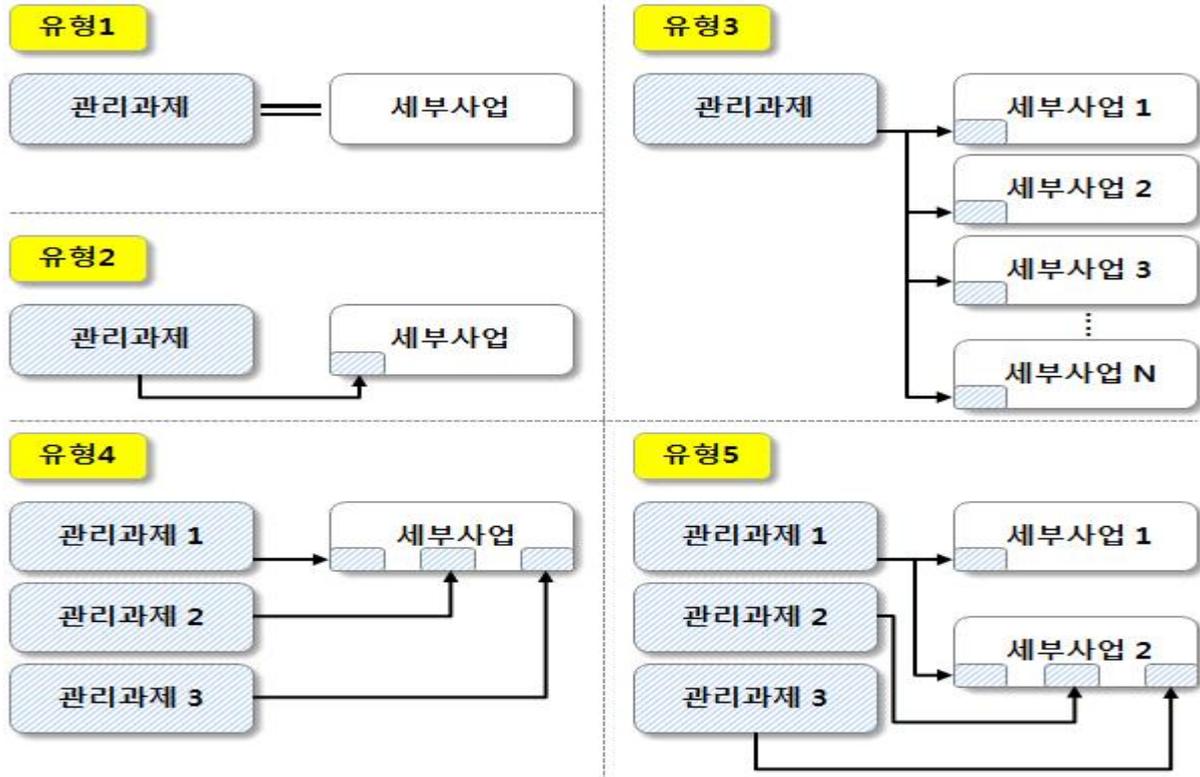
※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편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 4)

- 한편, 「재원배분방향」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 이외에도, 지식재산 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처가 「재원배분방향」이 제시하는 투자분야에 대해 차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따라 「재원배분방향」을 6월 초에 수립하더라도, 부처의 지식재산 과제를 포함한 세부사업의 예산요구서 작성에는 「재원배분방향」의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는 상존
 - 부처의 해당 예산사업의 예산요구서 작성은 일정상 4월-5월에 초안이 작성되며, R&D 사업의 경우 5월에는 국과심의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되어 5.31일에 재정부에 제출됨.
 - 6월 초에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하기로 한 현재 개선안의 일정을 고려할 때,
 - ① 「재원배분방향」의 수립 작업에 예산요구서의 최종본을 활용하기에 시점 상 어려움이 있으며,
 - ② 부처에서도 예산요구서 작성 시 「재원배분방향」의 권고 결과를 활용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상존함
 - 이 두 문제점은 시점 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재원배분방향」의 수립 목적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재원배분방향」과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불일치

- 「시행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상의 지식재산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재원배분방향」*에서는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에서 다루는 과제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불일치 현상으로 일관된 예산 규모 파악 및 집중 투자 사업 선정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

<다양한 관리과제-세부사업 단위 불일치 유형>



유형	사업 사례
유형1	Golden Seed Project(농림부)
유형2	개인연구지원(미래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미래부)
유형3	· 미래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5개 세부사업에서 해당 관리과제의 세부관리과제에서 추진(미래부), ·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4개 세부사업에서 추진 (복지부)
유형4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문체부) 4개의 관리과제 수행
유형5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복지부) 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며, 그중 두 개의 관리과제는 타 세부사업에서도 추진 (ex) 관리과제-‘보건산업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지원’은 본 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에서도 나누어 추진 중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7년도 「재원배분방향」’에서는 ‘관리과제’ 중심의 투자규모를 일치화하고 재원투자 방향 제시와 해당 ‘관리과제’를 포함하는 세부사업 목록을 동시에 제시하는 ‘절충안’을 적용함

- 이러한 '절충안'의 경우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작업 (관리과제 및 해당 세부사업내역 조사)이 필요하며 및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가능성은 의문

3.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반영

- 매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나, 정부의 지식재산 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점검·평가 결과의 「재원배분방향」에 반영이 미흡
 -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실시(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함(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 제10조)*

***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지식재산 과제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 가중치 및 세부 측정방법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 지자체의 특수성 및 정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분리하여 평가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정책형성 (30)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정책집행 (30)	2. 정책추진 효율성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10)
	3. 정책 모니터링	•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10)
정책성과 (40)	4. 정책성과 및 환류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정책목표 달성도(20)
		• 정책 효과성(15)
		• 개선성과 우수성(5)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정책형성 (35)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지자체 정책차별성(5)
정책집행 (30)	2. 정책추진 효율성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10)
	3. 정책 모니터링	•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10)
정책성과 (35)	4. 정책성과 및 환류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정책목표 달성도(15)
		• 정책 효과성(15)
		• 개선성과 우수성(5)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기계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과제의 특수성, 정책추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평가가자 판단하도록 함

- 그러나, 현재까지 지식재산 과제에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의 「재원배분 방향」 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아 평가결과의 환류기능은 미흡한 상황
 -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환류에는 한계
 - 이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상 정의된 지식재산 ‘관리과제’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재원배분과 주로 관련이 깊은 예산상 ‘세부사업’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 ※ 예시) 복지부의 지식재산 관리과제인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은 네 개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추진 중
 - *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 또한, 일반 사업 평가 결과의 경우, 평가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지식재산 과제의 성과평가로 적절치 않으며, 평가단위가 지식재산 관리과제와 상이하야 평가 결과 환류에는 한계
 - 일반재정사업, R&D 사업 등은 평가 내용이 모두 고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와 적절성,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지식재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 정부 예산사업(세부사업)은 많은 경우 지식재산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과제가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임. 따라서 세부사업 단위의 평가 결과를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로 직접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평가와 일반 재정사업의 자율사업평가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성과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예산 집행 효율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에 지식재산 사업으로서의 평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련 과제가 해당 세부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지식재산 성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세부사업 단위의 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이 사업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해당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흡인 것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될 필요

4.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 미흡

- 「재원배분방향」에서 제시한 과제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관련 부처-지재위 간 협조체계는 다소 미흡
-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는 지식재산 사업의 추진 예산에 대한 법적인 배분·조정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재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필수임
 - 지식재산 과제를 추진하는 부처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원배분방향」에서 제시한 투자방향과 중점 투자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재정당국(기재부 및 R&D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미래부)은 「재원배분방향」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과제를 수행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배분·편성을 고려할 필요
 -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의 '제출시기' 문제 등으로 「재원배분방향」의 부처간 활용도 및 협조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제2절 개선방안

1. 실효성제고를 위해 재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

- 「재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립 시기를 기존의 ‘중점 투자방향’이 마련되었던 3-4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당국이 사업 심의를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재원배분방향」을 수립 · 제시하여,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기 및 절차 개선



- 수립 시기 조정을 통해 「재원배분방향」의 결과를 지식재산 과제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유도
- 기재부 및 미래부에 「재원배분방향」의 결과를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하도록 유도 가능

2. 「재원배분방향」와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가 필요

- (방안 1) 2016년에 수립한 「재원배분방향」과 같은 ‘절충안’
 - 예산 규모는 시행계획 상 금액으로 제시하고, 중점적인 재원배분 방향은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중심으로 수립

- 관리과제가 포함된 세부사업을 조사한 정리표를 별도 작성하여,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기재부의 예산 편성 업무에 참고자료로 제공
 - 현실적인 방안이나, 매년 추가적인 조사·정리가 필요하며, 작성 시점상 최종 예산요구서를 반영하지 못해 변동가능성이 높음
- (방안 2) '관리과제'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통일
- 예산 규모, 관리과제 등 내용을 「시행계획」 중심으로 통일하여, 「재원 배분방향」에서는 해당 관리과제 중심의 투자방향을 제시
 - ※ 세부사업 단위는 언급하지 않음
 - 이 경우, 「재원배분방향」은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사실상 예산편성(기재부) 업무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제공
 - (방안 1)에 비하여 「재원배분방향」 수립 기간(2-3월) 중 추가적인 세부사업 분류 작업*이 필요 없으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바로 적용 가능
 - * 사후적(예산편성 이후)으로 지식재산 관리과제가 포함된 세부사업 목록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여 취합하는 것은 가능
- (방안 3) '세부사업'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통일
- 장기적인 입장에서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을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세부사업 단위에서 「시행계획」과 「재원 배분방향」을 관리
 - 지식재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관점에서는 유리하며 접근이 명료하며, 일반사업의 평가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 용이
 - 지식재산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개별 관리과제에 따라 세부사업으로의 편성이 어려운(규모 등의 문제로) 경우와 타 유관 세부사업과의 통합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단기에 실현은 어려움

3. 「시행계획」, 「점검·평가」, 「재원배분방향」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매년 실시되는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의 수립,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대상의 일치화) 「시행계획」, 「재원배분방향」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의 대상이 모두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
 - 앞 절의 (방안 2)를 가정할 때, 모든 계획과 평가가 정해진 지식재산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
- (환류·연계 강화)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와 「재원배분방향」의 내용이 상호 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평가 기준 수정) 「점검·평가」 시에 해당 과제가 「재원배분방향」에서 중점 투자할 과제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
 - * 「재원배분방향」의 중점투자 방향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해당 과제인 경우는, ‘정책형성’ 부문 등 예산확보의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평가 결과 환류) 「점검·평가」 결과, 우수 과제가 「재원배분방향」에서 중점 투자할 과제로 선정될 경우 예산 확대를 명시적으로 제시

4. 「재원배분방향」의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부처 협조 체계 강화

- 각 부처의 차년도 사업 및 재정투자 계획 수립 시 재원배분방향의 중점 투자 대상 과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
 - 필요시 각 부처는 지식재산책임관을 중심으로 재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식재산 예산편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 지재위를 중심으로 각 수행부처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원배분방향」의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속 모니터링
- 지식재산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
 -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부처·기관·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재원배분방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행력 제고

첨부

첨부 1.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2012~2015)

첨부 2. 정부 지식재산 사업 목록 및 평가결과

첨부 3. 지식재산 시행계획 관리과제 해당 세부사업
연계표('16년 기준)

첨부 1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2012~2015)

<2012년도 점검·평가결과>

분야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21개)	주관기관*		평가등급
		구	신	
창출 (4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국과위	미래부	보통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	방통위	미래부	보통
	SW 및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지경부	미래부	보통
보호 (5개)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관세청		우수
	저작권 침해물품 불법 유통방지 체계 구축	문체부		보통
	지식재산 침해사범 처벌 강화	법무부		보통
	현지 침해 대응 지원	외교부		개선필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확대	중기청		보통
활용 (4개)	기술 금융 활성화	금융위		보통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지경부	산업부	보통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보통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교과부	미래부	보통
기반 (3개)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문체부		우수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특허청		보통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자체 공통		개선필요
신지식 재산 (5개)	해양생물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토부	해수부	개선필요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농식품부		우수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청		보통
	인체자원의 수집 및 공급체계 개편	복지부		보통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목록 구축	환경부		보통

* 구 : 2012년 시행계획 수립부처, 신 : 정부조직 개편 이후 주관부처

<2013년도 점검·평가결과>

분야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18개)	주관기관	평가등급
창출 (2개)	지식재산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	미래부	우수
	차세대콘텐츠집중육성	미래부	보통
보호 (4개)	현지침해대응 지원	외교부	보통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	법무부	개선필요
	저작권 불법 유통방지체계 구축	문체부	보통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특허청	우수
활용 (5개)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산업부	보통
	보건산업 R&D 성과의 지식재산 관리 및 거래활성화 추진	복지부	보통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금융위	보통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중기청	우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보통
기반 (3개)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교육부	개선필요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양성	문체부	보통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특허청	보통
신지식 재산 (4개)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강화 및 실효성 증대	농식품부	보통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목록 구축	환경부	우수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수부	우수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청	보통

<2014년도 점검·평가결과>

분야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18개)	주관기관	평가등급
창출 (2개)	지식재산창출형 R&D 촉진	미래부	우수
	창조형 연구개발 기반 조성	미래부	보통
보호 (4개)	현지침해대응 지원	외교부	보통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	법무부	보통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조성	문체부	개선필요
	산업기술 및 영업보호 및 기반공고화	중기청	보통
활용 (4개)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문체부	보통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산업부	보통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금융위	우수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특허청	보통
기반 (3개)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개선필요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고도화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교육부	개선필요
신지식 (5개)	신품종 육종기관 구축 및 활용 촉진	농식품부	우수
	인체자원 지식재산 육성 및 관리강화	복지부	보통
	한반도 생물자원 분류 및 대량증식기반 마련	환경부	보통
	생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해수부	보통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청	보통

<2015년도 점검·평가결과>

분야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19개)	주관기관	평가등급
창출 (4개)	창조개방형 R&D 기반 조성	미래부	보통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특허청	우수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문체부	보통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산업부	보통
보호 (4개)	현지 침해 대응 지원	외교부	보통
	침해 대응 현지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보통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문체부	개선필요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관세청	보통
활용 (4개)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	금융위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조성	특허청	보통
	연구성과 활용 확산체계 구축	미래부	보통
	기술사업화 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중기청	보통
기반 (3개)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교육부	개선필요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복지부	보통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	공정위	우수
신지식 (4개)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농식품부	우수
	생물자원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환경부	보통
	생물자원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	해수부	개선필요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재청	보통

첨부 2

정부 지식재산사업 목록 및 평가결과

(단위: 백만원)

분류	부처명	세부 사업명	'16 예산	구분	평가결과	재원분향
창출	교육부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7,590	R&D	14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교육부	사회과학연구지원	27,100	R&D	-	
	교육부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187,999	R&D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	123,415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교육부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268,050	R&D	-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73,419	R&D	-	
	교육부	인문사회기초연구	136,446	R&D	-	
	교육부	인문학진흥	61,325	R&D	-	
	교육부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466	R&D	12년 자체·상위 보통	
	문체부	CT기반조성	7,420	R&D	-	1-4
	문체부	국내외연계형융합형창의인재	4,734	R&D	14년 자체·상위 보통	1-4
	문체부	대중문화콘텐츠사업육성	64,881	비R&D	15년 상위 보통/사업정상추진	1-4
	문체부	문화기술연구개발	47,697	R&D	14년 자체·상위 보통	
	미래부	글로벌프론티어지원	88,327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1-1
	미래부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2,850	R&D	-	1-3
	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68,817	R&D	-	1-3
	미래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02,073	R&D	-	1-3
	미래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3,018	R&D	13~14년 자체 보통/상위 미흡	1-3
	미래부	개인연구지원	607,495	R&D	-	
	미래부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235,706	R&D	-	
	미래부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19,090	R&D	13년 자체·상위 우수	1-4
	미래부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136,707	R&D	-	
	미래부	범부처GigaKOREA사업	69,916	R&D	-	1-4
	미래부	산학협력활성화지원사업	25,627	R&D	13년 상위 보통	
	미래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41,157	R&D	-	
	미래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7,578	R&D	-	1-1
	미래부	집단연구자지원	155,174	R&D	-	
	미래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27,482	R&D	14년 자체 매우 우수/상위 우수	1-3
	미래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105,878	R&D	14년 자체·상위 보통	
	복지부	의료기기기술개발R&D	21,628	R&D	-	
	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	53,510	R&D	12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산업부	디자인산업진흥	1,556	비R&D	15년 자율 보통	1-4
	산업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	41,972	R&D	-	1-4
	산업부	산업기술국제협력	61,725	R&D	12년 자체·상위 보통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2,261	R&D	-	1-4
	산업부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15,834	R&D	-	1-4
	특허청	특허기술조사분석	20,179	R&D	-	1-2
	특허청	표준특허창출지원	2,362	R&D	-	1-1
	환경부	CO2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3,072	R&D	-	
	환경부	글로벌탄환경기술개발사업	62,952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환경부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	8,600	R&D	14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환경부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확진사업	4,254	R&D	13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5,800	R&D	12년 자체·상위 우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14,644	R&D	-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25,900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환경부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2,600	R&D	13년 자체 매우우수/상위 보통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3,604	R&D	-		

분류	부처명	세부 사업명	'16 예산	구분	평가결과	재원 배분 방향
보호	관세청	지식재산권보호강화지원	3,041	비R&D	-	2-4
	공정위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160	비R&D	13년 자율평가 우수	
	문체부	WIPO신탁기금지원사업	550	비R&D	13년 자율 보통	2-4
	문체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7,100	R&D	13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문체부	저작권기술및표준화	1,311	비R&D	14년 자율 미흡	2-1
	문체부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15,057	비R&D	15년 사업정상추진	2-3
	산업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1,491	비R&D	13년 자율 미흡/14년 자율 미흡	2-1
	중기청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	21,570	비R&D	15년 자율 보통	2-1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5,851	비R&D	14년 자율 보통	2-3
	특허청	디자인심사지원	4,343	비R&D	14년 자율 보통	2-2
	특허청	상표심사지원	6,286	비R&D	14년 자율 보통	2-2
	특허청	심사·심판관역량강화	1,370	비R&D	-	2-2
	특허청	특허심사지원	61,280	비R&D	15년 자율 보통	2-2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16,506	비R&D	14년 자율 보통	2-1
	활용	기상청	국가기후자료관리및서비스체계구축	1,744	비R&D	14년 자율 보통
기상청		빅데이터기반기후융합시스템개선및운영	2,031	비R&D	-	
문체부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6,622	비R&D	15년 자율 보통	3-1
문체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36,000	비R&D	15년 자율 보통	3-1
문체부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4,856	비R&D	14년 자율 우수	3-3
미래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35,870	R&D	-	3-2
산업부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사업)	15,292	R&D	-	3-2
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8,067	R&D	14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3-2
중기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38,236	R&D	14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중기청		수출역량강화	63,639	비R&D	15년 자율 보통	
중기청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1,300	비R&D	-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0,266	비R&D	14년 자율 우수	3-4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	188,811	R&D	-	3-4
특허청		IP-R&D전략지원	16,280	R&D	-	3-4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24,645	비R&D	13년 자율 우수	3-4
특허청		창의자본조성	3,000	비R&D	-	
특허청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14,799	비R&D	12년 자율 보통	3-4
특허청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40	비R&D	-	
행자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21,674	비R&D	15년 자율 보통	3-3
기반		교육부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R&D	-
	문체부	저작권문화기반조성	9,107	비R&D	15년사업정상추진	4-4
	문체부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1,456	비R&D	14년 자율 우수	4-1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지원(연구기반강화)	11,101	비R&D	13년 자율 보통	
	문체부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	1,465	비R&D	13년 자율 우수, 14년 자율 보통	4-1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육성	81,725	R&D	12년 자체·상위 보통	
	복지부	보건산업기술이전촉진및인큐베이팅사업	1,331	비R&D	13년 자율 보통	
	복지부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	7,500	비R&D	13년 자율 보통	4-2
	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	12,855	비R&D	13년 자율 보통	4-2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	22,466	R&D	-	
	산업부	표준안전기반구축	22,089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4-3
	특허청	WIPO국제분담금	1,610	비R&D	12년 자율 보통	
	특허청	교육환경개선(자본)	604	비R&D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나눔	450	비R&D	12년 자율 보통	
	특허청	민간인력양성	221	비R&D	-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8,318	비R&D	-	4-4
	특허청	발명장려문화조성	2,547	비R&D	-	4-4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7,288	비R&D	-	4-2

분류	부처명	세부 사업명	'16 예산	구분	평가결과	재원분향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1,673	비R&D	-	
	특허청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	6,284	비R&D	12년 자율 보통	
	특허청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자본)	663	비R&D	12년 자율 보통	
	특허청	지식재산교육운영	1,626	비R&D	12년 자율 보통	
	특허청	지식재산스마트교육	1,770	비R&D	-	4-4
	특허청	지식재산연구활성화	6,694	비R&D	-	
	특허청	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	847	비R&D	13년 자율 보통	4-4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	320	비R&D	-	4-4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742	비R&D	13년 자율 보통	
	특허청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	14,123	비R&D	12년 자율 보통	4-1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개발(정보화)	355	비R&D	12년 자율 보통	4-1
	특허청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	6,340	비R&D	12년 자율 보통	4-1
	특허청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자본)	204	비R&D	12년 자율 보통	4-1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143	비R&D	12년 자율 보통	4-1
	특허청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	1,327	비R&D	13년 자율 보통	
신 지식	농식품부	GoldenSeed프로젝트	21,507	R&D	-	5-2
	농식품부	국가인증농식품지원	13,909	비R&D	15년 자율 우수	5-4
	농식품부	국제농업기술협력	3,449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21,003	R&D	-	
	농식품부	농업기초기반연구	61,341	R&D	-	
	농식품부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31,479	비R&D	(16년 종료)	5-2
	농식품부	산림유전자원개발	1,080	비R&D	15년 자율 우수	5-2
	농식품부	산림품종보호및채종원관리	686	비R&D	15년 자율 우수	5-2
	농식품부	신기술보급사업	38,363	비R&D	-	5-3
	농식품부	신품종지역적응연구	17,831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5-2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8,420	비R&D	-	5-3
	농식품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56,096	R&D	13년 자체·상위 우수	5-1
	농식품부	품종심사및재배시험	16,521	비R&D	15년 자율 보통	5-2
	문체부	한스타일육성지원	4,260	비R&D	15년 자율미흡/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무형유산원운영	10,935	비R&D	13년 자율 보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보호	26,826	비R&D	13년 자율 보통	
	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94,991	R&D	13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5-1
	미래부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34,494	R&D	12년 자체 우수/상위 보통	5-4
	미래부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9,700	R&D	-	5-1
	미래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고유 사업	53,137	R&D	-	
	미래부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 사업	32,242	R&D	-	
	복지부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5,784	R&D	-	
	복지부	한의약산업육성	8,614	비R&D	13년 자율 보통	5-1
	산업부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2,460	비R&D	13년 자율 보통	5-1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진흥	540	비R&D	15년 자율 보통	
	해수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25,289	R&D	-	5-1
	환경부	고유생물주권확보	2,659	비R&D	12년 재정성과 보통	5-1
	환경부	나고야의정서대응	1,660	비R&D	12년 재정성과 보통	5-1
	환경부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	13,965	R&D	13년 자체·상위 보통	5-1
	환경부	한반도생물다양성보전관리기반구축	648	비R&D	12년 재정성과 보통	5-1
	환경부	환경생물산업소재발굴	3,178	비R&D	-	5-1

※ - 표시 사업은 현재 평가 제외 또는 미도래 사업

첨부 3

지식재산 시행계획 관리과제 해당 세부사업 연계표('16년 기준)

5대 분류	부처	관리과제명	세부사업명	구분	자원 배분 방향
창출	과학기술부	국내외 공동연구의 활성화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R&D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R&D	
		미래 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사회과학연구지원	R&D	
			사회수요맞춤형인재	R&D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R&D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R&D	
			인문사회기초연구	R&D	
		인문학진흥	R&D		
		연구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R&D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연구윤리활동지원	R&D	
	해외 지식재산의 도입·활용 활성화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R&D		
	문체부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	국내연계형 융합형 창의인재	R&D	1-4
			대중문화콘텐츠 사업 육성	비R&D	1-4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CT기반조성	R&D	1-4
			문화기술연구개발	R&D	1-4
	미래부	SW·디지털콘텐츠 등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 개발	R&D	1-3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R&D	1-3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R&D	1-3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R&D	1-3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R&D	1-4
			범부처 Giga KOREA 사업	R&D	1-4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R&D	1-3
			국내외공동연구활성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R&D
			집단연구자지원	R&D	
		국제표준특허전문가양성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R&D	1-1
		대형R&D사업의성과관리강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R&D	1-1
		도전적·창의적기초연구지원	개인연구지원	R&D	
		유무선통신등방송통신기술개발지원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R&D	1-4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R&D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R&D	
		지식재산부서기능및전문성강화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R&D	
			연구개발특구육성(R&D)	R&D	
	특허전략과연계된표준개발지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R&D	1-1	
	해외우수지식재산창출인력의유치관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복지부	보건산업 지식재산 확산 지원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	비R&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R&D	
		보건산업 특허 컨설팅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R&D	
			의약품 임상시험 인프라 지원 및 의료기기 시제품개발 지원	의료기기기술개발 R&D	R&D
		임상연구인프라조성	R&D		
	산업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디자인산업진흥	비R&D	1-4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자인혁신역량강화	R&D	1-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1-4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R&D	1-4
사업화 연계 R&D 지원 강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D			
특허청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표준특허 창출지원	R&D	1-1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특허기술조사분석	R&D	1-2	

환경부	관세청	대학·공공(연) 보유 우수 지식재산의 발굴 및 관리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비R&D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IP-R&D 전략지원	R&D	
		수행 단계에서 지재권 획득 전략 추진	특허기술 조사 분석	R&D	1-2
		완료 단계에서 지재권 관리 강화	특허기술 조사 분석	R&D	1-2
		표준특허 창출 기반 조성	표준특허 창출 지원	R&D	1-1
	성과지향형 환경 R&D 투자 확대	CO ₂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R&D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R&D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R&D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R&D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R&D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R&D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R&D		
		환경융합 신기술개발 사업	R&D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R&D				
보 호	문체부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원	비R&D	2-4
		국제공조 체제 확립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비R&D	2-1
		민간의 저작권 보호 역량 제고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소프트웨어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수사(단속)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배양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비R&D	
		온라인상 불법 유통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비R&D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비R&D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R&D	2-3
		저작권 침해 대응력 확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조정제도 내실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비R&D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비R&D	2-3	
	산업부	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비R&D	2-1
		중기청	산업기술 등의 보안 역량 확보 및 의식제고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	비R&D
	특허청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	디자인심사지원	비R&D
		상표심사지원		비R&D	2-2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비R&D	2-2
		특허심사지원		비R&D	2-2
국제공조 체제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1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1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디자인심사지원	비R&D	2-2	
		상표심사지원	비R&D	2-2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비R&D	2-2	
		특허심사지원	비R&D	2-2	
분쟁의 효율적 해결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1	
수사(단속)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배양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3	
심사품질 및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디자인심사지원	비R&D	2-1	
		상표심사지원	비R&D	2-2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비R&D	2-2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특허심사지원	비R&D	2-2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3		
온라인 위조상품 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개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강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R&D	2-3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BF&D	2-1
		효율적인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구축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BF&D	2-3
활 용	공정위	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활동 강화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BF&D	
	기상청	정보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BF&D	3-3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BF&D	3-3
	문체부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BF&D	3-3
		저작물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BF&D	
		콘텐츠산업 투자·용자 시스템 확충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BF&D	3-1
		콘텐츠산업 투자·용자 시스템 확충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BF&D	3-1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성과활용·확산촉진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F&D	3-2
	복지부	국제 보건의료 기술교류 사업	제약산업 육성지원	BF&D	
		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	BF&D	
		보건산업 지식재산 관리운영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	BF&D	
		보건산업 지식재산 정보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F&D	
	산업부	기술이전·거래 지원기관 협업 강화	제약산업 육성지원	BF&D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기술확산지원	F&D	3-2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 육성	기술확산지원	F&D	3-2
		지식재산 수집 유통체계 개편	표준안전기반구축	F&D	
	중기청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기술확산지원	F&D	3-2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BF&D	3-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F&D	3-2
			수출역량강화	BF&D	3-2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BF&D	3-4
	창업성장 R&D사업	F&D	3-4		
	특허청	대학·공공연구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 강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BF&D	3-4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BF&D	3-4
정부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발명장려문화조성	BF&D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BF&D	3-4	
지식재산 기반 아이디어 창업기반 마련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BF&D	3-4	
지식재산 서비스의 고품질화 기반 구축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BF&D	3-4	
창의자본 조성		창의자본 조성	BF&D	3-1	
행자부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민간활용 촉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BF&D	3-3	
기 반	문체부	공공 저작물 정보 확산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BF&D	
		對개도국저작권지원확대	WIPO 신탁기금 지원사업	BF&D	
		소외지역·계층의 저작권 접근성 제고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BF&D	4-4
		저작권 소양교육 강화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BF&D	4-4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BF&D	4-1
		저작권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BF&D	4-1
		저작권 전략적 홍보 추진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BF&D	4-4
		저작권 전문 지원인력 양성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BF&D	4-4
	미래부	지식재산창출활용인재양성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	F&D	
	복지부	보건산업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지원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	BF&D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F&D	4-1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지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BF&D	4-2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BF&D	4-2
	산업부	특허나눔의 본격 추진	기술확산지원	F&D	
	특허청	공공지식재산 정보 확산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BF&D	4-1
		교육환경개선(자본)	교육환경개선(자본)	BF&D	
		대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국제 지식재산 나눔	BF&D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BF&D	4-1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비F&D	4-2
		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육 활성화	비F&D	4-4
		발명인 대우 및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강화	직무발명 활성화	비F&D	4-4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F&D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비F&D	
		심사관 해외훈련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비F&D	
		여성발명진흥	여성발명진흥	비F&D	4-4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비F&D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비F&D	4-1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비F&D	4-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비F&D	4-2
		지식재산 교육운영	지식재산 교육운영	비F&D	4-4
		지식재산 분야 연구 활성화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비F&D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WIPO국제분담금	비F&D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양성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비F&D	4-2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특허정보 DB 구축(정보화)	비F&D	4-1
			특허정보 DB 구축(정보화)(자본)	비F&D	4-1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정보화)	비F&D	4-1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비F&D	4-1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비F&D	4-2
		지식재산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비F&D	4-2
		지식재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비F&D	4-2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비F&D	4-4
			지식재산 인식기반강화	비F&D	4-4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비F&D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비F&D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특허고객서비스 지원	비F&D	4-1
		해외 국유특허 관리(자본)	해외국유특허 관리(자본)	비F&D	
신 지 식	농 산 품 부 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비F&D	5-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비F&D	5-2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비F&D	5-4
		민간 육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비F&D	5-2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의 발굴 및 정책대응	차세대BG21사업	F&D	5-1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농업기초기반연구	F&D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생물자원 활용 제도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산림유전자원개발	비F&D	5-2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F&D	
		생물자원의보존관리표준화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산림유전자원개발	비F&D	5-2
			산림유전자원개발	비F&D	5-2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F&D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비F&D	5-2
			신 품종지역적응연구	F&D	5-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비F&D	5-2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확대	Golden Seed Project	F&D	5-2		
전통자원 기반 창작물의 활용 활성화 촉진	전통발효식품육성산업	비F&D	5-3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국제농업기술협력	F&D	5-1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전통자원의 발굴·관리 기법 개발	농업기초기반연구	F&D			

	정보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신기술보급사업	BF&D	5-3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국가인증농식품지원	BF&D	5-4
	품종보호관리를위한품질인증및종합정보 시스템구축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BF&D	5-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및 조사 강화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BF&D	5-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BF&D	5-2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 정비	산림품종보호 및 채종원관리	BF&D	5-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BF&D	5-2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품종 출원 강화	신품종지역적응연구	BF&D	5-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BF&D	5-2
	품종판별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BF&D	5-2
	해외생물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F&D	
문체부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한스타일 육성지원	BF&D	5-3
문화재청	전통자원기반창작물의활용활성화촉진	무형문화재보호	BF&D	5-3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무형유산원운영	BF&D	5-3
	전통자원의체계적·종합적관리	무형유산원운영	BF&D	5-3
미래부	생명자원활용도제고및지원서비스강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F&D	5-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F&D	5-1
	생명자원의가치발굴및정보분석시스템강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F&D	5-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F&D	5-1
	생명자원의보존·관리기반확충및기술개발지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F&D	5-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F&D	5-1
	생명자원의보존·관리표준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F&D	5-1
	생명자원의전략적발굴·확보체계강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F&D	5-1
전통의약지식의발굴및관리시스템구축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F&D	5-1	
해외생물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F&D	5-1	
복지부	인체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한 R&D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F&D	5-1
	인체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추진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F&D	5-1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한약산업육성	BF&D	5-1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	한약산업육성	BF&D	5-1
산업부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국민이해 확대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BF&D	5-1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BF&D	5-4
해수부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 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바이오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양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F&D	5-1
환경부	생물자원 가치 발굴 및 정보 분석 시스템 강화	환경생물산업소재 발굴	BF&D	5-1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고유생물주권확보	BF&D	5-1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나고야의정서대응	BF&D	5-1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F&D	5-1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관리기반 구축	BF&D	5-1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고유생물주권확보	BF&D	5-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F&D	5-1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F&D	5-1	

※ 부처가 추진하는 관리과제중 예산사업만을 정리함.